국제입찰업무매뉴얼발간을위한

WTO 정부조달협정및 FTA 정부조달부분연구

제1편 WTO 정부조달협정 / FTA 정부조달부분의내용검토

제1장 서론

1979년 GATT 정부조달협정으로정부조달무역에관한국제협정이최초로성립된이후 1994년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에따라 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WTO 정부조달협정)가창설되어 1996년 1월 1일자로발효되었고, 2011. 12. 그개정협상이타결되어현재개정된정부조달협정이시행중이다(이하 2011년에협상이타결되어개정된협정을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이라하고, 그개정전의것을 "**1994 WTO 정부조달협정**"이라고하며, 두협정을통칭할때에는**"정부조달협정"**이라고한다).

그런데정부조달협정은 WTO 설립협정부속서 4의복수국간무역협정의형태로체결된것으로, WTO 회원국이라고하더라도협정에참여하지아니한국가에대하여는효력이미치지아니하며, 2018. 10. 현재 WTO 정부조달협정의가입국은 19개국(EU 및그 28개회원국을하나의가입국으로본다)에불과하다. 그리고중국과러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지역의대부분국가는정부조달협정에가입하고있지않다. 뿐만아니라, 각정부조달협정의각당사국은일정한기관의일정한조달에한하여양허를함으로써그에한하여정부조달협정의규정이적용되는데, 그양허대상기관및범위가해석상명확하지아니한경우도없지않다.

한편, 최근둘또는그이상의국가사이에서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등에대한관세·비관세장벽을완화함으로써상호간교역증진을도모하는특혜무역협정으로서, 양자또는다자조약의형태로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이체결되고있다. 이러한 FTA에서도정부조달에관한장을두고당사국사이에서정부조달에관하여준수할사항을규정하고있는경우가다수이다. 그런데앞서기술한바와같이정부조달협정이그가입국사이에서만효력을갖고, 그가입국이제한적인점을고려하여, 정부는정부조달협정미가입국과 FTA를체결할경우에는정부조달에관한장(Chapter)를별도로두어그에관한사항을규정하거나정부조달에관한내

용은해당 FTA에포함시키지않기도하고, 정부조달협정가입국과의사이에 FTA를 체결할때에도정부조달협정에서의양허대상·범위를확대하고있기도하다.

이에따라정부조달에관한규정은크게 WTO 정부조달협정및각FTA의정부조달 관련부분을두가지축으로하여규율되고있는바, FTA의정부조달에관한규정들중정부 조달협정의내용과상이한내용을규정하고있는경우가적지않고, 특히정부조달협정 당사국과체결한 FTA에서도양허의대상·범위를정부조달협정에서의그것과달리정 하고있는경우도있다.

이에이하제1편에서는우선 WTO 정부조달협정과 FTA의정부조달에관한규정 들및각양허대상과양허범위를정부조달협정과각 FTA별로구분하여검토한다. 제2 편에서는제1편의검토결과를바탕으로우리나라에서진행하는정부조달을위한입찰 이 WTO 정부조달협정또는정부조달에관한 FTA 규정에따른양허대상에해당하는 지, 즉국제입찰을하여야할대상인지여부에관한판단기준을마련해보도록한다. 그 리고그기준에따라중앙정부기관과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및그각직속기관, 보조 기관등모든산하기관을포함하여양허대상기관리스트를예시적으로제시해본다. 이 어서제3편에서는정부조달협정및정부조달에관한 FTA 규정들을반영한국내법령인 「특정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과「특정 물품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및각특례규칙에 관하여, 국제입찰의실무에적용할수있는기존의유권해석또는유의사항을정리하고, 마지막으로제4편에서는기타국제입찰실무상주로문제되는사항및주요분쟁사례등 에관하여정리해보기로한다.

제2장 WTO정부조달협정의내용

1. 정부조달협정의성립및개정

기존의보호무역주의기조아래에서세계무역의왜곡현상을시정하고무역의확대 와자유화를통한세계경제의활성화를위하여, 제2차세계대전전후(戰後)에선진국을

주축으로하여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의창설을추진하였다. 그러나미국의반대로 ITO의설립은무산되었고, 대신당초입안되었던국제무역기구헌장의초안중관세의상호감축에대한협상및의무에관한사항들이기초가되어「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즉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1948. 1. 1.부터세계무역규범으로서의기능을수행하게되었다.[1]

GATT 발효후 WTO 체제가시작되기전까지모두 8 차례의의제별협상(Round)이이루어졌는데,[2] 제6차케네디라운드까지는주로관세장벽철폐에관한협상이진행되었고, 정부조달의자유화에관하여는협상이이루어지지않았다. 오히려 GATT 제3조제8항에서는정부의고유목적을수행하기위한정부조달은 GATT 적용대상에서제외하였고, GATT 제17조제2항에서는국영기업의조달이라도정부의고유목적을수행하기위한조달은역시비차별원칙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를중심으로정부조달시장의자유화에관한논의가추진되었을뿐이다.

그러던중제7차동경라운드에서다수의다자간무역협정들중의하나로정부조달에관한협정이체결되었다. 그런데제7차동경라운드협상결과체결된 9개협정중의하나인위 GATT 정부조달협정은, 오직동협정에서명하고구속을받겠다는의사를표시한국가에한하여적용이되었고, 위협정이 1993년제8차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과더불어 WTO 체제가성립하면서 WTO 설립협정의제4부속서의하나로성립하게되었다. 참고로 GATT 정부조달협정과 WTO 정부조달협정의주요내용을비교·정리하면아래표기재와같다.

---

[1]법무부, 「국제환경법과무역」, 1995, 619면.

[2] WTO 체제성립이전까지진행되었던각라운드별명칭및기간은아래와같다.

차수	1	2	3	4	5	6	7	8
명칭	제네바	안시	토케이	제네바	딜론	케네디	동경	우루과이
기간	1947	1948	1950	1956	1960~61	1964~67	1973~79	1986~93

[GATT 정부조달협정과 WTO 정부조달협정의비교][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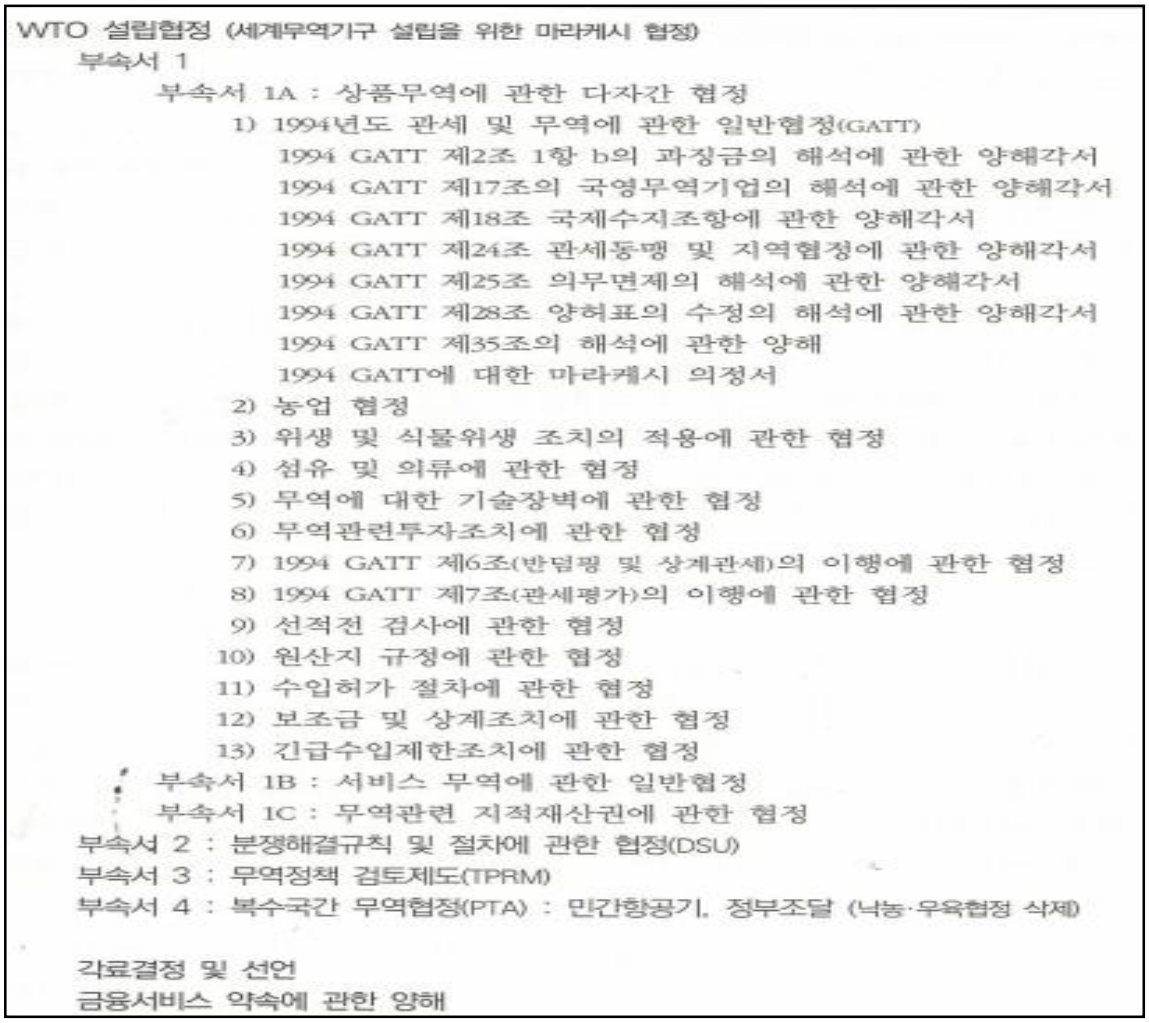
	GATT 정부조달협정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22개국(EC 및 EC 10개국포함)	27개국(EU 및 EU 15개국포함) 이상
적용대상	중앙정부의물품조달	중앙정부, 지방정부, 양허대상공기업등의물품, 서비스, 건설서비스조달
적용범위	조달(procurement)로한정	구매, 리스, 임차, 할부까지확대
양허금액	15만 SDR	13만 SDR 등(적용대상등에따라양허금액차등)
내국민대우	자국공급자또는다른회원국의 공급자와동등한대우	자국및타회원국의공급자와동등한대우이외에, 외국과의제휴또는소유권을이유로, 서비스나물품의생산국을기준으로불리하게대우할수도없음
기술사양	기술사양이국제교역에장애를 초래하지않도록적용하고, 디자인보다성능위주로작성	상업적이해관계를갖는기업에게규격작성에사용할수있는조언이나경쟁을침해하는수단을사용하는것을 배제함
입찰마감	공개입찰은 30일, 선택입찰에서입찰참가신청서 30일보장	공개입찰은 40일로연장, 선택입찰에서입찰참가신청서는 25일로축소, 긴급한경우에는최소입찰보장일을지키지않아도되나최소 10일보장
대응구매	오프셋사용의억제를권장함. 그	오프셋의금지를명기함

[3]신삼철, WTO 정부조달협정체계의분석과제도정비에관한연구, 2003, 청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50면.

(Offset)	러나금지시키지는않음	
분쟁해결	공급업체가가입국의정부조달절차와정부조달협정의합치성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있는항의절차를마련함	추가적으로공급업체가협정을위반하는조달기관에대해서정부를통하지않고직접적으로이의를제기할수있도록함. 따라서회원국은이를위한법률체계를마련하여야함
민영화	명시하지아니함	공기업이민영화되어정부의영향력이제거되는경우 WTO 정부조달협정적용대상에서제외됨
기술변화	명시하지아니함	기술변화를 WTO 정부조달협정에반영시켜야한다는의지로서, 협상국들은정보기술의중요성을인식하고, 정보의투명성과조달의무차별성향상을위해정보기술을활용하고도입할수있는방식에대해지속적으로논의함

한편, WTO 협정이란 1994. 4. 15. 채택된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무역협상의결과를구현한마라케시최종의정서와여기에포함된 60여개의조약및1994. 4. 15. 이후 WTO 내에서후속적으로체결되는협정들을의미한다. 구체적으로 WTO 협정은크게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각료결정및선언의 3개부분으로구성되는데, 그중최종의정서는우루과이라운드의결과및향후절차에대한포괄적인선언을담고있다. 그리고 WTO 설립협정은최종협정의본문에해당하는것으로, WTO의구조, 기능, 조직, 의결방법등에관한본협정과각분야별부속서를두고있으며, 각료결정및선언은 WTO 설립협정과다자간무역협정을보완하고, 우루과이라운드타결전의중요한결정사항들을담고있다.

[그림 1: WTO 설립협정의체계]



복수국간무역협정은 WTO 설립협정제4부속서에포함된협정들을의미하는데, 부속서 1 내지 3의다자간무역협정들과는[4]달리, 동협정에가입한 WTO 회원국에 대해서만구속력을가진다. WTO가탄생한 1995년당시에는민간항공기무역에관한협정, 정부조달협정, 국제낙농협정, 국제우육협정이있었으나, 국제낙농협정과국제우육협정은 1998. 1. 1.자로종료되었고, 따라서현재로는민간항공기무역에관한협정과정부조달협정만이유효하다.[5]

---

[4]부속서 1A의상품무역에관한다자간협정, 부속서 1B의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부속서 1C의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부속서 2의분쟁해결규칙및절차에관한협정, 부속서 3의무역정책검토제도를의미한다.

[5]정혜선 · 이근화, WTO 복수국간협정(Pluriteral Trade Agreement) 추진동향과전망, 한국무역협회, 2015, 1~2면.

한편, 1994 WTO 정부조달협정은그발효후 3년이내에협정문개선및양허확대를위한협상개시에관하여규정하고있었는데(1994 WTO 정부조달협정제24조제7항다호),[6]그에따라 1994 WTO 정부조달협정이발효된 1996. 1. 1.로부터 3년이내인 1997년부터정부조달협정의협정문개정협상이개시되었다. 그리고 2006. 12. 4. 협정문에대한개정협상이완료가되고, 2004년경부터시작된각국의양허확대에관한협상도 2011. 마무리되어 2011. 12. 15. WTO 정부조달협정의개정협상이최종타결되었다.

[WTO 정부조달협정개정추진경과][7]

시기	내용
1996. 1.	1994 WTO 정부조달협정발효
1997. 1.	대한민국에대해 1994 WTO 정부조달협정발효, 협정문개정협상개시
2004. 7.	양허확대협상개시
2006. 12. 4.	협정문개정협상완료
2011. 12. 15.	양허확대협상완료, WTO 정부조달협정개정안타결
2012. 3.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최종채택(GPA/W316)
2013. 11.	대한민국국무회의심의·의결, 대통령재가
2014. 4. 6.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발효(아르메니아, 한국, 아루바, 스위스제외)
2015. 12. 15.	대한민국개정 WTO 정부조달협정발효를위한수락서 WTO에기탁
2016. 1. 14.	대한민국개정 WTO 정부조달협정발효(수락서기탁후 30일경과)

위와같이 WTO 정부조달협정이개정됨에따라기존의 24개조항이 22개조항으로그조항의수는감소하였으나, 협정의의미가모호함에따른분쟁의발생가능성을제

[6] 이협정발효일로부터 3년이경과하기전에그리고그이후부터는정기적으로, 협정당사국은개발도상국에관한제5조의규정에유의하면서, 이협정을개선하고상호주의에기초하여모든당사국간협정적용범위를확대하기위한후속협상을추진한다.

[7] 박혜리, 개정정부조달협정(GPA)의주요내용과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3면기재표.

거하기위해정의규정(제1조)이신설된것을포함하여, 변화된조달환경을반영하고조달시스템을현대화하기위한목적으로전자조달에관한규정등여러규정이신설되거나 문구수정및보완작업이이루어졌다. 그리고전자조달에관한규정등이새로도입됨에 따라각종조달절차에관한규정들에서도전자조달등에관한절차등을추가로규정하였다. 위와같이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과그개정전의협정을비교한내용을정리하면아래표기재와같다.

[WTO 정부조달협정개정전후비교][8]

[8]한국조달연구원, WTO 정부조달개정협정해설, 2011, 목차iii~v. 및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개정정부조달협정(GPA) 설명회개최」, 2011.

	1994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
전문	- 세계무역의자유화와확대를이뤄내고세계무역을위한국제적기틀을개선하기위한표준적인국제무역의기준을제시	- 공공자원을효과·효율적으로 관리하고경제적 성과를 위한 정부조달제도의 완전성과 예측가능성 강조 - 투명하고공정한조달수행을강조하기위해,유엔부패방지협약과같은국제규범에합치되도록정부조달을집행할것과이해상충및부패관행을막기위한조치의중요성을명시
정의		- 주요용어에대한정의(제1조)신설
적용범위		- 개별당사국의부속서에서적용범위의예외와제외대상으로규정되었던개발원조,군대주둔등의특정목적조달을제2조3항본문에서예외로명시
일반원칙	- 원산지규정(제4조) - 대응구매(제16조) -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원칙(제3조)	-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3가지 원칙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제4조)에 규정. - 이해상충회피와부패방지를위한조달기관의투명하고공평한조달집행을일반원칙으로추가
개발도상국에대한조치	- 개발도상국은협정의적용배제를다른국가와협상할수있고,정부조달위원회에적용배제허가를요청할수있음	- 개발도상국의적극적참여를유도하기위한과도기적조치(가격특혜,대응구매,특정기관이나분야의단계적추가)들이규정되었고해당조치들을사용할수있는상황들도설명됨
공고 (제9조→ 제7조)		- 기존 1994 WTO 정부조달협정의 참가초청(invitation to participate)과 조달계획공고(notice of proposed procurement)라는 두 개념을 조달공고(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로 포괄 - 요약공고를쉽게접할수있는방식으로,조달공고공표와동시에하도록요건을강화함

입찰방식	- 일반공개입찰,지명경쟁입찰,제한입찰 3가지방식	- 일반공개입찰,지명경쟁입찰,제한입찰 이외기타계약방식의사용을단정적으로배제하지않음 - 입찰방식에적용되는일반원칙들과특수한상황에서적용될수있는특별한규칙과요건을명백히구분
참가조건	- 공급자의재정적·상업적·기술적능력을고려함 - 다른당사국의공급자간또는국내공급자와다른당사국의공급자간에차별을두지않음	- 참가조건을별도로제8조에규정 - 조달참가조건에법적능력에대한고려가능성을추가 - 조달기관은조달요건을충족하는데필수적인경우를제외하고,공급자에게하나이상의계약이낙찰된실적이있어야한다는조건을부과해서는안된다는점을명시
공급자 자격심사		- 제9조(공급자 자격심사)에 1994 WTO 정부조달협정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일부 수정하여 통합 - 공급자등록제도를유지하도록허용 - 자격심사절차와등록절차들의차이점을최소화하도록노력할것을규정 - 자격심사절차와등록제도가외국공급자들의참여에장애를설정하는목적으로채택될수없음을분명히함
유자격자명부	- 유자격자명부의존재를암묵적으로인정	- 명부유지에대해조달기관에명시적권한부여 - 명부등재신청에관한공고의요건을규정
기술규격 (제6조→ 제10조)		- 자연자원의보전과환경보호를고려한기술규격의작성과채택,적용이가능함을추가
입찰설명서	- 입찰서를 작성할 언어들 중 하나는 WTO의 공식 언어이어야 함 - 입찰설명서에포함되어야하는여러필수사항들을나열	- 조달공고에포함되어있지않았던정보들이라도,입찰설명서에포함되어야함을명시하고필수사항들을나열 - 조달공고나입찰설명서의변경된정보는모든참여공급자들에게합리적으로전달되어야함 - 전자적수단을통해조달하는경우제공되

		어야하는정보들의요건을추가 - 입찰서의언어에대한규정이삭제됨
입찰기간		- 상업적상품과용역의입찰에대해기간의 단축을허용 - 전자적 수단을 입찰에 사용하는 경우 입찰기간을유연하게단축할수있음을규정
협상 (제14조→ 제12조)		- 입찰서의강점과약점을확인하기위해주로협상을활용한다는요건은삭제함
전자적조달수단	- 전통적인서면방식에근거	- 제14조(전자경매)를신설하고,그외다른규정들에도전자적조달수단의사용증가를고려한규정추가(예,입찰설명서에데이터의인증과암호화요건을포함시킬것)
이의제기절차 (제20조→ 제18조)		- 공급자가 문제된 입찰 시행 당사국 국내법의 미비 등으로 WTO 정부조달협정 위반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의신청할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국내이의제기절차를보다 실질화함
적용범위의수정및조정	- 최종조항(24조)에관련내용이규정되어있음	- 별도로독립된조(제19조)에규정 - 적용범위수정과관련한당사국들사이의 의견차이를해소하기위한중재절차와명시적기준을마련하고절차의명확성을제고
분쟁해결 (제22조→ 제20조)		- 패널에조달분야전문가가포함되어야한다는규정삭제 - 패널구성,기한,위임사항등의내용을삭제하고 WTO 분쟁해결양해(DSU)의일반규정을준용하도록함
기구 (제23조→ 제21조)		-정부조달위원회가협정의이행·운영을 검토하고,일반이사회에통지한다는내용추가 - 참관자(observer)관련규정추가
최종규정 (제24조→		- GATT 정부조달협정경과조치에관한 규정삭제

제2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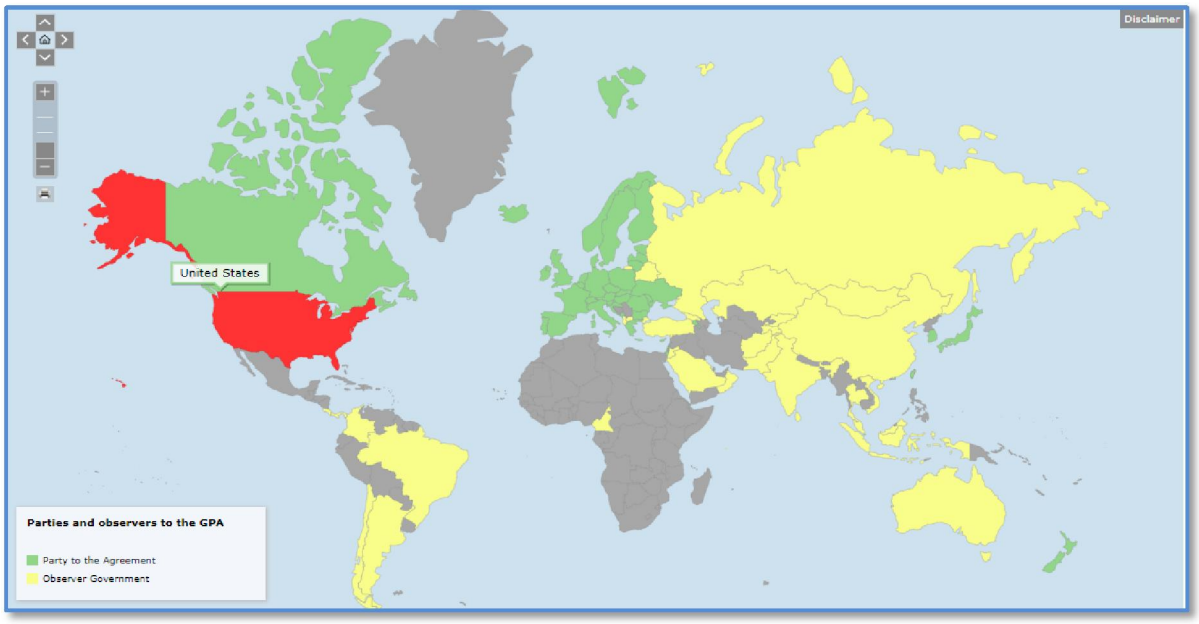
한편, 2018. 10. 현재 WTO 정부조달협정의가입국은아르메니아, 캐나다, EU 및그 28개회원국[9](그전체를하나의회원국으로본다),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대한민국,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몬테네그로, 아루바(네덜란드령),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우크라이나, 미국으로 WTO 가입국 47개국가(EU를하나의회원국으로보는경우 19개국)로구성된다.[10]그리고 32개의다른 국가들과 4개의국제기구가 WTO 정부조달협정제21조제4항에따라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참관자(Observers)로서참여하고있으며, 그중 10개국이가입절차를진행중이다.

[WTO 정부조달협정가입국현황그림: WTO 홈페이지[11]]

[9]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10]이상당사국열거순서는국가명의영문알파벳순이다.

[11] WTO 홈페이지(https://www.wto.org/english/tratop_e/gproc_e/memobs_e.htm). 그림에서초록색으로표시된부분(빨간색으로표시된미합중국포함)이정부조달협정의회원국이고, 노란색으로표시된부분이옵저버(참관국)이며, 나머지회색으로표시된부분이그외국가이다.



2. 대한민국의 WTO 정부조달협정가입경위

대한민국은세계조달시장진출을통한수출확대를목표로동경라운드가개최되던 1979년부터 1982년까지의기간동안 3차례에걸쳐가입협상을시도하였으나, 미국등 선진국의개방요구수준이우리나라가책정한수준보다높아서중도에협정가입을포기 한바있다. 그러다가 1988년부터시작된한미통신협상당시미국은건당 2만 5천불이 상에해당되는정부상품(특히통신제품) 구매의개방을요구하여왔는바, 정부는이러 한미국의요구를수용하는한편, 대한민국이다자간무역협상인 GATT의정부조달협 정(17만불이상개방)에가입하기로상호합의하였다.[12]

이에따라대한민국이 GATT의정부조달협정에의가입을추진하던중 WTO의설 립을위한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기존 GATT의정부조달협정을 WTO 정부조달협 정으로확장편입하는협상이진행되었는바, 이에대한민국정부는이협상에참여하여 우루과이라운드타결과함께 1993. 12. 15.자로최종양허안을제출하고, 1994. 4. 15.에 협정에서명하여 1994 WTO 정부조달협정에 24번째국가로가입하였다.

---

[12]조달청(국제협력지원반), WTO 정부조달협정의실무적이해와적용, 1997, 16면.

한편, 1994 WTO 정부조달협정이대한민국에대하여발효된 1997년부터 WTO 정부조달협정의개정협상이개시되어 2014년부터대다수의가입국에대한관계에서 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이발효되었다. 그런데대한민국의경우에도위개정협상에참여하였고, 2013. 11.경국무회의의심의·의결및대통령의재가가이루어졌으나, 2013. 12. 26. WTO 정부조달협정개정의정서가입법사항에관한조약으로서헌법제60조제1항에의하여체결·비준에대한국회의동의가필요한지여부가문제가되어권한쟁의심판청구가이루어졌다. 그리하여헌법재판소가 2015. 11. 26. 선고 2013헌라3 결정으로, 대통령이조약체결·비준에대한국회의동의를요구하지않은경우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한이침해될가능성이없다는등의이유로위권한쟁의심판청구를각하하기전까지수락서기탁및발효절차가지연되었다. 그러나위헌법재판소결정직후인 2015. 12. 15.에야비로소대한민국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제22조제1, 2항에따라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발효를위한수락서를 WTO에기탁하였고, 그기탁일로부터 30일째되는날인 2016. 1. 14. 대한민국에대해서도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이발효되었다.

3. WTO 정부조달협정의구성

WTO 정부조달협정은전문(Preamble)과본문 22개조항(Article) 및 4개의부록(Appendix)으로구성되어있다. 각각의부록은 WTO 정부조달협정의불가분의일부를구성한다(제22조제15항).[13]

부록 Ⅰ은각당사국별양허대상기관및조달에관하여규정하는 6개의부속서(Annex) 및각당사국별일반주석에관하여규정하는부속서합계 7개의부속서로구성되어있는데, 그각부속서의내용은아래와같다.

---

[13] 위개정의정서는영어본, 프랑스어본, 스페인어본이각각정본이다. 그러나이하에서는연구의목적및편의상한국어번역본을기준으로설명을하되, 정본인영어본(부록 1)의해당내용을필요에따라각주에서별도로표기한다.

부속서 1: 양허대상**중앙정부**조달기관및동기관의양허하한선

부속서 2: 양허대상중앙정부보다하위에해당하는**지방정부**조달기관및그기관의양허하한선

부속서 3: 정부조달협정에따라조달을실시하는그밖의기관, 즉양허대상**공공기관**및그양허하한선

부속서 4: 정부조달협정의적용대상이되는**상품**분야

부속서 5: 정부조달협정의적용대상이되는**서비스**분야

부속서 6: 정부조달협정의적용대상이되는**건설서비스**및그양허하한선

부속서 7: **일반주석**

그외조달에관한정보를공표하는전자또는종이매체를기재한**부록 II**, 각당사국이조달에관한공고, 유자격자명부공고및낙찰정보공고를공표하는전자또는종이매체를기재한**부록 III**, 조달에관한통계를공고하거나, 낙찰된계약에관한공고를공표하는웹사이트의주소또는주소들에관하여기재한**부록 IV**가전문과본문, 부록록과함께정부조달협정을구성한다.

4. 정부조달협정의조문별내용

가. 전문및정의

1) 전문

WTO 정부조달협정은전문에서국제무역의자유화및확대를증진하고, 국제무역활동구조의개선을목적으로, 정부조달을위한효과적인다자간틀이필요함을인정하고, 그러한다자간협정의틀을제공하는데의의가있음을밝히고있다. 그리고그러한틀로서정부조달에관한조치가국내공급자, 상품또는서비스를보호하거나외국공급자, 상품또는서비스간에차별하도록준비, 채택또는적용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는것, 즉차별금지의원칙을제4조의일반원칙에관한규정에앞서전문에서도선언하고있다. 전자적수단을사용하는조달의중요성을강조하는전문의규정도마찬가지로, 이는제4조일반원칙의제3항및전자경매에관한제14조등에서구체적으로구현된다.

이와더불어 WTO 정부조달협정은정부조달제도의무결성및예측가능성이공공자원의효율적이고효과적인관리, 당사국경제의성과그리고다자간무역제도의기능에불가결하고, 정부조달에관한투명한조치, 투명하고공평한방식에따른조달의실시, 그리고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과같은적용될수있는국제규범에따라이익상충및부패관행을회피하는것이중요함을전문에서선언하고있다. 위와같은전문의규정도단순한선언에그치는것이아니라, 정부조달의일반원칙에관한제4조제4항에서정부조달이투명하고공평한방식, 부패관행을방지하는방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원칙에반영되고있다. 뿐만아니라전문의선언적규정은조달정보의투명성에관한제16조, 정보공개에관한제17조, 국내심의절차에관한제18조등에서도보다구체화된다.

그리고전문은정부조달협정의당사국이아닌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이협정을수락하고, 이협정에가입할것을장려하기를희망하면서, 특히개발도상국, 특히최빈개발도상국의개발, 재정및무역상소요를고려할필요성을인정하고있는데, 이와관련된사항역시개발도상국에관한제5조, 적용범위의수정과조정에관한제19조등에서구체화된다.

한편, WTO 정부조달협정전문은그협정에따른절차적약속이각당사국의특별한상황을받아들일수있도록충분히유연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는 1994 WTO 정부조달협정이정의규정을두고있지않고일부절차적미비가있어용어의의미에혼선을초래하거나사용자친화적이지못하였다는지적을반영한것으로, 이에따라제2조에서정의규정을신설하고, 입찰설명서에관한제10조, 기간에관한제11조등절차에관한규정에서보다유연한규정을두게되었다.

2) 정의(제1조)

1994 WTO 정부조달협정은각종용어에대한정의규정이없어, 협정문의해석에관하여혼란을야기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었는데, 그에따라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은제1조에서각종용어에관한정의규정을두고있다. 정부조달협정제1조에서새로이규정하고있는주요용어의정의는아래와같다.

상업적상품또는서비스(commercial goods or services)란비정부적목적으로, 상업시장에서비정부구매자에게일반적으로판매되거나판매를위하여제공되고, 비정부구매자가관례적으로사들이는유형의상품또는서비스를의미한다(제1조가항).

위원회(Committee)란제21조제1항에따라설립된정부조달위원회를의미한다(제1조나항).

건설서비스(construction service)란국제연합잠정중심상품분류(CPC) 제51장에근거하여, 그어떠한수단에의해서든토목또는건축공사를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서비스를의미한다(제1조다항).

국가(country)는정부조달협정의당사국인독자적관세영역을포함한다. 정부조달협정의당사국인독자적관세영역과관련해서는, 정부조달협정내에서의표현이 "국가의"라는용어로수식되는경우, 그러한표현은달리명시되지아니하는한, 그독자적관세영역에관계되는것으로이해한다(제1조라항).

일(days)이란역일(曆日)을의미한다(제1조마항).

전자경매(electronic auction)란공급자가새로운가격또는평가기준과관련되는입찰의정량화할수있는비가격요소의새로운가치중하나, 또는양자모두를제출하기위한전자적수단의사용을수반하는반복과정으로서, 그결과입찰서의순위가매겨지거나다시매겨지는것을의미한다(제1조바항).

서면으로또는**서면의(in writing** or **written)**란언어또는숫자로된표현으로서, 독해, 복제및나중에전달될수있는것을의미한다. 이는전자적으로전송되고저장되는정보를포함할수있다(제1조사항).

제한입찰(limited tendering)이란조달기관이, 자신이선택한공급자또는공급자들과접촉하는조달방법을의미한다(제1조아항).

조치(measure)란협정적용대상조달과관련되는법률, 규정, 절차, 행정지도또는관행, 또는조달기관의행위를의미한다(제1조자항).

유자격자명부(multi-use list)란명부에등재되기위한조건을만족시킨다고조달기관이결정한공급자의명부로서, 조달기관이두번이상사용하고자하는것을의미한다(제1조차항).

조달예정공고(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란조달기관이공표하는고시로서, 관심있는공급자로하여금참가신청서, 입찰서또는양자모두를제출하도록권유하는것을의미한다(제1조카항).

대응구매(offset)란현지개발을장려하거나당사국의국제수지계정을개선하는조건또는약속으로서, 국산내용물의사용, 기술사용허가, 투자, 대응무역및유사한행위또는요건과같은것을의미한다(제1저타항).

공개입찰(open tendering)이란관심있는모든공급자가입찰서를제출할수있는조달방법을의미한다(제1조파항).

사람(person)이란자연인또는법인을의미한다(제1조하항).

조달기관(procuring entity)이란부록 I의당사국부속서 1, 2 또는 3의적용을받는기관을의미한다(제1조거항).

유자격공급자(qualified supplier)란조달기관이참가조건을만족시킨다고인정한공급자를의미한다(제1조너항).

지명경쟁입찰(selective tendering)이란유자격공급자만이입찰서를제출하도록조달기관으로부터권유를받는조달방법을의미한다(제1조더항).

서비스(services)는달리명시되지아니하는한, 건설서비스를포함한다(제1조러항).

표준(standard)이란인정된기관이승인한문서로서, 상품또는서비스의공통적이고반복적인용도, 규칙, 지침또는특징, 또는관련된공정및생산방법을규정하며, 그준수가강제적이지아니한것을의미한다. 표준은상품, 서비스, 공정또는생산방법에적용되는용어, 기호, 포장, 표시또는부표(附票)의요건을포함하거나전적으로다룰수도있다(제1조머항).

공급자(supplier)란상품또는서비스를제공하거나제공할수있는사람또는사람의집단을의미한다(제1조버항)

기술규격(technical specification)이란입찰요건으로서 (1) 조달될상품또는서비스의특징(품질, 성능, 안전및치수를포함한다) 또는이를생산하거나제공하기위한공정및방법을정하는것, 또는 (2) 상품또는서비스에적용되는용어, 기호, 포장, 표시또는부표(附票)의요건을다루는것을의미한다(제1항서항).

WTO 정부조달협정은제11조제7항에서상업적상품또는서비스등에대하여는입찰서제출기한의단축을허용하고있는데, 이때상업적상품또는서비스**(commercial goods or services)**란상업시장에서비정부구매자에게일반적으로판매되거나판매를위하여제공되고, 비정부구매자가관례적으로사들이는유형의상품또는서비스를의미한다.

건설서비스**(construction service)**에관하여는 WTO 정부조달협정제2조제4항에따라각국가별로양허대상건설서비스의내용에관하여규정하도록하고있으나, 제1조에서는일반적정의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여기서의건설서비스란 UN의 CPC(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중심상품분류제51장에서규정하고있는것으로, 토목또는건축공사를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서비스를의미한다. 이때 CPC란국제연합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가생산물(재화및서비스)을다루는통계의국제비교의틀을마련하고, 국제기준에적합한분류의개발이나기존분

류를개편하려는국가에유용한지침을제공하려는의도로마련한재화및서비스의분류기준을의미한다.[14]

WTO 정부조달협정에서국가(**country**)라함은정부조달협정의당사국인독자적관세영역(separate customs territory)을포함하는데, 이는홍콩,[15]대만과[16]같이독립된국가에해당하지않거나, 그해당여부에관하여정치적인문제가있는경우를고려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의가입당사국에는독자적인관세영역도포함되는것으로규정한것이다.[17]

1994 WTO 정부조달협정상입찰기간등의산정기준이되는일(**days**)이역일(曆日, calendar days)을의미하는지, 영업일(business day)을의미하는지명확하지아니하여이론의여지가있었지만,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는역일(曆日, calendar days)을의미하는것으로명확한정의규정을두었다.

WTO 정부조달협정의개정내용중가장큰변화중하나는전자입찰(특히전자경매)의도입이다. 1994 WTO 정부조달협정의적용을받는조달에서는전자경매의방식을사용할수있는지여부가불분명하였으나, 개정협정에서는이것이허용됨을분명히하면서그에관한정의규정을두었다. 그리고위와같은전자적조달에관한규율을고려하여 "서면으로또는서면의(**in writing or written**)"란언어또는숫자로된표현으로서,

---

[14]윤영회, 중심생산물분류(CPC) 해외사례연구, 2008, 18면.

[15] 홍콩은 1997년중국으로반환된이후중국의영토를구성하며, 다만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에따라고도의자치권을누리며별도의입법권을행사하여세법을제정·운용하고있다(같은법제2조).

[16]중국은 "하나의중국(一个中国)" 원칙에따라대만·홍콩·마카오를별도국가로표기하거나인정하는것을허용하지않고, 따라서대만의 WTO 정부조달협정가입에문제를제기하여왔다.

[17]대만은 2002. 1. 1. WTO에가입하였으나, 소위'양안긴장'문제로인해정부조달협정에가입하지못하다가,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의협정문에대한협상이마무리된 2009년에1994 WTO 정부조달협정에가입하였다.

독해, 복제및나중에전달될수있는것을의미하고, 전자적으로전송되고저장되는정보를포함하는것으로정의규정을두었다.

WTO 정부조달협정은그적용대상조달에관한조치(**measure**)에관하여적용되고, 그러한조치와관련하여내국민대우, 비차별대우등의일반원칙이적용된다. 따라서 조달에관한 "조치(measure)"의의미또는범위가협정의적용과관련하여중요한의미를가진다. 이와관련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은제1조에서'조치란협정적용대상조달과관련되는법률, 규정, 절차, 행정지도또는관행, 또는조달기관의행위(any law, regulation, procedure, administrative guidance or practice, or any action of a procuring entity relating to a covered procurement)를의미한다'고정의함으로써, 어떠한방식이건협정의적용대상이되는조달과관련하여조달기관의행위등이있다면, 그행위등의방식과관계없이 WTO 정부조달협정이적용되고, 일반원칙의위반등이문제가됨을밝히고있다.

그외주요정의규정들에대하여는각정의규정과관련한조항에서함께설명한다.

나. 적용범위및예외

1) 적용범위(제2조)

정부조달협정은원칙적으로협정적용대상조달에관한모든조치에적용되며, 조달이전적으로또는부분적으로전자적수단으로수행되는지를불문한다(제2조제1항).

한편, 정부조달협정의적용대상조달이란정부의목적을위한조달로서, 다음의것을말한다. ①상품, 서비스또는이들의조합에관한것으로서, **부록 I**의각당사국부속서에명시된것이어야한다. 다만, 상업적으로판매하거나재판매할목적으로, 또는상업적으로판매하거나재판매하기위한상품또는서비스를생산하거나공급하는것에사용할목적으로조달되는것은이에포함되지아니한다(제2조제2항가목). 그리고②여기에는계약적수단에의한것으로서구매, 임차및할부구매(매수선택권의유무를불문한다)가포함된다(제2조제2항나목). ③그리고정부조달협정제7조에따른공고의공

표당시같은협정제2조제6항에서제8항까지정한방법에따라조달가액을추산한가액이부록 I의당사국부속서에명시된관련**기준금액(양허하한선) 이상**일것이요구된다(제2조제2항다목). ④그리고조달기관에의한것으로서, 정부조달협정제2조제3항또는부록 I의당사국부속서에서협정적용대상으로부터달리제외되지아니한것이어야한다(제2조제2항라, 마목).

정부조달협정제2조제4항은정부조달협정의적용범위와관련하여, 각부속서에명시할사항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우선각당사국은부록 I의자신의부속서에일정한정보를명시하여야하는데, 우선**부속서 1**에는중앙정부기관으로서, 그조달이이협정의적용을받는것에관하여명시하여야한다(제2조제4항가목). 이와관련하여, 우리나라가양허한중앙정부기관으로서부록Ⅰ의부속서 1에기재된내용은아래와같다.[18]

부속서 1
중앙정부기관

양허기준금액 :

상품	SDR 130,000
서비스	SDR 130,000
건설서비스	SDR 5,000,000
건설-운영-이전(BOT)	SDR 5,000,000

기관목록 :

1. 감사원
2. 국무조정실
3. 국무총리비서실
4. 기획재정부
5. 교육부
6. 미래창조과학부
7. 외교부
8. 통일부
9. 법무부

[18]영문정본의내용은부록 1 참조.

10. 국방부
11. 행정자치부
12. 문화체육관광부
13. 농림축산식품부
14. 산업통상자원부
15. 보건복지부
16. 환경부
17. 고용노동부
18. 여성가족부
19. 국토교통부
20. 해양수산부
21. 공정거래위원회
22. 금융위원회
23. 국민권익위원회
24. 방송통신위원회
25. 국가인권위원회
26. 국민안전처 (협정제3조에따른공공의질서유지를위한목적의구매는제외한다)
27. 인사혁신처
28. 법제처
29. 국가보훈처
30. 식품의약품안전처
31. 국세청
32. 관세청
33. 조달청
34. 통계청
35. 대검찰청
36. 병무청
37. 방위사업청
38. 경찰청 (협정제3조에따른공공의질서유지를위한목적의구매는제외한다)
39. 문화재청
40. 농촌진흥청
41. 산림청
42. 중소기업청
43. 특허청
44. 기상청
4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속서 1에대한주석

1.위중앙정부기관은대한민국정부조직법의관련규정에따른그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및부속기관을포함한다. 별도의법인격을갖는기관으로서,
이부속서에열거되지아니한것은협정적용대상이아니다.

2.

이협정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그대통령령에따른중소기업을 위한유보분과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그리고축산법에따른농산물,
수산물및축산물의조달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3. 조달청이부속서 2 또는부속서 3에열거된기관을대신하여조달을수행하는경우, 그러한기관의적용범위및양허기준금액이적용된다.

1994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대한민국은 42개의[19]중앙정부기관에대해서양허를하였는데,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는소방방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정거래위원회등이추가되고정무장관실등이제외되어, 결과적으로양허기관수가 45개로확대되었다. 그리고부속서 1에대한주석에따라, 양허대상중앙정부기관에는 위 45개기관외에도정부조직법에따른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및부속기관이포함된다(1994 WTO 정부조달협정의해석상한국의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양허기관인지여부가문제가된사례에관하여는아래제4편의285면이하를참조). 다만별도의법인격을갖는기관으로서부속서 1에열거되지아니한것은양허대상중앙정부기관에포함되지않는다(그구체적인양허대상리스트에관하여는제2편참조).

그리고위에서열거된중앙정부기관의조달에해당하는경우라고하더라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따른중소기업을위한예외규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그리고축산법에따른농수축산물의조달에대하여는 WTO 정부조달협정이적용되지않는다. 이러한중소기업, 농수축산물에관한예

[19]위 42개중앙정부기관은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조정실, 정무장관(제1)실, 정무장관(제2)실, 경제기획원, 통일원, 총무처, 과학기술처, 환경처, 공보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농림수산부, 상공자원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노동부, 교통부, 체신부, 조달청(이목록상조달기관의구매분에한함. 부속서 2 및부속서 3의조달기관을위한구매와관련하여서는해당기관의적용범위와기준가가적용됨), 통계청, 기상청, 경찰청(협정제23조에규정된공공질서유지를위한구매는제외함), 국세청, 관세청, 대검찰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 공업진흥청, 특허청, 해운항만청, 철도청(한국정부는철도청을 1996년에공사화할계획이며, 이경우한국정부는아무런협의및/또는보상없이철도청을부속서 1로부터부속서 3으로옮길권리를가짐)이다.

외규정은 WTO 정부조달협정의개정협상을전후하여체결된 FTA 정부조달규정에 도대부분포함되어있다. 한편, 조달청의경우양허대상중앙정부기관에해당하지만, 조달청이부속서 2에열거된지방정부기관또는부속서 3에열거된기타공공기관등을 대신하여조달을수행하는경우에는, 그러한기관의적용범위및양허기준금액이적용된다. 따라서해당지방정부기관또는기타공공기관등이부속서 2, 3에따른양허대상이아닌경우에는 WTO 정부조달협정의적용이없고, 그러한기관들이양허대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부속서 2, 3에서정한양허기준금액(양허하한선)에따라 WTO 정부조달협정의적용여부를가린다.

양허기준금액(양허하한선)의산정단위가되는 SDR(Special Drawing Rights)이란국제통화기금(IMF)의특별인출권을의미하는것으로, WTO 정부조달협정및 FTA에규정된국제입찰대상금액은 SDR로표시되어있으며 2년마다원/SDR 환율의변동을반영하여원화환산액을고시하여야한다. 참고로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적용될정부조달계약의국제입찰대상금액산정시적용되는원/SDR환율은 1598.39원/SDR이었으나, 2019. 1. 1.부터 2020. 12. 31.사이적용된환율은 1,564.64원/SDR로원화가치상승으로인해환율이소폭하락하였다(2018. 12. 19.자. 기획재정부고시제2018-27호). [20]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등에서는 WTO 정부조달협정상양허금액에위환율을적용하여산출한원화환산금액을기준으로 WTO 정부조달협정적용대상국제입찰기준을원화로명시하고있다.

한편, 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은양허하한선의인하보다는주로양허대상기관을추가하는등의방법을통해양허의범위를확대하였는데, 미국의경우 12개중앙정부기관을신규양허하고, EU와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은

[20]2018. 12. 19. 자기획재정부보도자료,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고시」.

catch-all 방식으로[21] 중앙정부기관을폭넓게양허하였으며, 이스라엘도 5개의중앙정부기관을추가로양허하였다.[22]

부속서 2에는중앙정부보다하위의기관(지방정부기관)으로서, 그조달이이협정의적용을받는것을명시하여야한다(제2조제4항라목). 우리나라가양허한지방정부기관으로서부록Ⅰ의부속서 2에기재된내용은아래와같다.[23]

부속서 2
중앙정부보다하위의기관

양허기준금액 :

상품	SDR 200,000	가군
	SDR 400,000	나군
서비스	SDR 200,000	가군
	SDR 400,000	나군
건설서비스	SDR 15,000,000	
건설-운영-이전(BOT)	SDR 15,000,000	

기관목록 :
1. 가군
1.1. 서울특별시
1.2. 부산광역시
1.3. 대구광역시
1.4. 인천광역시
1.5. 광주광역시
1.6. 대전광역시
1.7. 울산광역시
1.8. 경기도

[21] 현재양허리스트에있는기관뿐만아니라, 향후만들어지는기관에대해서도폭넓게양허하는방식을의미한다.

[22] 박혜리, 개정정부조달협정(GPA)의주요내용과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7면.

[23] 영문정본의내용은부록 1 참조.

1.9. 강원도
1.10. 충청북도
1.11. 충청남도
1.12. 전라북도
1.13. 전라남도
1.14. 경상북도
1.15. 경상남도
1.16. 제주특별자치도

2. 나군
2.1. 서울특별시소속지방정부
2.1.1. 종로구
2.1.2. 중구
2.1.3. 용산구
2.1.4. 성동구
2.1.5. 광진구
2.1.6. 동대문구
2.1.7. 중랑구
2.1.8. 성북구
2.1.9. 강북구
2.1.10. 도봉구
2.1.11. 노원구
2.1.12. 은평구
2.1.13. 서대문구
2.1.14. 마포구
2.1.15. 양천구
2.1.16. 강서구
2.1.17. 구로구
2.1.18. 금천구
2.1.19. 영등포구
2.1.20. 동작구
2.1.21. 관악구
2.1.22. 서초구
2.1.23. 강남구
2.1.24. 송파구
2.1.25. 강동구

2.2. 부산광역시소속지방정부
2.2.1. 중구
2.2.2. 서구
2.2.3. 동구
2.2.4. 영도구
2.2.5. 부산진구
2.2.6. 동래구

2.2.7. 남구
2.2.8. 북구
2.2.9. 해운대구
2.2.10. 사하구
2.2.11. 금정구
2.2.12. 강서구
2.2.13. 연제구
2.2.14. 수영구
2.2.15. 사상구
2.2.16. 기장군

2.3. 인천광역시소속지방정부
2.3.1. 중구
2.3.2. 동구
2.3.3. 남구
2.3.4. 연수구
2.3.5. 남동구
2.3.6. 부평구
2.3.7. 계양구
2.3.8. 서구
2.3.9. 강화군
2.3.10. 옹진군

부속서 2에대한주석

1. 위중앙정부보다하위의기관은대한민국지방자치법의관련규정에따른직속기관, 사업소및출장소를포함한다. 별도의법인격을갖는기관으로서, 이협정부속서에기재되지아니한것은적용대상이아니다.

2. 이협정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그대통령령에따른중소기업을위한유보분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1994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대한민국은 15개의광역자치단체에한하여양허를하였는데,[24]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는위 15개광역자치단체에울산광역시를더

[24] 1994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대한민국이양허한광역자치단체는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광주직할시, 대전직할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의 15개이고, 기초자치단체는양허대상에포함되어있지않았다.

하여 16개의광역자치단체를양허하는한편, 서울, 부산과인천 3개광역자치단체산하 51개기초자치단체를추가적으로양허하였다.

그리고지방자치법상위에서열거된지방자치단체의직속기관, 사업소및출장소도양허대상에포함되고, 다만법인격을갖는기관으로서위부속서 2에기재되지아니한것에대하여는 WTO 정부조달협정이적용되지아니한다(그구체적인양허대상리스트에관하여는제2편을참조). 주석에따라중소기업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중앙정부기관의경우와동일하다.

참고로부속서 2와관련하여, 싱가포르등은양허대상지방정부기관이존재하지않고, 일본은 1994 WTO 정부조달협정에비하여 7개의지방정부를신규양허하였으며,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은중앙정부와마찬가지로지방정부에대해서도catch-all 방식으로양허대상지방정부의범위를크게확대하였다.[25]

부속서 3에는그밖의모든기관으로서, 그조달이이협정의적용을받는것을명시하여야한다(제2조제4항다목). 우리나라가양허한공공기관으로서부록 I 의부속서 3에기재된내용은아래와같다.[26]

부속서 3
기타기관

양허기준금액:

상품	SDR 400,000
서비스	SDR 400,000
건설서비스	SDR 15,000,000

[25]박혜리, 개정정부조달협정(GPA)의주요내용과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7면

[26]영문정본의내용은부록 1 참조.

기관목록:

1. 한국산업은행
2. 기업은행
3. 한국조폐공사
4. 한국전력공사 (HS 번호 8504, 8535, 8537 및 8544 범주에해당하는제품의구매는제외한다) (주석3)
5. 대한석탄공사
6. 한국광물자원공사
7. 한국석유공사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 한국도로공사
10.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수자원공사
12.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4. 한국관광공사
15. 근로복지공단
16. 한국가스공사
17. 한국철도공사
18. 한국철도시설공단
19. 서울메트로
20.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21. 인천메트로
22. 부산교통공사
23. 대구도시철도공사
2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25. 광주도시철도공사

부속서 3에대한주석

1. 이협정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지방공기업법및같은법시행규칙에따른중소기업을위한유보분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2. 이협정은조달계약의일부를구성하거나조달계약에부수하는운송서비스의조달을적용대상으로하지아니한다.

3. 이협정은한국전력공사및한국가스공사의조달과관련하여다음서비스의조달을적용대상으로하지아니한다.

설명 잠정 CPC 참조코드 GNS/W/120

1. 엔지니어링서비스	8672	1.A.e.
2. 종합엔지니어링서비스	8673	1.A.f.
3. 컴퓨터서비스및관련서비스	84	1.B.
4. 성분 · 순도검사및분석서비스	86761	1.F.e.
5. 기술검사서비스	86764	1.F.e.
6. 관련과학및기술자문서비스	8675	1.F.m.
7. 철제품, 기계류및장비에633, 부수하는수선서비스	8861~8866	1.F.n.
8. 경영자문서비스	865	1.F.c.
9. 프로젝트관리서비스	86601	1.F.d.
10. 통신서비스 (코드및프로토콜변환포함)	7523	2.C.

4. 한국철도시설공단의조달과관련하여이협정은다음만을적용대상으로한다.
   - 일반철도시설의건설및조달
   - 일반철도설계를포함하는엔지니어링서비스
   - 일반철도시설의감독
   - 일반철도시설의관리

1994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대한민국은 23개의정부투자기관을기타기관으로양허를하였는데,[27]개정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는기존양허대상중파산한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등을제외하고, 신규로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27] 개정전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대한민국이양허한정부투자기관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HS 8504, 8535,8537 및 8544 범주에해당되는품목은제외), 대한석탄공사, 한국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한국무역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통신(일반통신상품및통신망장비구매는제외), 한국관광진흥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근로복지공사, 한국가스공사이다.

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7개기관을추가적으로양허하여총 25개의정부투자기관으로양허대상을확대하였다(공기업민영화등이이루어지는경우양허대상기관에서제외할수있는지여부등공공기관의양허대상범위에관한구체적인논의는제2편참조). 주석에따라중소기업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부속서 1의중앙정부기관및부속서 2의지방자치단체의경우와동일하나, 위공공기관의운송서비스의조달에대하여는 WTO 정부조달협정이적용되지않는다.

위공공기관중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및한국철도시설공사의경우적용대상조달의범위가제한되는데, 한국전력공사와한국가스공사의경우①엔지니어링서비스, ②종합엔지니어링서비스, ③컴퓨터서비스및관련서비스, ④성분·순도검사및분석서비스, ⑤기술검사서비스, ⑥관련과학및기술자문서비스, ⑦철제품, 기계류및장비에부수하는수선서비스, ⑧경영자문서비스, ⑨프로젝트관리서비스, ⑩통신서비스(코드및프로토콜변환포함)에대해서는 WTO 정부조달협정이적용되지않는다.

위각서비스에해당하는지여부는 CPC 및 GNS/W/120에따라판단하는데, 부속서 3에서 CPC(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란앞서설명한바와같이 UN 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에서발표하는상품및서비스에대한분류기준을의미하는것이고,[28] GNS/W/120란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Group of Neogotiations on Services/ WTO/ 120을의미하는것으로, WTO 설립협정부속서 1B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에서채택한서비스분야별분류목록으로위 CPC를참조하여우루과이라운드협상당시에마련한것이다.[29]

---

[28] CPC에관하여는https://unstats.un.org/unsd/classifications/unsdclassifications참조.

[29] WTO는위 GNS/W/120에따른분류와 CPC에따른분류의대응표도마련하고있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의경우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와는달리특정한상품및서비스의조달에한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이적용되는것으로양허하였는데, 그특정한상품및서비스의조달에는①일반철도시설의건설및조달, ②일반철도설계를포함하는엔지니어링서비스, ③일반철도시설의감독, ④일반철도시설의관리가포함된다. 그리고그와같은철도시설관련조달외에는 WTO 정부조달협정이적용되지아니한다.

앞서본부속서 1 내지 3에따라대한민국이각기관별로설정한양허기준금액(양허하한선)을표로정리하면아래와같다.

[대한민국의각기관별양허하한선]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
상품	13만 SDR (2.0억원[30])	20만 SDR/40만 SDR (3.1억원/6.3억원)	40만 SDR 6.3억원
서비스	13만 SDR (2.0억원)	20만 SDR/40만 SDR (3.1억원/6.3억원)	40만 SDR (6.3억원)
건설서비스	500만 SDR (78억원)	1,500만 SDR (235억원)	1,500만 SDR (235억원)

그리고 WTO 정부조달협정주요가입국의양허하한선을비교하여정리하면아래와같다.

[WTO 정부조달협정주요가입국양허하한선(시장개방기준)][31]

[30] 2019, 2020년적용원/SDR 환율 1,564.64원을적용하여환산한원화금액이다. 이하같은표내에서동일하다.

[31] 한국조달연구원, WTO 정부조달개정협정해설, 2011, 132면표및 WTO 홈페이지(https://www.wto.org/english/tratop_e/gproc_e/gp_app_agree_e.htm)상각국양허내용

구분	중앙정부(만SDR)			지방정부(만SDR)			정부투자기관(만SDR)		
	상품	서비스	건설	상품	서비스	건설	상품	서비스	건설
대한민국	13	13	500	20/40	20/40	1,500	40	40	1,500
미국	13	13	500	35.5	35.5	500	25만$/ 40	25만$/ 40	500
캐나다	13	13	500	35.5	35.5	500	35.5	35.5	500
EC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일본	13	13	450	20	20	1,500	13	13	1,500
홍콩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싱가포르	13	13	500	-	-	-	40	40	500
스위스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이스라엘	13	13	850	25	25	850	35.5	35.5	850

요컨대, 대한민국은상품과서비스에대하여는 WTO 정부조달협정의주요가입국과마찬가지로중앙정부기관의경우 13만 SDR, 지방자치단체의경우광역자치단체의경우에는 20만 SDR, 정부투자기관등기타기관의경우 40만 SDR의양허기준금액(양허하한선)을따르고있다. 그러나기초자치단체의경우에는상품과서비스에대해 40만 SDR의양허기준금액(양허하한선)을따르고있고, 건설서비스의경우중앙정부기관의경우에만다른주요가입국과같이 500만 SDR의기준을따르고있을뿐, 지방정부및정부투자기관등기타기관에대하여는 1,500만 SDR의높은양허기준금액(양허하한선)을적용하여그개방범위를축소하고있다.

한편, 각당사국은**부속서 4**에는정부조달협정의적용을받는**상품**에관하여명시하여야하는데(제2조제4항라목), 우리나라가양허한부속서 4의내용은아래와같다.[32]

[32]영문정본의내용은부록 1 참조.

부속서 4

상품

1. 이협정은이협정에서달리명시되지아니하는한, 부속서 1에서부속서 3까지에기재된기관이조달하는모든상품의조달을적용대상으로한다.

2. 이협정은국방부및방위사업청의조달과관련하여다음 FSC 범주만을적용대상으로한다. 단, 제3조제1항의규정에따른대한민국정부의결정을조건으로한다.

FSC 참조번호	*설명*
1. 2510	차량의운전실, 몸체및프레임용구조의부품
2. 2520	차량의동력전달장치부품
3. 2540	차량용가구및부속물
4. 2590	잡종차량부품
5. 2610	항공기용을제외한공기식타이어및튜브
6. 2910	항공기용이아닌엔진의연료계통부품
7. 2920	항공기용이아닌엔진의전기계통부품
8. 2930	항공기용이아닌엔진의냉각계통부품
9. 2940	항공기용이아닌엔진의공기및오일필터, 여과기및 정화기
10. 2990	항공기용이아닌잡종엔진부속품
11. 3020	기어, 활차, 톱니바퀴및전달체인
12. 3416	선반
13. 3417	밀링머신
14. 3510	세탁및드라이크리닝장비
15. 4110	냉동장비
16. 4230	오염제거및주입용장비
17. 4520	난방및온수장비
18. 4940	잡종정비및수리공장용특수장비
19. 5120	무동력이고날이없는수공구
20. 5410	조립식및이동식건물
21. 5530	합판및베니어판
22. 5660	울타리및문부품
23. 5945	릴레이및솔레노이드
24. 5965	헤드세트, 핸드세트, 마이크로폰및스피커
25. 5985	안테나, 도파관및관련장비
26. 5995	케이블, 코드및와이어조립체: 통신장비용
27. 6505	약품및생물제제
28. 6220	차량용전기조명등및장치
29. 6840	살충제, 소독제
30. 6850	잡종화학특수품
31. 7310	음식조리, 제빵및서빙장비

32. 7320	부엌용장비및기구
33. 7330	부엌용손공구및기구
34. 7350	식기류
35. 7360	음식조리및서빙용세트, 키트, 의류및조립부품
36. 7530	사무용품및기록양식
37. 7920	비, 솔, 걸레및스폰지
38. 7930	청소및광택용화합물및조제품
39. 8110	드럼및캔
40. 9150	오일및그리스: 절삭, 윤활및유압용
41. 9310	종이및판지

즉, 대한민국은위부속서 1 내지 3에따른양허대상기관이조달하는모든상품에 대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의적용을받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국방부와방위사업청의조달과관련하여서는일정한 FSC 범주내의상품에대한조달만을그적용대상으로하며, 다만그러한경우에도 WTO 정부조달협정제3조제1항의안보와일반적예외에관한규정에의거, 국가안보또는국방목적등에불가결한조달에해당한다는대한민국정부의결정에따라적용제외가가능하다. 여기서 FSC란연방보급(품) 분류(Federal Supply Classification)를의미하는것으로, NATO 표준화협정에[33]의거하여채택·사용하고있는미국의연방보급분류번호로서 4자리로숫자로구성된것을의미한다.[34]

부속서 5에는이협정의적용을받는**서비스**(건설서비스를제외한다)를명시하여야하는데(제2조제4항마목), 우리나라가양허한부속서 5의내용은아래와같다.[35]

부속서 5

[33]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표준화협정(Standardization Agreement, STANAG)이란, NATO 협의체구성원간군사용또는기술적절차, 장비등을통일적으로규율하여회원국간의연합임무수행에필수적인다양한통신, 정보시스템사이를원활하게하기위한것이다. STANAG는두개공식언어인영어와프랑스어로발행되며, 벨기에브뤼셀에위치한나토표준화본부(NATO Standardization Agency)에의해이루어진다.

[34] FSC에관한상세한내용은http://www.wingovernmentcontracts.com/federal-supply-classes.htm 참조.

[35]영문정본의내용은부록 1 참조.

서비스

MTN.GNS/W/120 문서에수록된서비스일반목록중다음서비스가적용대상이다.

설명	*잠정 CPC 참조번호*	*MTN.GNS/W/120*
1 회계, 감사및부기서비스	862	1.A.b.
2 세무서비스	863	1.A.c.
3 건축서비스	8671	1.A.d.
4 엔지니어링서비스	8672	1.A.e.
5 종합엔지니어링서비스	8673	1.A.f.
6 도시계획및조경서비스	8674	1.A.g.
7 컴퓨터서비스	84	1.B.
8 컴퓨터하드웨어설치 관련자문서비스	841	1.B.a.
9 소프트웨어실행서비스	842	1.B.b.
10 데이터처리서비스	843	1.B.c.
11 데이터베이스서비스	844	1.B.d.
12 사무기계및장비 (컴퓨터포함)의정비및 수리서비스	845	1.B.e.
13 운전자없는선박관련 임대/리스서비스	83103	1.E.a.
14 운전자없는항공기관련 임대/리스서비스	83104	1.E.b.
15 운전자없는기타운송장비 관련임대/리스서비스 (승객 15인미만승용차에한한다)	83101, 83105*	1.E.c.
16 운전자없는기타기계및 장비관련임대/리스서비스	83106, 83108, 83109	1.E.d.
17 운전자없는건설기계및 장비관련임대/리스서비스	83107	
18 광고대행서비스	8711, 8719	1.F.a.
19 시장조사및여론조사서비스	864	1.F.b.
20 경영자문서비스	865	1.F.c.
21 프로젝트관리서비스	86601	1.F.d.
22 성분 · 순도검사및분석	86761*	1.F.e.

서비스 (대기, 물, 소음수준및진동 수준에대한진단, 검사및분석 서비스에한한다)				
23 기술점검서비스	86764			
24 농업및축산업관련 자문서비스	8811*, 8812*		1.F.f.	
25 임업에부수하는서비스 (항공진화및소독을제외한다)	8814*			
26 어업관련자문서비스		882*		1.F.g.
27 광업관련자문서비스		883*		1.F.h.
28 관련과학및기술자문서비스		86751, 86752	1.F.m.	
29 장비의정비및수리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1.F.n.	
30 사진서비스		875		1.F.p.
31 포장서비스		876		1.F.q.
32 인쇄 (스크린인쇄, 그라비어 인쇄및인쇄관련서비스)		88442*	1.F.r.	
33 속기서비스		87909*	1.F.s.	
34 행사대행서비스				
35 번역및통역서비스	87905		1.F.t.	
36 온라인정보및데이터베이스 검색		7523*		2.C.j.
37 전자적데이터교환	7523*		2.C.k.	
38 저장 · 전송, 저장 · 검색을 포함하는고도/부가가치 모사전송서비스		7523*		2.C.l.
39 코드및프로토콜변환		-		2.C.m.
40 온라인정보및/또는데이터 처리 (거래처리를포함한다)	843*		2.C.n.	
41 영화및비디오테이프생산 및배급서비스 (유선 TV	96112*, 96113*		2.D.a.	

	방송을위한서비스를제외한다)			
42	음반생산및배급서비스 (음향녹음)	-	2.D.e.	
43	폐수처리서비스 (산업폐수의수집및처리 서비스에한한다)	9401*		6.A.
44	산업폐기물처리서비스 (산업폐기물의수집, 운반 및처분서비스에한한다)	9402*	6.B.	
45	배기가스정화서비스및 소음저감서비스 (건설시공서비스를제외한다)	9404*, 9405*	6.D.	
46	환경검사및평가서비스 (환경영향평가서비스에한한다)	9406*, 9409*		
47	호텔및기타숙박서비스	641	9.A.	
48	음식수발서비스	642		9.A.
49	오락이없는음료수발서비스 (CPC 6431의철도및항공운송 관련시설을제외한다)	6431		9.A.
50	여행대리점및패키지관광 전문서비스 (정부수송요청을제외한다)	7471	9.B.	
51	국내운송을제외한국제운송	7212*		11.A.b.
52	선박의정비및수리	8868*	11.A.d.	
53	국내운송을제외한컨테이너 화물의운송	71233*	11.F.b.	
54	화물운송대행서비스 - 해운대행서비스 - 해운화물주선서비스 - 해송중개서비스 - 항공화물운송대행서비스 - 통관서비스	748*		11.H.c.
55	철도운송을위한화물주선	-	11.I.	

부속서 5에대한주석

별표(*)는서비스무역에대한최초의양허에관한대한민국의수정조건부양허안에자세히설명된바에따라서라일부”를뜻한다.

WTO 정부조달협정은원칙적으로포괄적인개방을요구하는상품의조달과는달리, 서비스에대해서는각가입국들이 WTO 정부조달협정의적용대상이될서비스품목을부속서에표시하도록하고있어, 각가입국들은양허항목의목록을표시하는이른바 Positive List(양허항목목록) 방식또는양허제외항목의목록(양허제외항목목록)을표시하는이른바 Negative List 방식으로양허대상서비스를부속서 5에표시하고있다.

대한민국의경우서비스에대하여는앞서본부속서 4의상품과는달리, 원칙적으로모든서비스가양허대상에포함되는것이아니라, 부속서 5에열거된서비스에한하여 WTO 정부조달조약의적용이있다고표시하여, 이른바 Positive List(양허항목목록) 방식을통해양허하고있다. 그리고양허대상서비스의범위는 CPC 번호와 MTN.GNS/W/120 번호에따라특정되는데, 이는각각부속서 3에서한국가스공사및한국철도시설공사에대한적용대상조달의범위를제한하는데사용된기준과동일하다.

한편, 1994 WTO 정부조달협정에대하여대한민국은중앙정부기관과지방자치단체에한하여서비스조달시장을개방하였고, 공공기관기타기관에대하여는서비스조달시장을개방하지아니하였으나, 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는위와같이부속서 5에서정한양허대상서비스에해당하는이상조달기관이공공기관기타기관에해당하더라도 WTO 정부조달협정을적용하는것으로양허범위를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부속서 6**에는이협정의적용을받는**건설서비스**에관하여명시하여야하는데(제2조제4항바목), 우리나라가양허한부속서 6의내용은아래와같다.[36]

[36]영문정본의내용은부록 1 참조.

부속서 6

건설서비스

정의 :

1. 건설서비스계약이란그어떠한수단에의해서든중앙품목분류제51장에서뜻하는토목또는건축공사를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계약을말한다.
그러한계약은건설 · 운영 · 이전(BOT) 양허기준금액이적용되는 BOT 계약을포함한다.

2. 건설 · 운영 · 이전계약이란물리적사회기반시설, 플랜트, 건물, 시설또는그밖의정부소유작업장을건설하거나복구하는것을가장중요한목적으로하는계약으로서,
그계약에따라공급자의계약상합의의이행에대한대가로서조달기관이해당공급자에게명시된기간동안그러한작업장을일시적으로소유하거나통제하고운영하며, 계약기간동안그러한작업장을사용하는대가를지불할것을요구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것을말한다.

건설서비스목록(51분류, CPC) :

설명	잠정 CPC 참조번호
1. 건설공사	51

부속서 6에대한주석

이협정은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따른중소기업을위한유보분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즉, 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부속서 6에따르면, 위정부조달협정의개정전에이미대한민국이체결하고발효되고있던한미 FTA, 한-EU FTA에서와마찬가지로, 양허대상건설서비스의범위에건설 · 운영 · 이전계약(Build-Operate-Transfer, BOT)을포함함으로써, 일정한범위의민자사업에대해서도 WTO 정부조달협정의적용을받는것으로개방하였다. 여기서건설 · 운영 · 이전계약(BOT) 방식의민간투자사업이란사회기반시설의준공후일정기간동안사업시행자에게해당시설의소유권이인정되며그기간이만료되면시설소유권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는방식을의미한다(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4조제3호). 따라서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4조제1호에서정한한사회기반시설의준공과동시에당해시설의소유권이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며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시설관리운영권을인정하는방식[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식으로추진하는경우또는같은조제2호에서정한한사회기반시설의준공과동시에해당시설의소유권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시설관리운영권을인정하되, 그시설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이협약에서정한기간동안임차하여사용・수익하는방식[이른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식으로추진하는경우등에는위 WTO 정부조달협정의적용이없다. 다만, 주무관청은정부조달협정등의적용대상에서제외되는민간투자사업의경우에도해당민간투자사업의목적・성질등을고려할때 국제입찰에의하여사업을수행할필요가있는경우로서부실시공방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또는안전도향상, 기술개발등의측면에서필요한경우에는정부조달협정등을적용하여민간투자사업을시행할수있다(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3조의2 제4항, 같은법시행령제2조의3 제3항).

한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은그투자자격에제한을내외국인의제한을두고있지아니하여, 사실상그법의적용을받는민간투자에대하여는이미사실상개방이이루어졌다. 그리고같은법제3조의2 제1항본문은정부조달협정또는국제협정(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적용되는민간투자사업의범위는주무관청이그법에따라추진하는민간투자사업중총사업비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상인민간투자사업으로한다고규정하여, WTO 정부조달협정또는 FTA에서양허한양허하한선을초과하는금액의조달에한하여만그적용이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그리고같은법제1항단서, 같은법시행령제2조의3 제1항에따르면, 국가안보또는국방목적수행과관련된사회기반시설로서중대한안보상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공공의질서및안전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정부조달협정등이적용되는민간투자사업의범위에서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는 WTO 정부조달협정제3조의적용예외를민자사업에관하여명시한것으로이해된다.

한편, **부속서 7**에는**일반주석**에관하여명시하여야하는데(제2조제4항사목), 우리나라가양허한일반주석(부속서 7)의내용은아래와같다.[37]

부속서 7
일반주석

1. 대한민국은한국철도공사및한국철도시설공단의조달과관련하여, 노르웨이및스위스가그들의관련시장에서대한민국의사업자에게동등하고효과적인접근을제공한다고받아들일때까지이들나라의공급자및서비스제공자에게는이협정의혜택을부여하지않을것이다.

2. 부속서 5에기재된서비스는특정당사국에대해서는그국가가동서비스를자국의부속서 5에포함시킨만큼만협정적용대상이된다.

3. 이협정은급식프로그램을증진하기위한조달을적용대상으로하지아니한다.

4.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이협정은공항을위한조달을적용대상으로하지아니한다.

대한민국은상호주의에따라, 부속서 3의경우노르웨이및스위스에대하여는해당국가의관련시장에서대한민국사업자에게동등한개방이이루어질때까지한국철도공사및한국철도시설공단의조달과관련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의혜택을부여하지아니하고, 부속서 5의경우상대방국가가같은서비스를자국의부속서 5에포함시킨만큼만 WTO 정부조달협정의적용을받는것으로하였다.

그리고위와같은상호주의와관계없이급식프로그램을증진하기위한조달, 공항을위한조달에대하여는 WTO 정부조달협정의적용이없는것으로예외규정을두었다.

위부속서 1 내지 7에서정한양허대상기관및금액기준에부합하더라도, 일정한조달에대하여는, 부록 I의당사국부속서에서달리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정부조달협정이적용되지아니한다. 그러한정부조달협정적용제외조달로는①토지, 기존건물또는다른부동산, 또는이들에대한권리의취득또는임차, ②비계약적합의

[37]영문정본의내용은부록 1 참조.

또는당사국이제공하는모든형태의지원(협력약정, 공여, 융자, 지분참여, 보증및재정적유인을포함한다), ③재무대리또는예탁서비스, 규제되는금융기관의청산·관리서비스, 공적부채(차입, 정부채, 어음및그밖의유가증권을포함한다)의판매, 상환및유통과관련된서비스의조달또는취득, ④공공고용계약, ⑤국제지원(개발원조를포함한다) 제공이라는특정목적의것, 군대주둔과관련되거나사업서명국의공동이행과관련된국제협약의특유한절차또는조건에따른것, 또는국제기구의특유한절차또는조건에따르거나국제적공여, 차관또는그밖의지원으로자금이충당되는것으로서, 적용될수있는절차또는조건이이협정과불합치하는경우의것이포함된다(제2조제3항).

WTO 정부조달협정제2조는협정의적용을회피하려는경우를고려하여여러가지규정을두고있다. 우선 WTO 정부조달협정의적용대상인조달과관련하여조달기관이부록 I의당사국부속서에따른적용을받지아니하는사람, 즉양허기관이아닌자에게특정요건에따라조달할것을요구하는경우, WTO 정부조달협정제4조에서규정한일반원칙들을준용한다(제2조제5항). 즉, 양허기관이협정의적용을회피하기위하여양허기관이아닌자를통해우회하여조달을실시하는경우에도협정상의일반원칙들이준용된다. 다만, 이러한경우협정상의절차규정등다른규정은준용되지않는다.

그리고앞서살펴본바와같이조달의가액에따라그적용여부가달라지게되므로, WTO 정부조달협정제2조에서는조달의가액을평가하는방법에관하여도함께규정하고있다. 조달기관은협정적용대상조달인지를확정하기위하여조달의가액을추정할때조달을이협정의적용으로부터완전히또는부분적으로배제할의도로해당조달을별개의조달로나누거나, 조달가액추산을위한특유의가액평가방법을선택하거나사용할수없다(제2조제6항). 즉협정의적용을회피할목적으로조달가액을분할하거나쪼개어양허하한선금액기준을충족하지않도록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한편, 추정가액의산정에관한보다상세한내용은제3편의169면이하를참조).

그리고①할증금, 요금, 수수료및이자, 그리고②조달이선택권의가능성을규정하고있는경우, 그러한선택권의총가액을포함한모든형태의대가를고려하여, 조달

의전체기간에걸친추산최대총조달가액(하나또는복수의공급자에게낙찰되는지를불문한다)을포함시킨다(제2조제6항). 이와관련하여 GATT 정부조달협정의해석상부가가치세를가액산정시포함할것인지가문제된아래와같은사례에서, GATT 정부조달협정에따라설치된패널에서조달기관이부가가치세를면제받는경우가아닌이상부가가치세를가액산정시포함하여야한다고판단된사례가있다.

[EEC 부가가치세사건][38]

1. 사안

정부구매계약가액의결정시부가가치세를공제하는 EEC의조치에대하여, 1982. 7. 2. 미국이정부조달위원회에 EEC를제소한사건

2. 주요쟁점

EEC가회원국정부의정부구매계약이정부조달협정적용을받는지여부를판단할때, 구매총액에서부가가치세액을제외한금액을기준으로양허범위를판단하뭉로써정부조달협적적용제외범위를확대한것이 GATT 정부조달협정위반인지여부

3. 패널의주요판단내용

'계약가액(contract of a value)'이라는용어는조달기관이부담하는총비용을의미하고, 양허기관이부가가치세를면제받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불하여야할부가가치세를포함하는것이며, 대부분의협정당사국이기준금액의판단시부가가치세와같은간접세를포함하였다.

조달의개별적인요건이두건이상의낙찰이나낙찰의분할로귀결되는경우(이하 "**반복계약**"), 최대조달추정가액의산정은①직전 12개월또는조달기관의직전회계연도동안낙찰된같은유형의상품또는서비스의반복계약의가액으로서, 가능한경우,

[38]EEC-value added Tax and Threshold, GATT Panel Report, GPR/21-33S/247. 박노형외 31인,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2018, 512면내지 514면참조.

직후 12개월에걸쳐조달될상품또는서비스의수량또는가액의예상되는변동을고려하여조정한것, 또는②최초낙찰직후 12개월또는조달기관의회계연도동안낙찰될같은유형의상품또는서비스의반복계약의추정가액에근거하여산정하여야한다(제2조제7항).

리스, 임차, 할부구매에의한상품또는서비스의조달, 또는총가격이명시되지아니한조달과관련해서는그기한에따라가액평가를달리하여야한다. 우선기한을정한계약과관련해서는①계약기간이 12개월이하인경우, 그기간동안의최대총추정가액, 또는②계약기간이 12개월을초과하는경우, 최대총가액에따라가액을산정한다. 이에반하여계약이무기한인경우, 추정월지급액에 48을곱한것에따라가액을산정하고, 계약이기한을정한계약이될지가확실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이무기한인경우와같이가액을산정한다(제2조제8항).

2) 안보와일반적예외(제3조)

WTO 정부조달협정제3조는안보및일반적예외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WTO 정부조달협정의어떠한규정도당사국이무기, 탄약또는전쟁물자의조달이나국가안보또는국방목적에불가결한조달과관련된, 필수적인안보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여기는(considers) 행위를하거나그러하다고여기는정보를공개하지아니하는것을막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제3조제1항). GATT 이래 WTO를거쳐오면서 안보상의예외규정의모호함과예외규정의적용범위가확장될우려가제기되었고, GATT/WTO에서안보보호를이유로한무역제한적조치는대부분예외인정을받아왔으나,그러한사례의수자체는많지않다.

그리고 WTO 정부조달협정의어떠한규정도당사국이①공공의도덕, 질서또는안전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②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③지식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④장애인, 자선기구, 교도소노역의상품또는서비스와관련되는조치를부과하거나집행하는것을막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단, 그러한조치가같은조건하에있는당사국사이에서

자의적이거나정당화할수없는차별, 또는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의수단이되는방식으로적용되지아니하는것을조건으로한다(제3조제2항).

3) 개발도상국(제5조)

WTO 정부조달협정제5조는개발도상국의 WTO 정부조달협정가입을촉진하기위해과도조치등의특례를규정하고있다. WTO 정부조달협정의가입협상과협정의이행및운영에있어서, 당사국은개발도상국및최빈개발도상국(이하달리특정적으로구별되지아니하는한, 총체적으로 "**개발도상국**"이라한다)의개발, 재정및무역상의소요및상황을특별히고려하고, 이러한소요및상황이나라마다상당히다를수있다는것을인정한다. 이조항에규정된바와요청에따라당사국은최빈개발도상국, 그리고다른모든개발도상국(특별하고다른대우가해당개발도상국의개발상소요를충족하는경우로서, 그소요를충족하는정도까지부여한다)에대하여특별하고다른대우를부여한다(제5조제1항). 그러한특별대우에관하여는제5조제2항이하에서상세히규정하고있다.[39]

4) 적용범위의수정과조정(제19조)

WTO 정부조달협정에가입한당사국은다른당사국들과세부적인협상을거쳐개방조달기관, 개방조달분야등을양허안을통해확정하여유지하는데, 추후그국가의 WTO 정부조달협정상양허대상조달기관이공공기관에서완전한시장경쟁의상황에놓이는민간회사로민영화되는등조직변화를발생하게되는경우, 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여부가문제된다. 예를들어, 한당사국이부록 I 의부속서에포함되어있는기관을, 해당기관이민영화되었다는근거로대상에서삭제하고자하지만, 다른당사국들은해당기관이실제로정부의영향력또는통제에서벗어났는지확신하지못하는상황이그러한경우에해당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 1994 WTO 정부조달협정은제24조제6항에서협정을구성하는부속서의변화상황에대해규정하고있었으나, 민영화의의미

[39] 개발도상국관련조항은 WTO 정부조달협정에서상당한분량을차지하고있으나, 개발도상국의협정가입및가입후적용수준에관한내용이어서본용역의목적과무관하므로상세한검토를생략하기로한다.

및기준, 민영화에따른협의및분쟁해결절차의번거로움등으로인하여상당한논란이 지속되었다. 이에개정 WTO 정부조달협정제19조에서는협정의적용범위변경의기준과관련하여, 협정의적용범위변경에대한제안, 제안된범위변경과관련한의견차이를해소하기위한중재절차등에관한명시적기준을규정하고있다. 다만, WTO 정부조달협정제19조제8항은정부조달위원회가그정부통제와영향력이효과적으로배제되었는지에대한예시적기준을채택하도록규정하고있어, 향후구체적기준마련을위한별도작업이진행되고있으나, 아직그완료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40]

WTO 정부조달협정제19조에서는협정의적용범위에대한수정및정정절차등에 관하여규정하고있다. 당사국은정정, 한부속서로부터다른부속서로의기관의이전, 기관의철회또는부록 I의자신의부속서에대한다른수정에관한제안을정부조달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수정을제안하는당사국은그러한통보를할때①기관의협정적용대상조달에대한정부의통제또는영향이효과적으로제거되었다는사유로권리를행사하면서부록 I의자신의부속서로부터해당기관을철회하겠다는제안인경우, 그러한제거에관한증거, 또는②다른모든수정안의경우, 이협정에규정된, 상호합의한협정적용범위의변화가야기할만한결과에관한정보를포함하여통보하여야한다(제19조제1항).

위와같은수정안에대한통보가있는경우, 통보된수정안으로인해정부조달협정에서의자신의권리가영향을받을수있는당사국은해당수정안에대한반대를위원회에통보할수있다. 그러한반대는해당통보가당사국에게회람된날로부터 45일이내에이루어지고, 반대의이유를제시하여야한다(제19조제2항).

위와같이수정안통보에대한반대가있는경우, 수정하는당사국및반대를제기하는당사국(이하 "반대하는당사국"이라한다)는협의를통하여반대를해결하도록모든시도를다하여야한다. 그러한협의에서수정하는당사국및반대하는당사국은① WTO 정부조달협정제19조제1항가호에따른통보, 즉조달대상기관을철회하겠다는

[40]한국조달연구원, WTO 정부조달개정협정해설, 2011, 119면.

제안과관련해서는, 기관의협정적용대상조달에대한정부의통제또는영향의효과적인제거를적시하는기준(즉, WTO 정부조달협정제19조제8항나호에따라정부조달위원회에서채택된예시기준)에따라고려하여야한다. 그리고② WTO 정부조달협정제19조제1항나호에따른통보, 즉다른모든수정안과관련해서는, 이협정에규정된권리및의무의균형과상호합의한협정적용범위의수준을유지할목적으로, 수정을위하여제안될보상적조정의수준과관련되는기준(즉, WTO 정부조달협정제19조제8항다호에따라정부조달위원회에서채택된기준)에따라고려하여야한다(제19조제3항).

수정하는당사국과반대하는당사국이협의를통하여반대를해결하고, 해당수정하는당사국이이협의의결과에따라자신의수정안을개정하는경우, 해당수정하는당사국은 WTO 정부조달협정제19조제1항에따라정부조달위원회에통보하며, 그러한개정된수정안은 WTO 정부조달협정제19조의요건을모두충족시킨후에만발효한다(제19조제4항).

수정안은① WTO 정부조달협정제19조제1항에따른수정안통보의회람일로부터 45일이내에해당수정안에대한서면반대를위원회에제출하는당사국이없는경우, ②모든반대하는당사국이수정안에대한반대를철회한다고위원회에통보하는경우, 또는③ WTO 정부조달협정제19조제1항에따른수정안통보의회람일로부터 150일이경과하고, 수정하는당사국이해당수정안을이행할의도를서면으로위원회에통지하는경우중하나의경우에만발효한다(제19조제5항). 위와같은경우에해당하여수정안이발효하는경우, 반대하는당사국은실질적으로동등한협정적용범위를철회할수있다. 이러한경우 WTO 정부조달협정제4조제1항나호에서정한비차별원칙에도불구하고, 이항에따른철회는오로지수정하는당사국과관련하여서만이행될수있다. 반대하는당사국은해당철회가발효하기적어도 30일전에그러한철회를위원회에서면으로통지한다. 이러한철회는정부조달위원회가 WTO 정부조달협정제19조제8항다호에따라채택하는보상적조정의수준과관련되는기준에합치하여야한다(제19조제6항).

정부조달위원회가 WTO 정부조달협정제19조제8항에따라, 수정안에대한반대의해결을촉진하기위한중재절차를채택한경우, 수정하는당사국또는반대하는당사국은일정한경우수정안통보의회람일로부터 120일이내에해당중재절차를발동할수있다. 우선, 해당기한이내에중재절차를발동하는당사국이없는경우에는, ① WTO 정부조달협정제19조제5항다호에도불구하고, 같은조제1항에따른수정안통보의회람일로부터 130일이경과하고, 수정하는당사국이해당수정안을이행할의도를서면으로위원회에통지하는경우, 해당수정안은발효한다. ②반대하는당사국은 WTO 정부조달협정제19조제6항에따라협정적용범위를철회할수없다. 이와반대로 수정하는당사국또는반대하는당사국이중재절차를발동한경우에는, ① WTO 정부조달협정제19조제5항다호에도불구하고, 수정안은중재절차완료전까지는발효하지아니한다. 그리고②반대하는당사국으로서, 보상받을권리를집행하고자하거나, 제6항에따라실질적으로동등한협정적용범위를철회하고자하는자는중재절차에참가한다. ③수정하는당사국은 WTO 정부조달협정제19조제5항다호에따른수정안을발효시킴에있어서중재절차의결과를준수한다. ④수정하는당사국이 WTO 정부조달협정제19조제5항다호에따른수정안을발효시킴에있어서중재절차의결과를준수하지아니하는경우, 반대하는당사국은같은조제6항에따라실질적으로동등한협정적용범위를철회할수있다. 단, 그러한철회가중재절차의결과와합치하는경우에한한다(제19조제7항).

정부조달위원회는① WTO 정부조달협정제19조제2항에따라수정안에대한반대가있는경우그반대의해결을촉진하기위한중재절차, ②기관의협정적용대상조달에대한정부의통제또는영향의효과적인제거를보여주는예시기준, ③ WTO 정부조달협정제19조제1항나호에따른수정안에대하여내놓을보상적조정의수준과같은조제6항에따라실질적으로동등한협정적용범위의수준을결정하기위한기준을채택하여야한다(제19조제8항).

다. 조달의원칙

1) 일반원칙(제4조)

1994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는내국민대우및비차별원칙(제3조), 원산지규정(제4조), 대응구매금지원칙(제16조)과같은일반원칙들을여러조항에나누어규정하고있었으나, 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는위와같은일반원칙들을제4조에서일괄하여규정하고있다. 그리고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는위세가지원칙들외에조달이투명하고공평하게집행되어야하고, 전자적수단을사용하여조달을집행할경우범용성이인정되는시스템과소프트웨어를사용하고입찰참가신청과입찰의완전성을보장하는매커니즘을유지하여야한다는원칙을추가하였다.

WTO 정부조달협정적용대상조달에관한조치와관련하여가장근간이되는원칙은비차별원칙이다. WTO 정부조달협정상비차별원칙은크게세가지로나눌수있다. 먼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의무로서각당사국(조달기관을포함한다)은다른당사국의상품과서비스, 그리고어느당사국의상품또는서비스를제공하는다른당사국의공급자에게, 자신(조달기관을포함한다)이국내상품, 서비스및공급자에게부여하는대우보다불리하지아니한대우를즉시그리고조건없이부여하여야한다(제4조제1항가목). 그리고그각당사국은다른모든당사국의상품, 서비스및공급자에게부여하는대우보다불리하지아니한대우를부여야할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의무도함께부담한다(제4조제1항나목).

내국민대우의원칙에따라각당사국은어느상품과서비스의원산지나그공급자가국내업자인지여부를이유로다른당사국의공급자를불리하게대우할수없고, 따라서소위 Buy American Act 및관련법령에따라미국산상품또는서비스등을우선구매하는조달규제조치등은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내국민대우원칙에대한위반의소지가있다.[41]미국정부기관인국립과학재단이음파탐지시스템조달시 Buy American 조건에따라외국업체를배제하는입찰공고를한사례에서도, 그러한조치는 GATT 정부조달협정위반의소지가있다고본사례가있다

[41]한국무역위원회, 주요교역상대국의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 2011, 5면참조.

[음파탐지시스템(Sonar Mapping System사건][42]

1. 사안

미국정부기관인국립과학재단(NSF)가남극에대한정부프로젝트를지원하기위한광범위한물품및서비스공급계약을하는과정에서, 2990. 5.경미국의회가음파탐지시스템예산을 240만 USD로확정하는긴급정부지출법을통과시키면서미국산제품우선구매조건(Buy American) 조건을부관으로설정하였다.

2. 주요쟁점

위 Buy American 조항에따라실시되는음파탐지시스템구매계약이 GATT 정부조달협정적용대상물품조달에해당하는지등

3. 패널의주요판단내용

위시스템구매계약은 GATT 정부조달협정이적용되는물품조달에해당하는것으로, 미국은정부조달협정에합치되도록조달행위를실시하여야한다.

그리고종래벨기에는가족수당과관련된국내입법을통해, 그러한가족수당부여요건을충족하지못한외국원산지상품이벨기에공공계약에참여시과징금을부과하는조치를하였는데, 이또한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에따르면내국민대우에반하는조치로서 WTO 정부조달협정위반의소지가있다.

[벨기에가족수당사건][43]

1. 사안

[42]United States-Procurement of a Sonar Mapping System, GATT Panel Report, GPR.DS1/R..박노형외 31인,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2018, 516, 517면참조.

[43]BELGIAN-family allowances, GATT Panel Report, G/32-IS/59, 7 Nov. 1952. 한국조달연구원, WTO 정부조달개정협정해설, 2011, 38면~40면.

벨기에는 1930년에가족수당과관련된자국입법을통해, 1951년당시일정한가족수당을부여하는요건을충족하는못하는타국원산지의상품이벨기에공공계약에참여시그 상품공급자에게 7.5%의과징금을부과하는조치를시행하였다.

2. 주요쟁점

벨기에의자국내가족수당법제도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타국가의상품에대해벨기에 공공계약참여시과징금을부과하는행위가내국민대우원칙에합치하는지여부등

3. 패널의주요판단내용

벨기에는프랑스, 영국, 스웨덴등의국가상품에는위와같은과징금을부과하지않으면서, 노르웨이와덴마크상품에는이를부과하는차별을행하였으므로, 이는최혜국대우원칙위반이다.

한편, 최혜국대우의원칙에따라각당사국은 WTO 정부조달협정의적용대상조달에있어서는어느당사국의상품과서비스또는어느당사국의공급자에대하여다른제3의상품또는서비스, 공급자에대한대우보다유리한혜택을부여하여서는아니된다. 「특정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은제4조제1항에서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특정조달계약에있어서계약상대자를공정하게선정하여야하며, 정부조달과관련된정보를차별적으로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고하여내국민대우의원칙및최혜국대우의원칙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나아가 WTO 정부조달협정은또하나의비차별원칙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당사국(당사국의조달기관을포함한다)은①외국인과의계열관계또는외국인소유의정도에근거하여, 국내에설립된공급자를국내에설립된다른공급자보다불리하게대우하지아니하여야하고, ②국내에설립된공급자가특정한조달을위하여제공하는상품또는서비스가다른당사국의상품또는서비스라는점에근거하여그공급자를차별하지아니하여야한다(제4조제2항). 이에따라어느당사국이국내에설립된공급자를통해조달에참여하는경우, 그국내의공급자가외국인과계열사관계에있다거나외국상품또는서비스를공급한다는이유로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전자적수단으로 WTO 정부조달협정의적용대상조달을수행하는경우, 조달기관은해당조달이일반적으로입수될수있는정보기술체계및소프트웨어(정보의인증및암호화에관련된것을포함한다)를사용하거나, 일반적으로입수될수있는다른정보기술체계및소프트웨어와상호운용될수있는정보기술체계및소프트웨어(정보의인증및암호화에관련된것을포함한다)를사용하여수행되도록보장한다. 그리고전자적수단으로조달을수행하는경우접수시각의설정및부적절한접근의방지를포함하여참가신청및입찰에결함이없도록보장하는메커니즘을유지하여야한다(제4조제3항). 전자적수단을통한조달은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따라시간적 · 장소적제한을넘어조달제도에의접근성을높이고자하는것인데, 위와같은보장 · 유지가이루어지지아니한채전자적수단으로조달을수행하는경우에는특정한당사국들에대해불리한대우를하는것과마찬가지의결과를야기하기때문이다.

한편, WTO 정부조달협정제4조제4항은조달의수행에관한투명성의원칙을규정하고있다. 조달기관은협정적용대상조달을투명하고공평한방식으로수행하여야하는데, 여기서투명하고공평한방식이란①이협정에합치하는방식으로서, 공개입찰(open tendering), 지명경쟁입찰(selective tendering) 및제한입찰(limited tendering)과같은방법을사용하는것이어야하고, ②이익상충을회피하는방식이어야하며, 그리고③부패관행을방지할수있는방식을의미한다(제4조제4항). 여기서공개입찰(open tendering)이란관심있는모든공급자가입찰서를제출할수있는조달방법을의미하고, 지명경쟁입찰(selective tendering)이란유자격공급자만이입찰서를제출하도록조달기관으로부터권유를받는조달방법을의미하며, 제한입찰(limited tendering)이란조달기관이, 자신이선택한공급자또는공급자들과접촉하는조달방법을의미한다(제1조). 그리고 WTO 정부조달협정제4조제4항의문언상위와같은공개입찰, 지명경쟁입찰, 제한입찰외에도투명하고공평한방식에따른입찰방식을선택하는것은제한되지않는다.

원산지규정과관련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적용대상조달의목적상, 당사국은다른당사국으로부터수입하거나공급받는상품또는서비스에대하여, 자신이같은시점에통상적인무역과정에서같은당사국으로부터수입하거나공급받는같은상품또는서비스에대하여적용하는원산지규정과다른원산지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제4조

제5항). WTO 협정부속서 1가의원산지규정에관한협정(ARO: 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은일반적으로특정국가가특정제품의원산지로인정받기위해필요한세부적인 요건과통관과정등에서상기요건의충족여부를밝히는원산지확인절차및여타부대조 건등을규정하고있는데, WTO 정부조달협정은별도의통일된원산지규정을마련하고 있지않다. WTO 정부조달협정에따르면각국이다른통상적거래과정에서적용되는것 과별개로정부조달의목적을위한별개의원산지규정을채택하는것은금지된다. 다만, WTO 정부조달협정의개정협상완료시점(2006)에는상품의원산지규정을조화시키 기위한작업계획과서비스무역에관한협상이타결되지않았는데, WTO 정부조달협정 제22조제9항에서는그와같은작업계획과협상이타결된후그결과를고려하여원산지 규정에관한제4조제5항의개정을고려하도록규정하고있다.

WTO 정부조달협정제4조제6항은 WTO 정부조달협정적용대상조달과관련하 여, 당사국(조달기관을포함한다)은대응구매를추구, 고려, 부과하거나집행하지아 니한다고규정하여대응구매(offset)의금지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제4조제6항). 여 기서**대응구매(offset)**란현지개발을장려하거나당사국의국제수지계정을개선하는조 건또는약속으로서, 국산내용물의사용, 기술사용허가, 투자, 대응무역및유사한행 위또는요건과같은것을의미한다(제1조). 이러한대응구매는계약의이행시국내산상 품이나생산시설을이용하는요건과같이계약의이행과직접적관련성을지니는조치들 뿐만아니라, 입찰시행국내에본계약과관련이없이생산시설에금전적투자를하는조 건으로낙찰을받게하는투자요건(investment requirements)과, 입찰시행국가로부터일 정금액의물품을공급자가구매하기로하는연계무역(counter trade) 등계약이외의행 위와관련된조치를포괄한다. WTO 정부조달협정제4조제6항에따라이러한대응구매 는모두금지된다.[44]

한편, 제4조제1항에서규정하는내국민대우의원칙, 최혜국대우의원칙, 제4조 제2항에서규정하는비차별원칙은수입에대하여, 또는수입과관련되어부과되는관세 및모든종류의징수금, 그러한관세및징수금의부과방법, 다른수입규정또는형식상

[44]한국조달연구원, WTO 정부조달개정협정해설, 2011, 38면.

절차및서비스무역에영향을미치는조치(협정적용대상조달을규율하는조치를제외한다)에대해서는적용되지아니한다(제4조제7항). 다만, 그러한수입, 관세등에관하여이루어지는차별적무역조치는 WTO 정부조달협정상조달과관계없는조치로서정부조달협정의적용을받지아니할뿐, GATT 제3조제4항에[45]의해일반적으로금지된다.

라. 조달의절차와방법

1) 조달제도에대한정보(제6조)

WTO 정부조달협정제6조는조달제도에관한정보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우선각당사국은법률, 규정, 사법적결정, 일반적으로적용되는행정적결정, 법률또는규정이요구하고인용을통하여공고또는입찰서류에편입되는표준계약조항및협정적용대상조달에관한절차, 그리고이들에대한수정사항을공식적으로지정된, 널리유포되고공중이쉽게접근할수있는채로있는전자또는종이매체에지체없이공표하여야한다. 그리고요청이있을경우에는위각사항에관하여다른당사국에게설명을하여야한다(제6조제1항).

한편, 각당사국은 WTO 정부조달협정의부록에일정한정보를기재하여야한다. 부록 II에는제1항에설명된정보를당사국이공표하는전자또는종이매체를, 부록 III에는제7조, 제9조제7항및제16조제2항이요구하는공고를당사국이공표하는전자또는종이매체를각각기재하여야한다. 그리고각당사국은①제16조제5항에따른조달통계, ②제16조제6항에따른낙찰된계약에관한공고를공표하는웹사이트의주소또는주소들에관하여부록 IV에기재하여야한다(제6조제2항). 나아가각당사국은부록 II,

---

[45] GATT 제3조(내국과세및규정에관한내국민대우)
다른체약당사국의영토내로수입되는체약당사자영토의상품은그국내판매, 판매를위한제공, 구매, 운송, 유통또는사용에영향을주는모든법률, 규정, 요건에관하여국내원산의동종상품에부여되는대우보다불리하지않은대우를부여받아야한다. 이항의규정은상품의국적에기초하지아니하고전적으로운송수단의경제적운영에기초한차등적국내운임의적용을방해하지아니한다.

III 또는 IV에기재된당사국의정보에대한수정사항을위원회에지체없이통보하여야 한다(제6조제3항).

대한민국의경우부록 II에따라조달관련법률, 규정, 사법적결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행정적결정등조달제도에관한정보에관하여공표하는종이매체로대한민국 관보를, 전자매체로대한민국전자관보웹사이트(http://gwanbo.mois.go.kr), 국가법령 정보세터웹사이트(http://www.law.go.kr), 나라장터웹사이트(http://www.g2b.go.kr)를 기재하고있다.[46]

REPUBLIC OF KOREA

1.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Gazette; or
2.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Electronic Gazette - http://gwanbo.moi.go.kr; or
3.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Website – http://www.law.go.kr; or
4.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 http://www.g2b.go.kr.

그리고부록Ⅲ에따라입찰공고를공표하는전자또는종이매체, 부록Ⅳ에따라낙 찰된계약에관한공고를공표하는웹사이트의주소로서대한민국은나라장터웹사이트 를대한민국의온라인전자조달시스템으로서기재하고있다(http://www.g2b.go.kr.).

2) 공고(제7조)

WTO 정부조달협정제7조는조달예정공고와요약공고, 조달계획공고의세가지 공고에관하여각각규정하고있다.

우선**조달예정공고(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란조달기관이공표하는고시 로서, 관심있는공급자로하여금참가신청서, 입찰서또는양자모두를제출하도록권 유하는것을의미한다(제1조카항). 조달예정공고와관련하여, 조달기관은각협정적

[46]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gproc_e/notnat_e.htm#mediaPublic (WTO 홈페이지) 참조. 이하부록Ⅲ, Ⅳ의경우에도동일하다.

용대상조달에대하여부록 III에기재된적절한종이또는전자매체에조달예정공고를공표하여야한다. 그러한매체는널리유포되어야하고, 그러한공고는적어도해당공고에적시된기간이끝날때까지는공중이쉽게접근할수있어야한다. 조달예정공고가요구되는수준은조달기관에따라달라진다. ①부속서 1에따라적용을받는조달기관, 즉중앙정부기관과관련해서는, 적어도부록 III에명시된최소기간동안단일한접근창구를통하여전자적수단으로무료로접근될수있어야한다. 그러나②부속서 2 또는 3에따라적용을받는조달기관, 즉지방정부기관또는공공기관기타기관과관련해서는, 전자적수단으로접근될수있는경우, 적어도무료로접근할수있는전자적게이트웨이사이트내의링크를통하여제공되어야한다. 이러한경우에는중앙정부기관과같이단일한접근창구를통해전자적수단으로무료로접근가능한공고를할의무는없다. 다만, 당사국(부속서 2 또는 3에따라적용을받는조달기관을포함한다)은자신의공고를하나의접근창구를통하여전자적수단으로무료로공표하도록장려된다. 한편, 그러나제13조에기술된상황, 즉제한입찰에따라조달을진행하는경우는앞서기술한조달예정공고에관한내용이적용되지않는다(제7조제1항).

한편,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 각조달예정공고는①조달기관의이름및주소와해당조달기관을접촉하고조달과관련된모든관련서류를획득하는데필요한다른정보, 그리고해당하는경우, 이들의비용및지불조건, ②조달에대한설명(조달될상품또는서비스의특성및수량을포함하며, 수량을알수없는경우에는추산수량을포함한다), ③반복계약과관련해서는, 가능한경우, 후속조달예정공고의시기에대한예상, ④선택사항에대한설명, ⑤상품또는서비스의인도일정또는계약기간, ⑥사용될조달방법과그방법이협상또는전자경매를수반하는지여부, ⑦적용될수있는경우, 조달참가신청서제출주소및마감일, ⑧입찰서제출주소및마감일, ⑨조달기관이속한당사국의공식언어외의언어로작성된입찰서또는참가신청서를제출하는것이허용되는경우, 해당언어또는언어들, ⑩공급자의참가를위한모든조건의목록및간략한설명(이와관련하여공급자가함께제공해야할특정서류또는증명서의요건을포함한다. 단, 그러한요건이조달예정공고와동시에모든관심있는공급자가입수할수있게된입찰서류에포함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⑪조달기관이제9조에따라, 제한된숫자의유자격공급자를입찰참가권유대상으로선정하고자하

는경우, 선정하는데사용될기준과, 적용될수있는경우, 입찰참가가허용될공급자수에대한제한, 그리고⑫해당조달이이협정의적용을받는다는사실의적시를모두포함하여야한다(제7조제2항).

요약공고(Summary Notice)와관련하여, 조달기관은예정된조달건마다쉽게접근될수있는요약공고를세계무역기구공식언어[47] 중하나로조달예정공고의공표와동시에공표하여야한다. 해당요약공고는적어도①조달의대상, ②입찰서제출마감일 또는, 적용될수있는경우, 조달참가신청서또는유자격자명부포함신청서제출마감일, 그리고③조달과관련되는서류를신청할수있는곳의주소에관한정보를포함하여야한다(제7조제3항). WTO 정부조달협정의개정협상과정에서미국, EU(당시 EC) 등다수의회원국이 WTO 공식언어인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를사용하지않는국가에한하여요약공고를하는것으로규정하자고주장하였으나, 조달시장접근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국가별사용언어와관계없이모든당사국이 WTO 공식언어로요약공고를하도록규정하게되었다.[48]그리고 1994 WTO 정부조달협정과는다르게, 이러한요약공고는쉽게접근할수있는방식으로, 조달예정공고와동시에이루어져야한다.

조달계획공고(notice of planned procurement)의경우,조달기관은부록 III에기재된적절한종이또는전자매체에자신의향후조달계획에관한공고, 즉조달계획공고를각회계연도마다가능한한빨리공표하여야한다. 해당조달계획공고는조달의대상및조달예정공고공표예정일을포함하여야한다(제7조제4항). 이러한조달예정공고가있게되면, 일반적으로 “40일이상”의입찰기간을 “10일이상”으로단축시킬수있다(제11조제4항).

부속서 2 또는 3에따라적용을받는조달기관, 즉지방정부기관, 공공기관기타기관은조달계획공고를조달예정공고로사용할수있다. 단, 해당조달계획공고에제2

---

[47] WTO의공식언어는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3가지이다.

[48]산업통상자원부 2015. 12. 15.자보도자료, 내년부터해외정부조달시장진출확대- 2016년 1월 14일부터개정정부조달협정발효 -, 첨부 WTO 정부조달협정개정협상추진경과 6면.

항에서언급된정보를해당조달기관이입수할수있는만큼포함되어있고, 관심있는공급자는해당조달에관심이있다는것을조달기관에표명하라는내용의성명을포함하는 경우에한한다(제7조제5항). 중앙정부기관의경우에는조달계획공고를조달예정공고로사용할수는없다.

3) 참가조건(제8조)

WTO 정부조달협정제8조는정부조달에대한참가조건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조달기관은공급자가관련조달을맡기위한법적·재정적역량과상업적·기술적능력을 갖는것을보장하는데필수적인것으로한정하여참가조건을설정할수있다(제8조제1 항). 1994 WTO 정부조달협정과는달리, 법적능력(legal capacities)이참가조건으로 설정될수있음을명시하고있는데, 이러한법적능력으로는당사국의국내법령상필요 한인허가등을생각할수있다.

조달기관은위와같은참가조건을설정함에있어서공급자가이전에그어느당사국 의조달기관으로부터한건이상의낙찰을받았을것을해당공급자가조달에참가하기위 한조건으로부과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러나조달요건을충족시키는데필수적인경우 에는, 관련사전경험을요구할수있다(제8조제2항). 어느당사국에서공급자의과거실 적을요구하는경우이것이다른당사국의공급자를차별적으로대우하는결과가야기될 수있으므로, 원칙적으로과거실적을요구하지않도록하고, 조달의성격상실적이필 수적인경우에도관련사전경험을요구할수있도록한것이다.

조달기관은공급자가참가조건을만족시키는지를평가함에있어서, 조달기관이 속한당사국의영역안쪽및바깥쪽모두에서의공급자의사업활동에근거하여해당사업 자의재정역량및상업적·기술적능력을평가하여야하고, 해당조달기관이사전에공고 또는입찰설명서에명시한조건에근거하여평가하여야한다(제8조제3항).

한편, 당사국(조달기관을포함한다)은어느공급자의①파산, ②허위신고, ③선 행계약또는계약들의실질적요건또는의무를이행함에있어서의중대하거나지속적인 결함, ④중대한범죄또는다른중대한위법행위와관련된최종판결, ⑤공급자의상업

적무결성에부정적으로반영되는업무상부정행위나작위또는부작위, 또는⑥세금체납사실을입증하는증거가있는경우에는, 그러한사유를이유로해당공급자를배제할 수있다(제8조제4항). 1994 WTO 정부조달협정과비교하여세금체납사실, 중대한범죄또는중대한위법행위와관련된최종판결, 업무상부정행위나작위또는부작위등을 조달참가배제사유로추가하였다.

4) 공급자자격심사(제9조)

WTO 정부조달협정제9조는 1994 WTO 정부조달협정제8조(자격심사), 제9조(예정된조달에대한참가초청), 제10조(선정절차) 등의일부내용을통합하여, 공급자자격심사라는표제하에공급자등록제도, 지명경쟁입찰, 유자격공급자에관한유자격자명부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우선**공급자등록제도(Registration System)**와관련하여, 당사국(당사국의조달기관을포함한다)은관심있는공급자에게등록하고일정한정보를제공하도록요구하는공급자등록제도를유지할수있다(제9조제1항). 각당사국은①조달기관들의자격심사절차들간차이를최소화하도록노력하고, ②조달기관들이등록제도를유지하는경우, 해당기관이등록제도들간차이를최소화하도록노력할것을보장한다(제9조제2항). 당사국(당사국의조달기관을포함한다)은자신의조달에다른당사국의공급자가참가하는것에대하여불필요한장애를만드는목적또는효과를갖는등록제도또는자격심사절차를채택하거나적용하지아니한다(제9조제3항).[49]

[49]참고로조달청은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MAS), 즉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라정부조달과관련하여각공공기관의다양한수요를충족하기위하여품질, 성능, 효율등에서동등하거나유사한종류의물품을수요기관이선택할수있도록 2인이상을계약상대자로하는계약제도를운영하기위하여, 업체공통의상용규격이있는제품과관련하여수요기관이나라장터종합쇼핑몰란온라인에서등록하여두는다수공급자계약등록제도를운용하고있다.

지명경쟁입찰(selective tendering)과관련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제9조에따르면조달기관이지명경쟁입찰을사용하고자하는경우,해당기관은조달예정공고에적어도 WTO 정부조달협정제7조제2항가호, 나호, 바호, 사호, 차호, 카호및타호에명시된정보, 즉①조달기관의이름및주소와해당조달기관을접촉하고조달과관련된모든관련서류를획득하는데필요한다른정보, 그리고해당하는경우, 이들의비용및지불조건(가호), ②조달에대한설명(나호. 조달될상품또는서비스의특성및수량을포함하며, 수량을알수없는경우에는추산수량을포함한다), ③사용될조달방법과그방법이협상또는전자경매를수반하는지여부(바호), ④적용될수있는경우, 조달참가신청서제출주소및마감일(사호), ⑤공급자의참가를위한모든조건의목록및간략한설명(차호. 이와관련하여공급자가함께제공해야할특정서류또는증명서의요건을포함한다. 단, 그러한요건이조달예정공고와동시에모든관심있는공급자가입수할수있게된입찰서류에포함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⑥조달기관이제9조에따라, 제한된숫자의유자격공급자를입찰참가권유대상으로선정하고자하는경우, 선정하는데사용될기준과, 적용될수있는경우, 입찰참가가허용될공급자수에대한제한(카호), 그리고⑦해당조달이이협정의적용을받는다는사실의적시(타호)를포함시키고, 공급자에게참가신청서를제출하도록권유하여야한다. 그리고해당기관이 WTO 정부조달협정제11조제3항나호에명시된바에따라통보한유자격공급자에게적어도입찰기간이시작될 WTO 정부조달협정제7조제2항다호, 라호, 마호, 아호및자호에서규정하는나머지정보, 즉①반복계약과관련해서는, 가능한경우, 후속조달예정공고의시기에대한예상(다호), ②선택사항에대한설명(라호), ③상품또는서비스의인도일정또는계약기간(마호), ④입찰서제출주소및마감일(아호), ⑤조달기관이속한당사국의공식언어외의언어로작성된입찰서또는참가신청서를제출하는것이허용되는경우, 해당언어또는언어들(자호)을제공하여야한다(제9조제4항). 이때**유자격공급자(qualified supplier)**란조달기관이참가조건을만족시킨다고인정한공급자를의미한다(제1조너항).

지명경쟁입찰에서조달기관은조달예정공고에서입찰참가가허용될공급자수에대한제한과제한된숫자의공급자를선정하는기준을밝히지아니하는한, **모든유자격공급자가특정한조달에참가하는것을허용**한다(제9조제5항). 그리고입찰서류가

WTO 정부조달협정제9조제4항에서언급된공고의공표일부터공개적으로입수될수있게되지아니한경우, 조달기관은같은조제5항에따라선정된모든유자격공급자에게그서류가동시에입수될수있게되도록보장하여야한다(제9조제6항).

유자격자명부(multi-use list)와관련하여, 실무상조달기관이독자적인유자격자명부를두고이들을대상으로하는제한입찰을진행하는경우가많은데, 그런명부의존재를묵시적으로만인정하였던 1994 WTO 정부조달협정과는달리, 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는위와같은유자격자명부의유지권한을명시적으로인정하면서도, 유자격자명부의운영을위한조건을제시하고있다. 즉, WTO 정부조달협정제9조제7항에따르면조달기관은공급자유자격자명부를유지할수있다. 이때**유자격자명부(multi-use list)**란명부에등재되기위한조건을만족시킨다고조달기관이결정한공급자의명부로서, 조달기관이두번이상사용하고자하는것을의미한다(제1조차항). 단, 그러한유자격자명부는관심있는공급자가해당명부에포함될것을신청하도록권유하는공고가부록 III에기재된적절한매체에①매년공표되고, ②전자적수단으로공표되는경우, 계속해서접할수있게되도록하는경우에한한다(제9조제7항).

위와같은유자격자명부의공고는①유자격자명부가사용될수있는상품또는서비스, 또는이들의범주에대한설명, ②유자격자명부에포함되기위하여공급자가만족시켜야하는참여조건과공급자가해당조건을만족시켰음을검증하기위하여조달기관이사용할방법, ③조달기관의이름및주소와해당조달기관을접촉하고유자격자명부와관련된모든관련서류를입수하는데필요한다른정보, ④유자격자명부의유효기간및이를갱신하거나종료시키기위한수단, 또는유효기간이규정되어있지아니한경우, 해당유자격자명부사용의종료를통보할방법의적시, 그리고⑤유자격자명부가이협정의적용을받는조달에사용될수있다는적시를포함하여야한다(제9조제8항). 그럼에도불구하고, 유자격자명부가 3년이하유효한경우, 조달기관은제7항에서언급된공고를해당명부의유효기간이시작될때한번만공표할수있다. 다만, 이러한예외는해당공고가①유효기간을밝히고추가공고는공표되지아니할것이라는점을밝히고, ②전자적수단으로공표되고유효기간동안계속해서접할수있게되는경우에한한다(제9조제9항).

조달기관은공급자가유자격자명부에포함될것을언제든지신청하도록허용하고, 합리적으로짧은시간내에모든유자격공급자를해당명부에포함시킨다(제9조제10항). 유자격자명부에포함되어있지아니한공급자가유자격자명부에근거한조달로의참가신청서및요구되는모든서류를 WTO 정부조달협정제11조제2항에규정된입찰마감기한내에제출하는경우, 조달기관은해당신청을검토하여야만한다. 해당조달기관은조달의복잡함때문에신청에대한검토를입찰서제출이허용되는기간내에마치지못하는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 신청을검토할시간이불충분하다는사유로해당공급자를해당조달과관련하여고려대상에서배제하여서는아니된다(제9조제11항).

부속서 2 또는 3에따라적용을받는조달기관, 즉양허대상지방정부와공공기관은공급자에게 '유자격자명부에포함될것을신청하도록권유하는공고'를조달예정공고로사용할수있다. 단, 이는①해당공고가 WTO 정부조달협정제9조제7항에따라공표되고, 같은조제8항에따라요구되는정보, WTO 정부조달협정제7조제2항에따라요구되는가능한한많은정보, 그리고그공고가조달예정공고를구성하거나, 유자격자명부상의공급자만이해당명부의적용을받는추가조달공고를받게된다는내용의성명을포함하는경우, 그리고②해당기관이그어느조달에대한관심을해당기관에표명한공급자에게, 해당공급자가해당조달에대한자신의이익을가늠할수있도록하는충분한정보(WTO 정부조달협정제7조제2항에따라요구되는정보중남은것을포함한다)를그러한정보가입수될수있는만큼까지지체없이제공하는경우에한하여허용된다(제9조제12항). 그리고부속서 2 또는 3에따라적용을받는조달기관, 즉양허대상지방정부와공공기관은유자격자명부에포함될것을 WTO 정부조달협정제9조제10항에따라신청한공급자가그어느조달에참가하는것을, 해당공급자가참가조건을만족시키는지를해당조달기관이검토하는데충분한시간이있는경우에는, 허용할수있다(제9조제13항). 위와같은규정들은양허대상중앙정부기관에대하여는인정되지아니한다.

조달기관은조달참가신청서또는유자격자명부에포함되기위한신청서를제출한공급자에게해당조달기관의해당신청또는지원과관련된결정을지체없이통지한다(제9조제14항). 조달기관이공급자의조달참가신청또는유자격자명부포함신청을거부

하거나, 공급자가적격하다고인정하는것을중지하거나, 또는공급자를유자격자명부로부터삭제하는경우, 해당기관은해당공급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해당공급자가요청하면자신의결정이유에대한서면설명을해당공급자에게지체없이제공한다(제9조제15항).

5) 기술규격및입찰설명서(제10조)

공공조달의입찰및계약의과정에서기술규격은상당한중요성을지닌다. 발주기관에서제시하는상품과서비스계약건에적합한기술규격은기본적이면서도형식적인전제에해당하여, 동규격에적합하지않은상품및서비스, 그리고그것의공급자는입찰을통한본격적경쟁이이루어지기전에시장진입의기회를상실하게되는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기술규격이사실상자국내특정공급자만이충족할수있는내용으로구성되면, 정부조달관련교역은상당히제약받게된다.[50]이에 WTO 정부조달협정제10조는 1994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두고있지아니하던여러조항들을신설하여기술규격과조달실무상그러한기술규격이포함되어이루어지는입찰설명서및그수정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우선기술규격과관련하여, 조달기관은국제무역에대한불필요한장애를만드는것을목적으로또는그러한효과를갖도록기술규격을준비, 채택, 적용하거나, 적합성심사절차를규정하여서는아니된다(제10조제1항). 이때**기술규격(technical specification)**이란입찰요건으로서 (1) 조달될상품또는서비스의특징(품질, 성능, 안전및치수를포함한다) 또는이를생산하거나제공하기위한공정및방법을정하는것, 또는 (2) 상품또는서비스에적용되는용어, 기호, 포장, 표시또는부표(附票)의요건을다루는것을의미한다(제1항서항).

그러나조달기관은조달될상품또는서비스에대한기술규격을규정함에있어, 적절한경우①디자인또는묘사적특징보다는성능및기능요건으로기술규격을제시할후

[50]한국조달연구원, WTO 정부조달개정협정해설, 2011, 75면.

있다. 그리고②국제표준이존재하는경우, 이를기술규격의기초로삼고, 그렇지아니한경우, 국가의기술규정, 인정된국가표준또는건축법규를기초로삼는다(제10조제2항). 이때**표준(standard)**이란인정된기관이승인한문서로서, 상품또는서비스의공통적이고반복적인용도, 규칙, 지침또는특징, 또는관련된공정및생산방법을규정하며, 그준수가강제적이지아니한것을의미한다. 표준은상품, 서비스, 공정또는생산방법에적용되는용어, 기호, 포장, 표시또는부표(附票)의요건을포함하거나전적으로다룰수도있다(제1조머항). 기술규격에디자인또는묘사적특징이사용되는경우, 조달기관은적절한경우, 입찰서류에 "**또는동등한것(or equivalent)**"과같은문구를포함시켜, 조달요건을명백하게충족시키는동등한상품또는서비스의입찰서를고려할것이라고적시하여야한다(제10조제3항).

조달기관은조달요건을충분히정확하게또는명료하게설명할방법이달리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 특정상표또는상호, 특허, 저작권, 디자인, 형식, 특정원산지, 생산자또는공급자를요구하거나인용하는기술규격을규정하지아니한다. 단, 그렇게규정하는경우에는입찰서류에 "**또는동등한것(or equivalent)**"과같은문구를포함시키는경우에한한다(제10조제4항).

조달기관은특정조달을위한기술규격의준비또는채택에사용될수있는조언을해당조달에상업적이익을가질수있는사람으로부터, 경쟁을미리배제하는효과를갖게될방식으로추구하거나받아서는아니된다(제10조제5항). 이는잠재적입찰참가자에게기술규격의준비또는채택에사용될수있는조언을받음으로인해경쟁을미리배제하는효과가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규정이다.

한편, 당사국(당사국의조달기관을포함한다)은천연자원의보존을증진시키거나, 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이조에따라기술규격을준비, 채택또는적용할수있다(제10조제6항). 이는공공조달을통한친환경정책의활성화를꾀하는경향이늘어나면서, 천연자원의보전과환경보호와관련한기술규격의적용을인정하는내용으로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에서새로도입된내용이다.

입찰설명서(Tender Documentation)와관련하여, 기술규격은대부분입찰설명서에기재되어입찰참가자들에게안내가되는점을고려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은제10조에서기술규격과함께입찰설명서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조달기관은공급자가대응입찰서를준비하고제출할수있도록하는데필요한모든정보를포함하는입찰서류를공급자가접할수있게되도록한다. 조달예정공고에서이미제공되지아니하는한, 입찰설명서에는①조달(조달될상품또는서비스의특성및수량을포함하며, 수량을알수없는경우에는추산수량을포함한다) 및충족되어야할요건(기술규격, 적합성심사인증, 계획, 도면, 지침자료를포함한다), ②공급자참가조건(참가조건과관련하여공급자가제출하도록요구되는정보및서류의목록을포함한다), ③해당기관이계약을낙찰시키면서적용할모든평가기준과그러한기준의상대적중요도(가격이유일한기준인경우에는제외한다), ④조달기관이전자적수단으로조달을수행할경우, 인증및암호화요건또는전자적수단에의한정보의제출과관련되는다른요건, ⑤조달기관이전자경매를주최할경우, 해당경매의수행규칙(평가기준과관련된입찰요소의확인을포함한다), ⑥공개적으로개찰할경우, 개찰의일시및장소, 그리고적절한경우, 입회가허가되는사람, ⑦기타조건(지급조건, 그리고서면또는전자적수단에의할것인지와같은, 입찰서제출수단에대한제한을포함한다), ⑧상품인도또는서비스공급일자에대한완전한설명을포함하여야한다(제10조제7항). 1994 WTO 정부조달협정과비교하여조달예정공고에포함되는정보(제7조제2항)는입찰설명서에포함되어야할정보에서제외되었고, 반면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에서전자적수단에의한조달, 전자경매등에관한규정이새로도입된점을고려하여, 그와관련된정보를추가하도록개정되었다.

조달기관은조달될상품의인도일자또는서비스의공급일자를정함에있어, 해당조달의복잡함, 예상되는하도급의정도, 공급지점으로부터상품을생산하고실어내고운송하거나서비스를공급하는데필요한현실적인시간과같은요인을고려한다(제10조제8항). 조달예정공고또는입찰서류에제시된평가기준은가격및다른비용요인, 품질, 기술적장점, 환경적특징및인도조건등을포함할수있다(제10조제9항).

조달기관은관심있는공급자가대응입찰서를제출하는데충분한시간을갖도록보장하기위하여입찰서류가지체없이구해질수있도록해야한다. 조달기관이그러한요청을받으면, 관심있는공급자에게입찰서류를지체없이제공하여야하고, 관심있는공급자또는참가한공급자의관련정보에대한합리적요청에지체없이답변하여야한다. 다만, 그러한정보가이를요청한공급자를다른공급자보다우위에두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제10조제10항).

조달기관이조달예정공고또는참가한공급자에게제공한입찰설명서에제시한기준또는요건을낙찰전에수정하거나, 공고또는입찰설명서를개정하거나재발간하는경우, 해당조달기관은모든수정사항또는개정되거나재발간된공고또는입찰설명서를서면으로전달하여야한다. 그러한수정공고등은①수정, 개정또는재발간당시참가한공급자를조달기관이알고있는경우, 그러한모든공급자에게전달하고, 다른모든경우에는원래정보를입수될수있게한것과동일한방식으로전달하여야한다. 그리고②공급자가적절하게개정입찰서를수정하여다시제출할수있도록할만한충분한시간내에전달하여야한다(제10조제11항).

6) 제11조(기간)

일정한국가의공공조달입찰에참여하는타당사국의공급자는조달시행국의조달절차및제도, 기술규격등에생소할수밖에없다. 이러한공급자들에게입찰서제출기간을매우단기간부여하게되면, 그와관련된준비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타당사국의공급자의동입찰참여는거의불가능에가깝다고할수있다. 이에 WTO 정부조달협정은일반적으로 40일정도의입찰서제출기간을허여하는등의입찰서준비및제출의충분한시간을제공하도록규정한다. 다만, 이러한기간은일정한요건하에단축이허용된다. 1994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도입찰서제출기간을규정하면서일정한경우에는입찰기간이단축될수있음을규정하고있었으나, 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은좀더많은융통성을인정하여입찰기간의단축이허용되는사유를확대하였다.

이는전자입찰제도도입이확대됨에따라그러한전자적수단의사용시단기간의기간을허용하는것이주된이유이다.[51]

기간과관련된일반적인원칙으로, 조달기관은공급자가참가신청서및대응입찰서를준비하고제출하는데충분한시간을, 자신의합리적인소요에맞춰제공하여야한다. 그리고그러한기간은①조달의특성과복잡함, ②예상되는하도급의정도, ③전자적수단이사용되지아니하는경우, 국내는물론국외의지점에서비전자적수단으로입찰서를전달하는데필요한시간을고려하여정하여야한다. 그리고그러한기간(해당기간의연장을포함한다)은관심이있거나참가하고있는모든공급자에게같아야한다(제11조제1항).

지명경쟁입찰을사용하는조달기관은참가신청서제출마감일이조달예정공고공표일로부터원칙적으로 25일미만이되지아니하도록설정한다. 조달기관에의하여적절하게입증된긴급상황이이러한기간을비현실적으로만드는경우, 해당기간은 10일이상인기간으로줄여질수있다(제11조제2항).

원칙적으로 WTO 정부조달협정제11조제4항, 제5항, 제7항및제8항에서규정된바에따라기간을단축할수있는사유가존재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조달기관은입찰서제출마감일이다음일자로부터 "**40일이상(at least 40 days)**"이되도록정한다. 이때입찰기간의기산점은입찰의종류에따라달라지는데, ①공개입찰과관련해서는, 조달예정공고공표일이그기산점이되고, ②지명경쟁입찰과관련해서는, 조달기관이유자격자명부를사용하는지여부와무관하게, 입찰서를제출하도록권유를받게될것이라고조달기관이공급자에게통보하는날이그기산점이된다(제11조제3항).

WTO 정부조달협정제11조제4항, 제5항, 제7항및제8항에서는위와같은입찰기간최소 40일을단축할수있는경우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우선조달기관은일정한경우, WTO 정부조달협정제11조제3항에따라설정된입찰관련기간을 "**10일이상인기**

[51]한국조달연구원, WTO 정부조달개정협정해설, 2011, 82면.

간(not less than 10 days)”으로줄일수있다. 조달기관이 WTO 정부조달협정제7조제4항에설명된조달계획공고를, 조달예정공고공표전에적어도 40일이상그리고 12개월이하공표하였고, 해당조달계획공고가①조달에대한설명, ②입찰서또는참가신청서의대략적인제출마감일, ③관심있는공급자는자신의조달에대한관심을조달기관에표명해야한다는성명, ④조달과관련된서류를취득할수있는주소, 그리고⑤ WTO 정부조달협정제7조제2항에따른조달예정공고에서요구하는, 구할수있을만큼의정보를포함하는경우, 그러한기간의단축이가능하다. 그리고반복계약과관련해서는, 조달기관이이항에근거한입찰관련기간을후속공고에서제공할것이라고최초의조달예정공고에서적시하는경우에기간의단축이가능하고, 조달기관이적절하게입증한긴급상황이 WTO 정부조달협정제11조제3항에따라설정된입찰관련기간을비현실적으로만드는경우에도그러한기간의단축이가능하다(제11조제4항).

한편, 조달기관은 WTO 정부조달협정제11조제3항에따라정한입찰관련기간을다음의상황 “**한건마다 5일씩(five days for each one)**” 줄일수있다(제11조제5항).

① 조달예정공고가전자적수단으로공표되는경우 ②모든입찰서류가조달예정공고공표일로부터전자적수단으로구할수있게되는경우 ③해당조달기관이전자적수단으로입찰서를접수하는경우

따라서위각상황을모두충족하는경우, 즉조달예정공고를전자적수단으로공표하고, 모든입찰서류를조달예정공고공표일로부터전자적수단으로구할수있으며, 해당조달기관이전자적수단으로입찰서를접수하는경우에는입찰관련기간을 15일줄일수있다. 다만, WTO 정부조달협정제11조제4항과함께제5항의적용을받아입찰관련기간이중첩적으로단축된다고하더라도, 어떠한경우에도 WTO 정부조달협정제11조제3항에따라정한입찰관련기간이조달예정공고가공표된날로부터 “**10일미만(less than 10 days)**”으로줄어드는결과로귀결되어서는아니된다(제11조제6항).

WTO 정부조달협정제11조의다른규정에도불구하고, 조달기관이상업적상품또는서비스, 또는이들의조합을구매하는경우, 같은조제3항에따라설정된입찰관련기간을 “13일이상의기간(**not less than 13 days**)”으로줄일수있다. 단, 조달예정공

고및입찰서류모두를동시에전자적수단으로공표하는경우에한한다. 아울러, 해당 조달기관이상업적상품또는서비스의입찰서를전자적수단으로접수하는경우, 같은 조제3항에따라설정된기간을 10일이상의기간으로줄일수있다(제11조제7항).

부속서 2 또는 3에따라협정의적용을받는조달기관이모든, 또는제한된숫자의 유자격공급자를선정한경우, 입찰관련기간은조달기관과선정된공급자사이의상호 합의로정해질수있다. 합의가없으면해당기간은 10일이상의기간으로한다(제11조 제8항).

7) 협상(제12조)

조달기관이조달공고에서협상을실시하겠다는의사를밝혔을경우또는조달공고 나입찰명세서에있는구체적인평가기준에따라평가를한결과명백하게가장유리한입 찰서가없는것으로보이는경우에는조달기관이협상을실시하도록할수있다(제12조제 1항).

그리고협상을실시하는경우, 계약협상에참가하는공급자의배제는조달공고나 입찰명세서에규정된평가기준에따라서이루어져야하고, 계약협상이완료될경우에 는나머지협상참가자들이신규또는수정된입찰서를제출할수있도록공통의마감시한 을제공되어야한다(제12조제2항).

다만 1994 WTO 정부조달협정제14조제2항에서는협상이주로입찰서의장단점 을확인하는데사용된다고규정하고있었는데, WTO 정부조달협정이개정되면서위와 같은내용의규정은삭제되었다.

8) 제한입찰(제13조)[52]

각당사국이조달을시행함에있어서제한입찰을실시하는경우국내외적인조달투명성및공정성논란에취약할수밖에없다. 따라서정부조달관련무역규범에서대부분 자국내특정공급자와계약을체결하게되는결과로귀결되는제한입찰방식은일정한상황에서제한적으로실시되도록규율할필요성이있다. 이에따라 1994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도제한입찰이허용되는상황을제한적으로열거하고있었고, 이는개정된협정에서도마찬가지이나, 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는제한입찰이허용되는예외적인상황에대해보다구체적이고상세하게규정하고있다

한편, 노르웨이도로청이트론헤임시의도로통행료징수시스템을제한입찰방식으로조달한데대하여 GATT 정부조달협정위반이라고판단한사례가있는바그대강의내용은아래와같다.

[트론헤임도로통행료징수기조달사건][53]

1. 사안

1991년경노르웨이도로청이트론헤임이라는도시의도로통행료징수시스템(Toll System)구매계약과관련하여, 단독입찰(수의계약)을통해노르웨이회사와계약

2. 주요쟁점

노르웨이가외국기업은물론다른국내기업에게조차입찰기회를주지않고특정기업에게단독입찰을허용한것이 GATT 정부조달협정위반인지여부등

---

[52]문헌에따라**제한입찰(limited tendering)**을수의계약으로번역하기도하나, 본용역에서는공개입찰(open tendering), 지명경쟁입찰(selective tendering)의용례를고려하여제한입찰(limited tendering)이라고한다.

[53]EEC-value added Tax and Threshold, GATT Panel Report, GPR/21-33S/247. 박노형외 31인,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2018, 515면참조.

3. 패널의주요판단내용

위와같은단독입찰은 GATT 정부조달협정상내국민대우원칙을위반한것이다.

제한입찰(**limited tendering**)은조달기관이공급자사이에서의경쟁을회피하는목적으로, 또는다른당사국의공급자를차별하거나국내공급자를보호하는방식으로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사용할수있다. 이때①유효한경쟁이없는일정한경우, ②특정상품또는서비스가대체불가능한경우, ③원공급자에의한상품또는서비스의추가적인인도, ④극도로긴박한경우, ⑤원자재시장에서구매되는상품, ⑥원형(原型)이나최초의제품이나용역등의경우, ⑦이례적으로유리한조건에따른구매, ⑧디자인경연의우승자에게낙찰되는경우에는공고, 참가조건, 공급자자격심사에관한제7조에서제9조까지, 기술규격및입찰설명서에관한제10조중제7항에서제11항까지, 기간에관한제11조, 협상에관한제12조, 전자경매에관한제14조및입찰서처리및계약의낙찰에관한제15조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제13조제1항).

구체적으로유효한경쟁이없는일정한경우로는①입찰서가전혀제출되지아니하거나참가를신청한공급자가전혀없는경우, ②입찰서류의필수적인요건에부합하는입찰서가전혀제출되지아니한경우, ③참가조건을만족시키는공급자가전혀없는경우, 또는④제출된입찰서가담합에의한것인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있다. 단, 위와같은경우에는입찰설명서의요건이실질적으로수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제한입찰을할수있다(제13조제1항가호). 왜냐하면, 제한입찰을실시할목적으로당초입찰설명서에서는엄격한기술규격등을제시하여제한입찰이허용되는위와같은상황을고의로유도하는경우등을방지하기위함이다.

특정상품또는서비스가대체불가능한경우에도일정한경우에한하여제한입찰을할수있다. 즉, 특정공급자만이상품또는서비스를공급할수있고, ①요건이예술작품에대한것인경우, ②특허, 저작권또는다른배타적권리의보호, 또는③기술적인이유로경쟁이없는경우에해당함으로써합리적인대안이나대체상품또는서비스가존재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제한입찰을할수있다(제13조제1항나호).

그리고원공급자에의한상품또는서비스의추가적인인도의경우에도, 최초조달에포함되지아니하고, 그러한추가적인상품또는서비스의공급자의변경이①최초조달에따라조달된기존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또는설비와의호환성또는상호운용성요건과같은경제적또는기술적이유로이루어질수없는경우, 그리고②조달기관에게중대한불편또는상당한비용의중복을야기하는경우에한하여제한입찰을할수있다(제13조제1항다호).

극도로긴박한경우에는극히예외적인경우에한하여제한입찰의예외가허용된다. 즉, 반드시필요한한경우에한하여, 조달기관이예견할수없는사건이일으킨극도의긴박한이유로공개입찰또는지명경쟁입찰을사용해서는상품또는서비스를때에맞춰취득할수없는경우에한하여그러한사유를이유로한제한입찰이허용된다(제13조제1항라호). 그리고원자재시장에서구매되는상품인경우에는별다른제한없이제한입찰이허용된다(제13조제1항마호).

원형(原型)이나최초의제품이나용역등의경우에는아래와같은조건아래에서제한입찰이허용된다. 연구, 실험, 조사또는주문자개발을위한특정한계약의진행과정에서조달기관이요청함에따라, 또는조달기관이그러한계약을요청함에따라개발된원형이나첫상품또는서비스를해당조달기관이조달하는경우. 첫상품또는서비스의주문자개발은현장시험의결과를반영하고, 해당상품또는서비스가, 수용할수있는품질기준에맞춰다량으로생산또는공급되기에적합하다는것을보여주기위한, 한정된생산또는공급을포함할수있으나, 상업성을확립하거나연구·개발비용을회수하기위한다량생산또는공급은포함하지아니한다(제13조제1항바호).

청산, 법정관리또는파산을원인으로하여발생하는것과같이, 매우짧은기간동안에만발생하는통상적이지아니한처분으로인하여이례적으로유리한조건에따른구매에해당할때제한입찰이허용될뿐이며, 일반적인공급자로부터의일상적인구매에는제한입찰이허용되지않는다(제13조제1항사호).

디자인경연의우승자에게낙찰되는경우는①해당경연이이협정의원칙, 특히조달예정공고의공표와관련되는원칙과합치하는방식으로준비되고, ②우승자에게설

계계약을낙찰시키는것을목적으로, 독립적인심사원이경연참가자를평가하는경우에한하여제한입찰로할수있다(제13조제1항아호).

조달기관은위각경우에따른낙찰건수마다에대하여보고서를준비하여야한다. 해당보고서는조달기관의이름, 조달된상품또는서비스의가액및종류, 그리고제한입찰의사용을정당화하는, 위각각의상황및조건을적시하는내용의성명을포함하여야한다(제13조제2항). 이는제한입찰방식의남용을방지하기위한것인데조달기관으로서는그에따른업무부담이증가할것으로생각된다.

9) 전자경매(제14조)

1994 WTO 정부조달협정는당시정부조달이전통적인방식에따라서면에의하여이루어졌던데따라전자조달에관한규정을일체두고있지않았다. 그러나그후전자적방법에의한조달이늘어나게됨에따라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는전자조달에관한규정(제14조)을신설하였다.

조달기관은전자경매를사용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적용대상조달을수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전자경매를개시하기전에각참가자에게①자동평가방법(입찰서류에제시된평가기준에근거하여, 해당경매중순위를자동적으로매기거나다시매길때사용될수리공식을포함한다), ②가장유리한입찰서에근거하여계약이낙찰될경우, 그입찰서의요소들에대한최초평가결과, 그리고③해당경매의수행과관련되는다른정보를각각제공하여야한다(제14조).

10) 입찰서처리및계약의낙찰(제15조)

WTO 정부조달협정제15조는입찰서의처리와계약의낙찰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입찰서의처리와관련하여, 조달기관은모든입찰서를조달과정의공정성및공평성과입찰서의기밀성을보장하는절차에따라접수하고개봉하며취급하여야한다(제15

조제1항). 그리고조달기관은오로지해당조달기관측의잘못된취급때문에늦어진경우, 명시된시각후에입찰서가접수된공급자를불리하게하여서는안된다(제15조제2항). 조달기관이공급자에게의도하지아니한형식상오류를정정할기회를개찰과낙찰사이에제공하는경우, 해당조달기관은참가한모든공급자에게같은기회를제공하여야만한다(제15조제3항).

낙찰과관련하여, 입찰서가낙찰대상으로고려되기위해서는서면으로제출되고, 공고및입찰서류에제시된필수적요건을개찰할때준수해야하며, 참가조건을만족시키는공급자가제출한것이어야한다(제15조제4항). 낙찰이공익에부합하지아니하다고조달기관이결정하지아니하는한, 해당기관은공급자중계약조건을충족시킬수있을것이라고해당기관이결정한공급자로서, 오로지공고및입찰서류에명시된평가기준에만근거하여, ①가장유리한입찰서, 또는②가격이유일한기준인경우, 가장낮은가격을제출한자에게낙찰한다(제15조제5항). 이는 1994 WTO 정부조달협정제13조제4항낙찰에관한규정에서최저가격의입찰서를제시하거나, 또는공고또는입찰설명서에명시된구체적평가기준에따라가장유리하다고판정된입찰서를제출한입찰자를낙찰자로하도록규정한것과대비된다.

다만, 조달기관은제출된다른입찰서의가격보다비정상적으로낮은가격의입찰서를접수한경우, 공급자가참가조건을만족시키고계약조건을충족시킬수있는지해당공급자에게확인할수있다(제15조제6항). 조달기관은WTO 정부조달협정에따른의무를우회하는방식으로선택권을사용하거나, 조달을취소하거나, 낙찰된계약을수정하여서는아니된다(제15조제7항).

11) 조달정보의투명성(제16조)

WTO 정부조달협정은전문과제4조에서투명성의원칙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데, 협정제16조는조달정보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공급자에게제공되는정보, 낙찰정보의공표, 서류, 보고서및전자적추적가능성의보존및통계의수집및보고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공급자에게제공되는정보와관련하여, 조달기관은입찰에참가한공급자들에게낙찰결과를즉시통지하여야하며, 공급자의요청이있을경우에는서면으로통지해주어야한다. 조달기관은요청을받은경우낙찰되지아니한자에게입찰서가선정되지않은이유와낙찰자의입찰서가제시한상대적이점에대해설명해주어야한다(제16조제1항).

낙찰정보의공표와관련하여, 조달기관은이협정의적용을받는각계약의낙찰후72일이내에, 부록 III에기재된적절한종이또는전자매체에낙찰에관한공고를공표하여야한다. 이때해당공고는적어도①조달된상품또는서비스에대한설명, ②조달기관의이름및주소, ③낙찰에성공한공급자의이름및주소, ④낙찰에성공한입찰서의가액또는낙찰에있어서고려된최고및최저청약, ⑤낙찰일자, 그리고⑥사용된조달방법의종류, 그리고제13조에따라제한입찰이사용된경우, 제한입찰의사용을정당화하는상황에대한설명을포함하여야한다(제16조제2항).

서류, 보고서및전자적추적가능성의보존을위하여일정한서류등에대한보존의무가인정된다. 즉, 각조달기관은계약을낙찰시킨날로부터적어도 3년동안①협정적용대상조달과관련된입찰절차및낙찰의서류및보고서(제13조에따라요구되는보고서를포함한다), 그리고②전자적수단에의한협정적용대상조달의수행의적절한추적가능성을보장하는데이터를보존하여야한다(제16조제3항).

마지막으로조달정보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은조달관련통계의수집및보고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각당사국은 WTO 정부조달협정의적용을받는계약에관한통계를수집하여정부조달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각보고서는 1년을대상으로하고, 보고기간종료시점으로부터 2년내에제출되며, 일정한사항을반드시포함하여야한다.

이때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통계정보의범위는조달기관의종류에따라달라지는데, 부속서 1의조달기관, 즉중앙정부기관은①모든해당기관의, 이협정의적용을받는모든계약의건수및총액, ②각해당기관이낙찰시킨, 이협정의적용을받는모든계약의건수및총액을국제적으로인정된통일적인분류체계에따른상품및서비스의범주

로세분화한것, 그리고③각해당기관이제한입찰에따라낙찰시킨, 이협정의적용을받는모든계약의건수및총액에관한정보를포함하여보고하여야한다. 반면, 부속서 2 및 3의조달기관, 즉지방정부기관및공공기관은모든해당기관이낙찰시킨, 이협정의적용을받는계약의건수및총액을부속서별로세분화한것에관한정보를포함하여야한다. 그리고위각데이터를제공하는것이어려운경우, 해당데이터추정치와해당추정치를이끌어내는데사용된방법론을제공하여야한다(제16조제4항). 당사국이자신의통계를공식웹사이트에앞서와같은방식으로공표하는경우, 해당당사국은해당웹사이트주소를그러한통계에접근하고이를사용하기위하여필요한지침과함께위원회에통보함으로써그데이터의제출을대신할수있다(제16조제5항).

한편, 낙찰정보의공표와관련하여당사국이낙찰된계약에관한공고를전자적으로공표할것을요구하고, 그러한공고가협정적용대상계약에대한분석을허용하는형식의단일데이터베이스를통해공중에게쉽게접근될수있는경우, 해당당사국은해당웹사이트주소를그러한데이터에접근하고사용하기위하여필요한지침과함께위원회에통보함으로써정부조달위원회에대한데이터의제출을대신할수있다(제16조제6항).

12) 정보공개(제17조)

WTO 정부조달협정제17조는제16조에서규정한공공조달입찰결과정보공표의무와는별개로, 당사국에대한정보의공개에관하여규정하는한편, 정보의공개가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등정보를공개하지아니할경우에관하여함께규정하고있다.

정보의공개와관련하여, 다른당사국의요청이있으면, 당사국은조달이공정·공평하고, 이협정에따라수행되었는지를판단하는데필요한정보(낙찰에성공한입찰서의특징과상대적이점을포함한다)를지체없이공개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정보의공개가향후의입찰에서경쟁을저해하게될경우와관련해서는, 해당정보를접수하는당사국은해당정보를제공한당사국과협의하여동의를얻은후를제외하고는, 이를그어떠한공급자에게도공개하지아니한다(제17조제1항).

한편, 정보의비공개와관련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의다른규정들에도불구하고, 당사국(조달기관을포함한다)은공급자사이에서의공정한경쟁을저해할수도있는정보를어떠한공급자에게도제공하지아니하여야한다(제17조제2항). 그리고 WTO 정부조달협정의어떠한규정도그공개가①법집행을방해하게될경우, ②공급자사이에서의공정한경쟁을저해할수도있는경우, ③특정한사람의합법적인상업적 이익(지식재산의보호를포함한다)을저해하게될경우, 또는④기타공공의이익에반하게될경우중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사국(조달기관, 당국및심사기구를포함한다)에게비밀정보를공개하도록요구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제17조제3항).

마. 이의제기및분쟁해결

1) 국내심의절차(제18조)

1994 WTO 정부조달협정제20조는그협정위반사례가있는경우, 물품이나서비스공급자가당사국의구매기관과의협의(consultation)를통하거나법원내지독립적심사기구에이의(challenge)를제기함으로써이를해결하거나다투는것이가능하도록하는이의제기제도를설치할당사국의의무와함께동이의신청절차가포함하여야할사항에대해서도규정하고있었다. 다만, 이러한기존의이의신청절차는실제많은당사국이자신들의국내법이나심의절차에협정위반에대한이의신청을규정하고있지않음으로인해그실효성이의문시되었다(한편, 일본철도의자동승차권기표시스템조달과관련하여미국모토롤라사가일본의정부조달이의신청기구에이의를제기한사례가있다. 그에관한구체적인내용은제4편참조). 즉, 문제된당사국내에이의제기관련국내입법이마련되어야한다는문제가해결되어야했다.

이에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제18조에서는국내법미비등으로공급자가당사국의국내법하에서는협정의위반에대해직접적으로이의신청을할수있는권리가없는경우에도, 조달기관이협정이행조치를준수하지않은것에대해문제를제기하기위해, 국내심의절차를이용할수있음을분명히하였다. 결국이의제기관련국내입법이미비

된당사국도, 이의제기사항의처리를위하여일정한기구를구성해이의를처리해야할 부담을지게되었다.[54]

WTO 정부조달협정제18조는국내심의절차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각당사국은공급자가관심이있거나있었던협정적용대상조달과관련하여발생하는①협정의위반, 또는②공급자가당사국의국내법에따라협정의위반에대하여직접적으로이의를제기할권리를갖지아니하는경우, 이협정을이행하는당사국조치의준수실패에대하여, 해당공급자가이의를제기할수있고, 적시성이있으며, 효과적이고투명하고, 비차별적인행정적또는사법적심사절차를제공하여야한다. 그리고모든이의제기에관한절차적규칙은서면으로작성되고, 일반적으로구할수있어야한다(제18조제1항). 따라서 WTO 정부조달협정제18조에따른이의제기절차는협정의위반뿐만아니라그 위반이없다고하더라도협정을이행하는당사국조치의준수실패등비위반사유를원인으로하여서도사용될수있다.

공급자가관심이있거나있었던협정적용대상조달과관련하여제1항에서언급된 위반또는실패가있다는공급자의문제제기가있을경우, 해당조달을수행하는조달기관의당사국은해당기관과해당공급자가협의를통한문제의해결을추구하도록장려한다. 해당기관은해당공급자의현행또는향후의조달에의참가, 또는행정적또는사법적심사절차에따른시정조치를추구할권리를저해하지아니하는방식으로그러한문제제기를공평하고때맞춰고려한다(제18조제2항).

각공급자에게는이의를준비하고제기할충분한시간이주어지며, 이는이의제기의근거가해당공급자에게알려지거나, 합리적으로알려지게되었어야할때로부터 10일미만이되지아니한다(제18조제3항). 각당사국은협정적용대상조달과관련하여제기되는공급자의이의를접수하여심사할, 조달기관으로부터독립적인공평한행정또는사법당국을적어도한개설립하거나지정한다(제18조제4항). 그러나그와같은행정또는사법당국외의기구가최초로이의를심사하는경우, 당사국은공급자가이의제기

[54]한국조달연구원, WTO 정부조달개정협정해설, 2011, 109면.

의대상이되는조달을한조달기관으로부터독립적인공평한행정또는사법당국에게최초결정을상소할수있도록보장하여야한다(제18조제5항).

각당사국은법원이아닌심사기구의결정이사법심사의대상이되도록하거나, 아래와같은절차및요건을충족하도록하여야한다. 즉, ①조달기관은이의제기에문서로대응하고, 모든관련서류를심사기구에공개한다. ②심사절차참가자(이하이장에서**"참가자"**라한다)는심사기구가제기된이의에대하여결정하기에앞서진술할권리를갖는다. ③참가자는다른사람에의하여대리되고동반될권리를갖는다. ④참가자는모든심사절차에대한접근권을갖는다. ⑤참가자는심사절차가공개적으로진행될것과증인이출석할수있도록요구할권리를갖는다. 그리고⑥심사기구는때에맞춰서면으로결정하거나권고하고, 각결정또는권고의근거에대한설명을포함시킨다(제18조제6항).

각당사국은공급자가조달에참가할기회를보존하기위한신속한잠정조치를규정하는절차를채택하거나유지하여야한다. 그러한잠정조치는조달과정의중지로귀결될수있다. 그러한조치가적용되어야하는지를결정함에있어서해당절차는관련이익(공공의이익을포함한다)에대한중대한부정적결과를고려할수있다고규정할수있다. 행위를취하지아니하는정당한근거는서면으로제공된다. 각당사국은심사기구가협정의위반또는협정준수의실패가있다고결정한경우, 그에따라입은손실또는손해에대한시정행위또는보상을규정하는절차를채택하거나유지하여야한다. 그러한시정행위또는보상은입찰참가준비를위한비용또는이의제기와관련된비용, 또는양자모두로제한될수있다(제18조제7항)

2) 제20조(협의및분쟁해결)

WTO 정부조달협정제20조는정부조달과관련된분쟁이발생하는경우당사국간의협의및분쟁해결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정부조달과관련된각당사국들은다른당사국이 WTO 정부조달협정의운영에영향을미치는사안과관련하여제기하는진정을호의적으로고려하고, 그에관한협의를위해적절한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제20조제1항).

그리고협정에따른의무의불이행또는협정의규정에상충되는지여부와관계없이, 다른당사국이나당사국들이취한조치의결과로당사국이 WTO 정부조달협정에따라 자신에게직접또는간접적으로발생하는혜택이무효화되거나침해되고있거나, 또는 WTO 정부조달협정의목적의달성이방해받고있다고보는경우, 해당당사국은그사안에대한상호만족스러운해결책에이를것을목적으로, WTO 설립협정의제2부속서인분쟁해결규칙및절차에관한양해각서(DSU)의규정을준용할수있다.[55]다만, 위와같은비위반제소와관련하여, 정부조달에관한협정개정의정서의발효일로부터 5년째되는해가끝나는날이전에위원회는분쟁해결절차에관한제20조제2항나호의적용가능성을다시심사하기로하였다(제22조제10항).

나아가정부조달과관련된협의및분쟁의해결에관하여는위분쟁해결규칙및절차에관한양해각서(DSU)의규정을적용하여야한다. 다만, 정부조달협정은 WTO 설립협정의제4부속서를구성하는복수국간무역협정(PTA) 중의하나이므로, 다른협정과의교차보복은[56]허용되지않는다. 즉, DSU의제22조제3항에도[57]불구하고, WTO 정

---

[55]이른바비위반제소(non-violation case)의근거가되는조항이다.

[56] 교차보복(cross-retaliation)은 WTO 정부조달협정이적용되는사건과관련하여위반국에대해그에대한보복으로서상대국이농산물협정관련농산물의관세를잠정적으로인상하는것과같이다른협정상의보복수단을활용하는것을의미한다.

[57]분쟁해결규칙및절차에관한양해(DSU) 제 22 조(보상및양허의정지)

3. 어떠한양허또는그밖의의무를정지할것인지를검토하는데있어서제소국은다음의원칙과절차를적용한다.

가. 일반적인원칙은제소국은패널또는상소기구가위반또는그밖의무효화또는침해가있었다고판정을내린분야와동일한분야에서의양허또는그밖의의무의정지를우선추구하여야한다는것이다.

나. 동제소국이동일분야에서양허또는그밖의의무를정지하는것이비현실적또는비효과적이라고간주하는경우, 동일협정상의다른분야에서의양허또는그밖의의무의정지를추구할수있다.

다. 동제소국이동일협정상의다른분야에서의양허또는그밖의의무를정지하는것이비현실적또는비효과적이며상황이충분히심각하다고간주하는경우, 다른대상협정상의양허또는그밖의의무의정지를추구할수있다.

부조달협정이아닌 DSU의부록 1에기재된협정(정부조달협정제외)에따라발생하는 분쟁이정부조달협정에따른양허또는다른의무의중지로귀결되지아니하고, 정부조달협정에따라발생하는분쟁이 DSU 부록 1에기재된다른협정에따른양허또는다른의무의중지로귀결되지아니한다.

한편, 1994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는포함되어있었던내용인 '분쟁을검토하기 위해구성된패널에정부조달분야의전문가가포함되어야한다'는규정이삭제되는한편, 패널의구성기한, 위임사항등에관하여 DSU와달리규정하고있던내용도모두삭제됨으로써, DSU의일반규정들이그대로준용되도록하였다.

바. 기타

라. 위의원칙을적용하는데있어서동제소국은다음사항을고려한다.
(1) 패널또는상소기구가위반또는그밖의무효화또는침해가있었다고판정을내린분야또는협정상의무역, 그리고동무역이제소국에서차지하는중요성
(2) 무효화또는침해에관련된보다더광범위한경제적요소와양허또는그밖의의무의정지가초래할보다더광범위한경제적파급효과
마. 동제소국이나호또는다호에따라양허또는그밖의의무를정지하기위한승인을요청하기로결정하는경우, 요청서에그사유를명시한다. 분쟁해결기구에요청서를제출함과동시에제소국은관련이사회, 그리고또한나호에따른요청의경우에는관련분야기구에도요청서를송부한다.
바. 이항의목적상 "분야"란다음을의미한다.
(1) 상품과관련, 모든상품
(2) 서비스와관련, 주요분야를명시하고있는현행 "서비스분야별분류표"에명시된이러한분야(Re.14: MTN.GNS/W/120 문서상목록은 11개분야를명시하고있다)
(3) 무역관련지적재산권과관련,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제2부제1절, 또는제2절, 또는제3절, 또는제4절, 또는제5절, 또는제6절, 또는제7절에규정된각지적재산권의범주, 또는제3부또는제4부상의의무
사. 이항의목적상 "협정"이란다음을의미한다.
(1) 상품과관련, 세계무역기구협정부속서 1가에열거된협정전체와관련분쟁당사자가그회원국인경우복수국간무역협정
(2) 서비스와관련,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3) 지적재산권과관련,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1) 기구(제21조)

WTO에는상품, 서비스등무역부문별로관련협정의이행, 심의및중요내용의검토등의역할을수행하는위원회를두고있다. 상품무역과관련하여서는시장접근위원회, 농산물위원회, 위생및검역조치위원회, 원산지규정위원회, 보조금및상계조치위원회, 관세평가위원회, 기술무역장벽위원회, 반덤핑관행위원회, 수입허가위원회,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 섬유감시기구가있고, 서비스무역과관련하여서는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 기본통신협상그룹, 인력이동협상그룹, 해운서비스협상그룹, 전문서비스작업반등이있다. 그리고 WTO 정부조달협정제21조제21조제1항에따라정부조달과관련하여정부조달위원회가설치되었다.

정부조달위원회는독자적인의장을선출하고, WTO 정부조달협정의운영또는그목적의증진과관련된사안에대하여협의할기회를당사국에게부여하며, 당사국에의하여위원회에배정될수있는책임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에따라, 그러나적어도 1년에한번회동한다(제21조제1항). 정부조달위원회는위원회가부여하는기능을수행할작업반또는다른부설기구를설립할수있다(제21조제2항).

[위원회를포함한 WTO 조직도][58]

[58] http://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372&layoutMenuNo=311(관세청홈페이지, 2018. 10. 1. 방문).



그리고정부조달위원회는 WTO 정부조달협정의이행및운영을검토하고, WTO 협정제4조제8항에따라위원회의활동과 WTO 정부조달협정의이행및운영과관련되는진전사항을일반이사회에보고하여야한다(제21조제3항).

한편, WTO 정부조달협정의당사국이아닌 WTO 회원국은정부조달위원회에서면통보를제출함으로써정부조달위원회에참관자로서참여할자격을갖는다. 모든 WTO 참관자는정부조달위원회에참관자로서참여하기위한서면신청을위원회에제출할수있고, 정부조달위원회로부터참관자지위를부여받을수있다(제21조제4항). 위규정에따라현재 32개국가또는기관이참관자(옵저버)로서 WTO 정부조달협정에참여하고있으며, 그중 10개국가[59]가 WTO 정부조달협정의가입을위한협상을진행중이다.

2) 최종규정(제22조)

WTO 정부조달협정제22조최종규정에서는협정의수락및발효, 가입, 유보, 국내입법, 향후협상및작업계획, 개정, 탈퇴, 협정의특정당사국사이에서의비적용, 부록, 사무국, 기탁과등록과같은일반적인사항들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우선 WTO 정부조달협정은, 이협정의부록 I의부속서를적용받기로합의한정부로서,[60]이협정을 1994년 4월 15일서명으로써수락하였거나, 비준을조건으로그날까지해당협정에서명하고이어서 1996년 1월 1일전에해당협정을비준한정부에대하여 1996년 1월 1일발효한다(제22조제1항).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은동회원국과당사국사이에합의될조건에따라이협정에가입할수있으며, 그러한조건은위원회의결정문에명기된다. 가입은합의된조건을명기한가입문서를세계무역기구사무총장에게기탁함으로써이루어진다. 이협정은이에가입하는회원국에대하여가입문서기탁으로부터 30일째되는날발효하며(제22조

[59]가입협상을진행중인 10개국가는알바니아, 호주, 중국, 조지아, 요르단, 키르기스공화국, 오만, 러시아, 타지키스탄, 마케도니아이다.
[60]이협정의목적상, "정부"라는용어는유럽연합의권한있는당국을포함하는것으로본다.

제2항), WTO 정부조달협정에관하여는유보(reservation)가허용되지아니하여그어느 당사국도이협정의규정과관련하여유보를제기할수없다(제22조제3항).[61]

각당사국은이협정의자신에대한발효일이전까지자신의법률, 규정및행정절차 그리고자신의조달기관이적용하는규칙, 절차및관행이이협정의규정에부합하게되도록보장한다(제22조제4항). 그리고각당사국은이협정과관련되는자신의법률및규정의모든변경사항과그러한법률및규정을시행함에있어서의모든변경사항을위원회에통지한다(제22조제5항).

향후협상및작업계획과관련하여, 각당사국은공개조달을왜곡하는차별적조치를도입하거나지속하는것을회피하도록노력한다(제22조제6항). 그리고 2012년 3월 30일채택된정부조달에관한협정개정의정서의발효일로부터 3년이끝나는날이전에, 그리고그후에는주기적으로, 당사국은이협정을개선하고, 차별적조치를점진적으로줄이고제거하며, 개발도상국의소요를고려하면서모든당사국사이에서호혜주의에근거하여협정적용범위를가능한한최대한확장하는것을이루기위하여추가협상을한다(제22조제7항).

정부조달위원회는①중소기업의취급, ②통계데이터의수집및전파, ③지속가능한조달의취급, ④당사국부속서에있는배제및제약, ⑤국제조달에서의안전기준에관한작업계획의채택을통하여, 이협정의이행과 WTO 정부조달협정제22조제7항에규정된개정협상을촉진하기위한추가적인작업을한다(제22조제8항가호). 이에더하여정부조달위원회는주기적으로검토하고갱신할수있는, 추가적인항목에관한작업계획의목록을포함하는결정을채택할수있다. 그리고정부조달위원회는 WTO 정부조달협정제22조제8항가호에따른개개의작업계획과앞서와같은추가적인작업계획에서하여야할작업을제시하는결정을채택한다(제22조제8항나호).

---

[61] 유보(reservation)란조약내특정조항의법적효과를자국에대해서는적용을배제시키거나변경시키려는의도의일방적선언이다. 조약에관한비엔나협약제 19조에서유보를광범위하게허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는그통일적규율을위하여유보를명문으로금지하고있다.

WTO 협정부속서 1가의원산지규정에관한협정에따라수행되고있는, 상품의 원산지규정을조화시키기위한작업계획과서비스무역에관한협상이타결된후, 당사국은적절한경우, 원산지규정의적용에관한 WTO 정부조달협정제4조제5항을개정함에있어그작업계획및협상의결과를고려한다(제22조제9항). 위와관련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은가입국에대해서만내국민대우및최혜국대우, 비차별원칙을적용하고, 가입국에대해서도상대방국가의양허범위에대응하여조달시장을개방하는등철저한상호주의원칙에입각하여조달시장개방이이루어지고있는데, 결과적으로 WTO 정부조달협정가입국은비가입국에대하여조달시장의개방을하지않게된다. 그리고개발도상국을원산지로하는상품과서비스에관하여는일정한잠정조치등특례가부여될수있다. 이와관련하여상품및서비스의원산지판단이의미가있는데, 이와관련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는별도의원산지판단기준을두지않고, 다만당사국이자국의원산지규정을원칙적으로적용할수있되, 다른통상적인거래과정에서적용되는것과달리정부조달의목적을위한원산지규정은채택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제4조제5항). 그런데 WTO 정부조달협정개정협상이완료된당시(2006) 상품의원산지규정을조화시키기위한작업계획과서비스무역에관한협상이타결되지아니하였으나, 그와같은작업계획과협상이타결된후그결과를고려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제4조제5항에따른원산지판단원칙의개정을고려하도록위와같은규정을두었다.

정부조달에관한협정개정의정서의발효일로부터 5년째되는해가끝나는날이전에위원회는분쟁해결절차에관한제20조제2항나호의적용가능성을심사한다(제22조제10항). 즉, GATT 제23조제1항 (b)호에서[62] 비위반제소를허용하고있으나, DSU 제26조에[63] 따라그러한비위반제소는합리적기대이익이존재하고, 정부의구체적조

---

[62] GATT 제23조(무효화또는침해)

1. 체약당사자가다음의결과로이협정하에서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자신에게발생되는이익이무효화되거나침해되고있거나이협정이목적달성이방해되고있다고인정하는경우

(b) 이협정규정과의저촉여부를불문하고다른체약당사국에의한조치의적용

[63] DSU 제26조

1.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b)에규정된형태의비위반제소

치가존재하며, 그로인해협정의무효화또는침해되고있거나대상협정의목적달성이저해된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에한하여허용된다. 그리고그러한경우 WTO 분쟁사안중소위 Japan – Film Case의[64]판정문내용과같이제소국이입증책임을부담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WTO 정부조달협정제20조제2항은협정의위반과관계없이 DSU를적용하여분쟁을해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데, 그적정여부에관하여WTO 정부조달협정의개정의정서발효일(2014. 4. 6.)로부터 5년째되는해가끝나는날(2019. 12. 31.) 이전에정부조달위원회가위와같은내용의 WTO 정부조달협정제20조제2항나호의적용, 개정여부등에관하여심사하도록규정하고있다.[65]

당사국들은 WTO 정부조달협정을개정할수있다. 개정사항을채택하고, 당사국의수락을위하여이를제출하는결정은총의(consensus 방식)에의한다. 개정사항은

: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b)의규정이특정대상협정에적용될수있는경우, 패널또는상소기구는일방분쟁당사자가특정회원국의조치의결과로인하여동조치의특정대상협정의규정에대한위반여부에관계없이, 특정대상협정에따라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자기나라에발생하는이익이무효화또는침해되고있다고간주하거나동대상협정의목적달성이저해되고있다고간주하는경우에만판정및권고를내릴수있다. 이러한당사자가특정사안이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b)의규정이적용될수있는대상협정의규정과상충하지아니하는조치에관한것이라고간주하고, 또한패널이나상소기구가그렇게판정하는경우에이양해의절차가다음에따를것을조건으로적용된다.

가. 제소국은관련대상협정과상충하지아니하는조치에관한제소를변호하는상세한정당한사유를제시한다.

나. 특정조치가관련대상협정을위반하지아니하면서동협정에따른이익을무효화또는침해하거나동협정의목적달성을저해한다고판정이내려지는경우, 동조치를철회할의무는없다. 그러나이러한경우패널또는상소기구는관련회원국에게상호만족할만한조정을행하도록권고한다.

다. 제21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21조제3항에규정된중재는일방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무효화또는침해된이익의수준에대한결정을포함할수있으며, 또한상호만족할만한조정에이르기위한수단및방법을제의할수있다. 이러한제의는분쟁당사국에대하여구속력을갖지아니한다.

라. 제22조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보상은분쟁의최종적인해결로서의상호만족할만한조정의일부가될수있다.

[64]Japan — Measures Affecting Consumer Photographic Film and Paper, WT/DS44/5.

[65]다만, 2018. 10. 현재까지그구체적인심사내용은확인되지않는다.

①개정사항을수락하는당사국과관련해서는, 당사국의 3분의 2가수락하는때, 그 후에는다른당사국마다이를수락하는때발효(나호에규정된경우는제외한다)한다. 그리고②개정사항이당사국의권리와의무를변경하지아니하는성격이라고정부조달위원회가총의로결정하는경우, 당사국의 3분의 2가수락하는때에모든당사국에대하여발효된다(제22조제11항)

당사국은 WTO 정부조달협정을탈퇴할수있다. 탈퇴는세계무역기구사무총장이탈퇴서면통보를접수한날로부터 60일이끝나면발효한다. 그러한통보가있는경우, 어느당사국이든지또는정부조달위원회가즉시회동할것을요청할수있다(제22조제12항). 이에반하여이협정의당사국이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아니게되는경우, 그당사국은자신이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아니게된날로이협정의당사국이아닌것으로된다(제22조제13항).

두당사국중어느한당사국이 WTO 정부조달협정을수락하거나이협정에가입할때어느한당사국이두당사국사이에서 WTO 정부조달협정을적용하는것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 WTO 정부조달협정은해당두당사국사이에서는적용되지아니한다(제22조제14항). WTO 정부조달협정의개정협상이진행되던당시대만과중국이모두 WTO 정부조달협정가입협상을하고있었는데, 양국은상대방의협정가입등을문제삼았다. 그런데위규정에따라대만과중국중어느한쪽이협정에가입하더라도양국사이에는협정의적용이없도록할수있게되었는바, 대만은이미 2009년정부조달협정에가입하였고, 중국은현재까지가입협상이진행중이다.

한편, WTO 정부조달협정의부록은이협정의불가분의일부를구성한다(제22조제15항). 그리고 WTO 정부조달협정과관련되는사무는세계무역기구사무국이담당한다(제22조제16항). WTO 정부조달협정은세계무역기구사무총장에게기탁되며, 사무총장은 WTO 정부조달협정과같은협정제19조에따른이협정에대한정정또는수정및제22조제11항에따른협정개정의인증등본과같은협정제22조제2항에따른이협정으로의가입및같은조제12항또는제13항에따른탈퇴에관한통보문을각당사국에게

지체없이제공한다(제22조제17항). 이협정은국제연합헌장제102조의 [66] 규정에따라 등록된다(제22조제18항).

[66] UN 헌장제102조

1. 이헌장이발효한후유엔회원국이체결하는모든조약과모든국제협정은가능한한신속히사무국에등록되고사무국에의하여공표된다.

2. 이조제1항의규정에따라등록되지아니한조약또는국제협정의당사국은국제연합의어떠한기관에대하여도그조약또는협정을원용할수없다.

제3장 FTA 중정부조달에관한규정의내용

1. 서론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이란우리나라가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과관세의철폐, 세율의연차적인인하등무역의자유화를내용으로하여체결한 「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4조에따른국제협정과이에준하는관세의철폐또는인하에관한조약·협정을말한다.

즉, WTO와같은다자간무역협정(Multilateral Trade Agreement)에대비하여,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과같이일정한지역에속한국가들간이나제한된수의국가들간의무역관계를규율하는국제질서나체제를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체제라하고, [67] 이러한지역무역협정체제는일반적으로그심화정도에따라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으로구분할수있는데, 그중첫번째단계로서역내관세철폐의단계의가장낮은수준의지역무역협정이 FTA로분류된다.

위와같은 FTA는모든회원국에대한최혜국대우를보장하는 WTO의기본원칙의예외로서, 제한된국가들내에서무역장벽을철폐또는완화하여자유무역을확대한다는측면에서인정되고있는데, [68] 그당사자인국가들사이의합의에따라상품및서비스에대한관세및기타제한적통상규제가전부또는일부철폐되기도한다.

따라서대한민국은상대방국가와의협상에따라 WTO 정부조달협정의당사국과의사이에서도 FTA를체결할수도있고, 그렇지않을수도있다. 그리고협상결과에따

[67] 이영달, FTA 협정및법령해설, 세인북스, 2016, 1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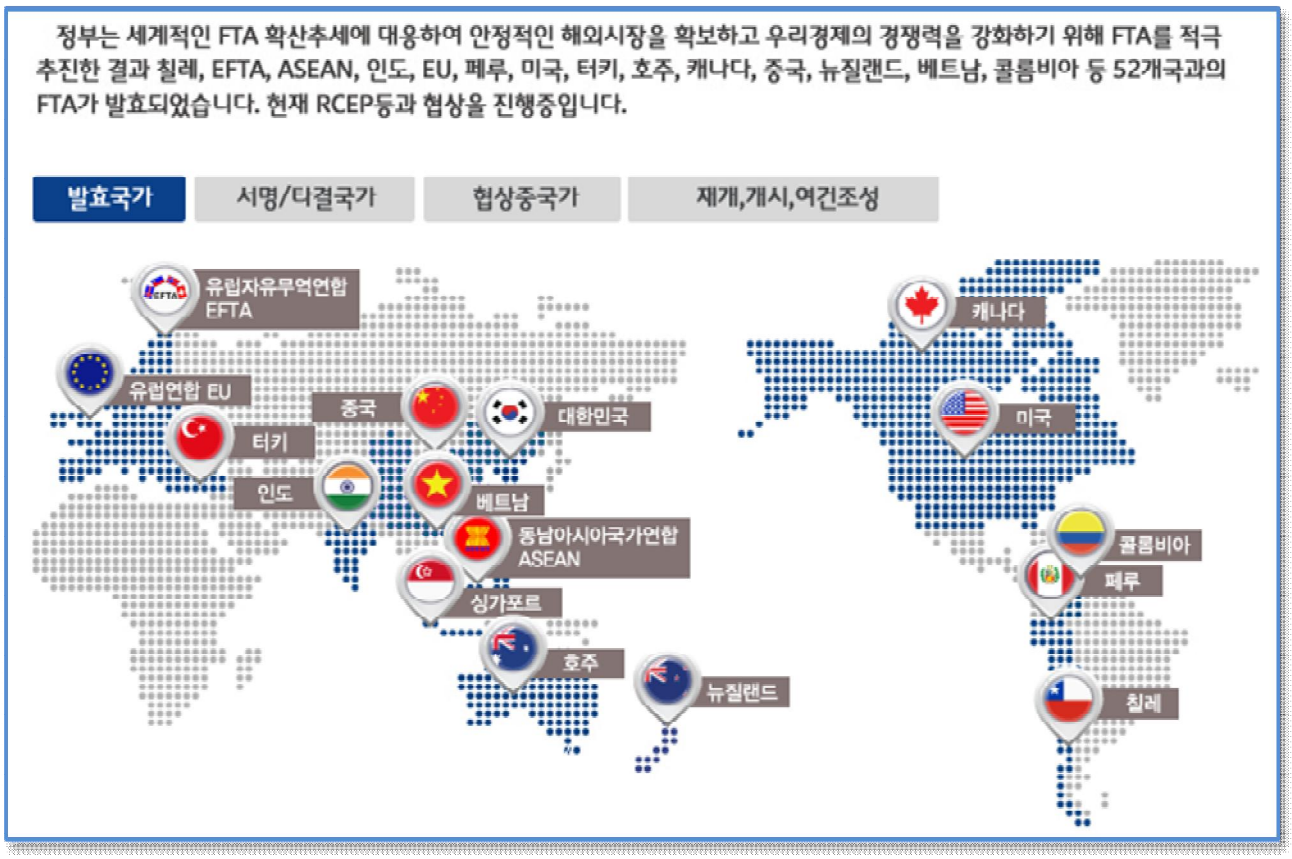
[68] 1994 GATT 제24조.

라그국가들과의 FTA에서관세철폐등에관한규정만을두고정부조달에관한내용을포함시키지아니할수도있고, 정부조달에관한내용을포함시킬수도있다.

2.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대한민국은 2018. 10. 현재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인도, EU(유럽연합),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15개지역(52개국가)과의사이에 FTA를체결하여 발효중에있다.[69]

[우리나라 FTA 현황: FTA 홈페이지[70]]



[69]이상, 열거순서는 FTA의발효일자순서이다.

[70]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ov/

그런데대한민국이체결하여발효중인 FTA의당사국 15개국중에는 WTO 정부조달협정에가입한국가도있고, 그렇지않은국가도있다. WTO 정부조달협정에가입한국가는아르메니아, 캐나다, EU 및그 28개회원국,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대한민국,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몬테네그로, 아루바(네덜란드령),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우크라이나, 미국인데, 그중미국, EU, EFTA(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는대한민국과 FTA를체결하였다. 그런데이러한경우 WTO 정부조달협정에서의개방범위와 FTA 중정부조달에관한장(Chapter)에서의개방범위가상이한경우가있다.

그리고대한민국이체결한 FTA의체결상대국가들중위각국가또는국가연합을제외한나머지국가들의경우아직 WTO 정부조달협정에가입하고있지않다.그각국가들과의 FTA에서정부조달에관한별도의장(Chapter)을두어 WTO 정부조달협정가유사한수준의개방을하고있는칠레,페루,콜롬비아,호주와같은경우가있고, 그렇지않고정부조달시장을여전히개방하고있지않은ASEAN, 인도,터키,베트남,중국과같은경우도있다.

따라서 FTA 체결상대국가가 WTO 정부조달협정의당사국인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를구분하여, 각각의경우에 FTA의정부조달에관한규정내용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하에서는 WTO 정부조달협정당사국과체결한 FTA와그렇지않은경우의 FTA를구분하여각각의정부조달챕터내용을검토한다.

3. FTA별정부조달챕터의내용

가. WTO 정부조달협정당사국과체결한 FTA에서의정부조달챕터내용

1) 한-EFTA FTA[71]

정부는 2004년최초의 FTA인한-칠레 FTA 체결후여러국가들과동시다발적으로 FTA를추진하면서, 3번째 FTA 대상으로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서유럽 4개국의경제연합체인유럽자유무역연합(EFTA) [72] 을선정하여, 2005년 1월부터협상을개시하였다. 한국과 EFTA는 2005년 12월에정식서명을하였으며, 이후 2006. 9. 1. 한-EFTA가발효되었으며, 이를교두보로하여한-EU FTA 체결에까지이르게된다.

한-EFTA FTA는전문(前文)과본문 10개장, 13개부속서, 그리고농업및투자와관련한별도협정등으로구성되어있는데, 정부조달에관하여는본문제6장에서 3개의조문만을두고있다(한-EFTA의정부조달챕터의내용은부록 3 참조). 한-EFTA FTA 제6장정부조달에관한규정에따르면, 당사국들의정부조달에관한권리와의무는정부조달협정에의하여규율된다(제6.1조). 그외정부조달협정과다른별도의규정을두거나, 양허내용을변경하는합의는위 FTA에일체포함되어있지않다.

---

[71]공식명칭은「대한민국과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에대한최종의정서」이고, 영어본이원본이며, 여기서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은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국, 노르웨이왕국및스위스연방을의미한다(서문). 이하한-EFTA FTA라한다.

[72]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은 1960년 1월 4일창립된국제기구로서, 2018. 10. 현재서유럽국가중유럽연합(EU)에가입하지않은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4개의국가들이속해있다. 참고로 1960년영국을중심으로,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의 7개국이 EU의전신인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에대응하기위해 EFTA를설립하였다. 그런데 1961년핀란드가준회원, 1966년정식회원으로 EFTA에가입하였고, 1970년에는아이슬란드가가입하였으나, 영국과덴마크가 1973년 EEC에가입하며탈퇴했고, 1983년에는포르투갈도탈퇴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들어 1991년리히텐슈타인이 EFTA에가입하는대신 1995년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EU에가입하며탈퇴했다. 한편, EFTA는유럽연합(EU)과상호협정을추가로맺어유럽경제지역을형성하므로, 스위스를제외한 EFTA 국가의국민들은유럽연합국가의국민들과거의동등한경제적권익을보장받는다.

한-EFTA FTA 제6.2조에서는정부조달과관련된사안에대한당사국들간의의사소통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 정부조달분야의규칙및규정에관한정보의제공을책임질접촉선(contact point)을부속서ⅩⅡ에명시하도록규정하였는데, 그에따르면대한민국은재정경제부, 스위스는경제부, 노르웨이는현대화부, 리히텐슈타인은외교부, 그리고아이슬란드는재무부가접촉선의역할을한다(부속서ⅩⅡ).

한편, 당사국이비당사국에자국의정부조달시장에의접근에관한추가적인혜택을부여한경우, 그당사국은상호주의에입각하여다른당사국에이러한혜택의확대가능성에관한협상을개시할것에합의하였다(제6.3조).

2) 한미 FTA[73]

한미 FTA는 2006. 6. 5. 공식협상을개최한후 8차에걸친공식협상끝에 2007. 4. 2. 협상이타결되었으나, 비준동의안의국회통과등의절차가지연됨에따라 2012. 3. 15.경에야비로소발효가되었다. 이후 2018. 1. 5.부터한미 FTA의개정협상이진행되었고, 양국의정부대표는 2018. 9. 24.에 FTA 개정안에서명하였다.이후우리나라는한미FTA 개정의정서에대한국회비준절차를완료하여2018. 12. 31. 관보를통해공포했으며, 2019. 1. 1.자로발효하였다.

한미 FTA는제17장에서정부조달에관한규정을두고있는데(한미 FTA의정부조달챕터는부록 4 참조), 양허범위를일부달리하는이외에, 계약대상가액산정, 입찰절차, 공급자자격심사등에관한 1994 WTO 정부조달협정의조달절차를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WTO 정부조달협정이개정되거나다른협정으로대체되는경우, 양당사국은협의후에정부조달챕터를개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제17.3조).

[73]공식명칭은「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어본및영어본이동등한정본이다(제24.6조). 이하한-미 FTA라한다.

따라서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이발효된현재, 한미 FTA 제17.3조제1항의 규정을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의적절한규정으로대체될가능성은있으나,현실적으로는한미양국이모두개정된WTO 정부조달협정의당사국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한미FTA를굳이개정하지않더라도어차피 WTO정부조달협정의절차적규정이 적용된다.

양허범위와관련하여, 정부조달에관한한미 FTA 제17장은양허표에명시된각 국중앙정부기관에한하여적용이되고, 지방정부및공기업은정부조달양허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장정부에대한양허하한선의경우상품서비스조달의경우미국의양허하한선은 10만불이고[74], 대한민국의양허하한선은 1억원이며[75], 건설서비스(CPC Code 51) 조달에대한양허하한선은양측모두 500만 SDR이다(한미 FTA의정부조달협정에관한양허범위는부록 5 참조).[76]

한미 FTA 주요특이사항으로는우선학교급식예외조항이있다. 1994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는학교급식예외조항을두고있지않았으나, 한미 FTA에서는학교급식예외조항을신설하여중앙정부의재정적지원하에구매하는학교급식용식자재의경우, 한미 FTA 정부조달조항의예외로인정받을수있도록하였는데(부속서 17-가제5절 대한민국양허표제1항), 이러한내용은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의대한민국양허표에반영이되었다.

---

[74]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미국의중앙정부기관에대한양허하한선약 20만불보다낮은금액이다.

[75]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대한민국의중앙정부기관에대한양허하한선약 2억원보다낮은금액이다.

[76] 원화환산액은당시기준으로약 95억원이고(기획재정부고시제2011-22호, 적용환율 1890.16원/SDR), 달러환산액은약 777.7만불이다(미연방조달규정제25.402조, 2년마다수정공고). 한편, 미국측양허하한선은 FAR 25.402에반영된다.

[한미 FTA상양허수준비교][77]

구 분		한 국	미 국
양허기관		중앙정부기관 51개	연방정부기관 79개
양허금액		상품 · 서비스: 1억원 건설서비스: 500만SDR	상품 · 서비스: 10만불 건설서비스: 500만SDR
양허금액		상품 · 서비스: 1억원 건설서비스: 500만SDR	상품 · 서비스: 10만불 건설서비스: 500만SDR
적용 대상	물품	양허기관이 조달하는 양허금액 이상의 모든 물품	좌동
	용역	WTO 정부조달협정 한국 양허표에서 개방된 서비스	WTO 정부조달협정 미국 양허표에서 개방된 서비스
	건설 서비스	CPC 51 건설서비스	좌동
기타사항		– 학교급식 예외조항 규정 – '국가계약법령'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중소기업 예외조항 규정	– 학교급식 예외조항 규정 – 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예외조항 규정

그리고구매, 리스, 임차또는할부구매, 건설·운영·이전방식의계약(BOT: Build-Operate-Transfer) 및공공사업실시협약(public works concession contract) 등다양한형태의계약적수단에의한정부조달들을협정의적용대상에포함시킴으로써, 민자사업에대해서도정부조달시장을개방하였으나, 비계약적합의또는당사국이제공하는모든형태의지원, 개발원조를포함하여국제지원을제공하는특정목적을위하여수행되는조달등은한미 FTA 정부조달챕터의적용이배제된다(제17.2조및부속서 17-가).

[77]관계부처합동한미 FTA 주요내용 152면.

한편, 공급자의참가조건충족여부평가시, 조달기관은공급자의조달참가또는계약에낙찰되기위한조건으로과거실적(해당조달기관과의낙찰사례또는당사국내사전실적)을요구하는것을금지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17.5조제2항), 이는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에서입찰의참여시에만과거조달실적을요구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을뿐, 낙찰시에그러한과거조달실적을요구하는것은금지하고있지않은것과대비된다. 그리고미국측은과거실적요구금지관련내용을한미 FTA 정부조달이행을 위한 USTR 공고및연방조달규정(77 FR 45)에포함하고있다(2012. 3. 2. 및 2012. 3. 7. 각각공포).

[과거실적금지관련미국측국내법관련규정]

- 미측의 연방조달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 의하면 입찰기업이 과거실적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해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하지 않음(FAR 15.305 (a)(2)(iv))*
  * In the case of an offeror without a record of relevant past performance or for whom information on past performance is not available, the offeror may not be evaluated favorably or unfavorably on past performance.
- 자국내 과거실적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하는 외국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탈락사유를 설명 받을(FAR 15.506, debriefing) 수 있고, 불복청구절차(FAR 33, protest) 이용 가능
  · 불복청구는 발주기관이나 발주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등에 제기 가능

그외한미 FTA가발효된시점에이미주요내용의합의가이루어진 WTO 정부조달협정의개정내용도다수반영이되어있다. 전자적수단에의해적용대상조달을수행하는경우, 조달기관은일반적으로이용가능하고다른정보기술시스템및소프트웨어와상호운영이가능한정보기술시스템및소프트웨어사용을보장해야하고, 각협정적용대상조달에대하여 1994 WTO 정부조달협정제9조(예정된조달에대한참가초청)

에따라적절한전자적매체로[78]조달공고를공표해야한다(제17.4조, 제17.6조). 그리고 조달기관은천연자원보전과환경보호를위해서, 또는작업장에서의기본원칙과근로조건관련법령의준수를위해서기술규격을작성, 채택또는적용할수있다(제17.7조).

한미 FTA는기간에관하여도상세한규정을두고있는데(제17.8조), 그에따르면 조달기관은조달의성격과복잡성등을고려하여공급자가입찰참가신청서와적합한입찰서를준비하고제출할수있는충분한시간을제공하여야하고, 선택입찰방식인경우, 입찰참가신청서제출마감일은조달공고공표일로부터원칙적으로 25일미만이되지않도록정하여야하며, 단긴급사태가조달기관에의해입증된경우에는 10일미만이되지않도록공고기간단축이가능하다. 그리고입찰서제출마감일은①공개입찰의경우에는조달공고공표일, ②선택입찰의경우에는공급자에게입찰서를제출하도록초청될것이라고조달기관이통지하는일자로부터각 40일이상이되어야한다. 다만, 아래의경우에는입찰서제출마감일을단축할수있는데, ①주요내용을담은계획된조달이 1994 WTO 정부조달협정제9조제7항에따라공표되었거나, 반복적인성격의조달이거나, 조달기관이긴급사태를입증하는경우, 10일미만이되지않도록단축이가능하고, ②전자적수단을이용한조달공고의공표, 입찰관련모든서류의전자적수단이용, 입찰서의전자적수단에의한접수에대하여각각 5일씩단축이가능하며, ③상업적상품또는서비스에대하여조달공고와입찰에관한서류를동시에전자적수단으로공표하는경우, 13일미만이되지않도록단축이가능하다. 입찰서도전자적수단으로접수하는경우 10일미만이되지않도록단축이가능하다.

한편, 한국과미국은당사국의대표로구성된정부조달작업반을설립하기로하였고, 상호합의또는일방당사국의요청에따라정부조달작업반의회의를개최하기로하였으며, 위작업반에서는정보기술관련문제를포함하여당사국이제안한정부조달에관한문제를검토하고, 각당사국정부조달기회에관한정보를교환한다(제17.10조)

---

78 대한민국측관련사이트는http://www.g2b.go.kr이고, 미국측관련사이트는 http://www.fedbizopps.gov이다.

3) 한-EU FTA[79]

28개유럽국가로구성되어있는 EU는[80] GDP 규모 18.46달러, 1인당 GDP 36,317 달러(2014년세계은행발표기준)의시장으로, 관세철폐효과에힘입어한국상품의 EU 역내시장진출및투자확대를꾀하고자한-EU FTA의체결이추진되었다.

한-EU FTA는정식발표이전에양측이잠정적용을위한각자의내부절차완료를통보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첫번째날부터잠정발효가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제15.10조제5항), 이는 EU의경우개별회원국모두의비준에통상 2~3년이소요되는점을고려하여 EU 공동체의배타적권한사항에해당하는부분에대해서는정식발효에앞서장정발효를가능하도록하기위한근거규정이다(한-EU FTA의정부조달에관한규정은부록 6 참조).

위와같은한-EU FTA의잠정적용조항에따라, 우리국회의비준동의완료와 EU 각료이사회의승인으로한-EU FTA의잠정발효가가능하게되었으며, 그에따라 2011.

---

[79]공식명칭은「대한민국과유럽연합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어본, 불가리아어본, 체코어본, 덴마크어본, 네덜란드어본, 영어본, 에스토니아어본, 핀란드어본, 프랑스어본, 독일어본, 그리스어본, 헝가리어본, 이탈리아어본, 라트비아어본, 리투아니아어본, 몰타어본, 폴란드어본, 포르투갈어본, 루마니아어본, 슬로바키아어본, 슬로베니아어본, 스페인어본및스웨덴어본이동등하게정본이다(제15.16조). 이하한-EU FTA라 한다..

[80]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2018. 10. 현재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등 28개국을회원국으로하며, 1993년 11월 1일에창립되었다. 한편, 영국은 1973년 EU의전신인유럽경제공동체(ECC)에가입한후 EU의초기회원국이었으나, 2016. 6. 23. 진행된브렉시트(Brexit), 즉영국(Britain)의 EU 탈퇴(Exit)에대한찬반국민투표에서투표에참여한영국국민의 51.9%가찬성표를던지게되어, 2017. 3. 28. EU 탈퇴를선언하고, 리스본조약제50조에따라 2019. 3. 24.까지 EU와탈퇴를위한협상을진행중이다.

7. 1. 자로한-EU FTA가잠정발효되었고, 그로부터만 4년 5개월이경과한 2015. 12. 13. 한-EU FTA가전체발효되었다.

한-EU FTA는제10장에서정부조달에관한규정들을두고있는데, 양허범위와관련하여일반정부조달시장의경우 WTO 정부조달협정상양허이상의추가개방은하지않았고, 일반정부조달절차에는 WTO 정부조달협정의절차규정을적용한다. 따라서입찰참가및낙찰시상대국내과거조달실적요구금지조항을포함하되, 필수적인경우에는과거실적요구가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제9.1조제4항). 다만추후 WTO 정부조달협정상양허내용변경시한-EU FTA에도자동적으로반영이되도록규정하고있다(제9.2조제1항).

민자사업의경우양측모두 1,500만 SDR(약 284억원) 이상의사업에대해개방을하였는데, EU의경우중앙정부및모든단위의지방자치단체의민자사업에대해서까지개방을한반면, 대한민국의경우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일부(서울, 부산, 인천, 경기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민자사업에한하여개방을하였다. 다만, 민자사업시설의소유권귀속에대해양측간개념이상이하여, 각자별도로민자사업에대한정의규정을두었는데(부속서 9 제1조), 대한민국은한미 FTA에서규정한 “건설, 운영, 이전방식계약(BOT: Build-Operate-Transfer)”라는정의를(부속서 9 제1조제1항), EU는 EU 통합공공조달지침에서규정한 “공공사업실시협약(Works Concessions)”라는정의를(부속서 9 제1조제2항) 각각사용하고있다. 그에따라 EU 측에서는계약기간동안시설의소유권이민간사업자에게귀속되고, 대한민국측에서는시설의소유권이정부기관에귀속되나, 계약기간동안민간사업자에게관리운영권이부여된다(한-EU FTA의정부조달에관한대한민국의양허범위에관하여는부록 7 참조).

한편, 한-EU FTA에서는민자사업에관한절차규정도두고있는데, 비차별의무및투명성관련일부절차적의무(최소한의기본정보를포함한입찰및낙찰공고, 이의신청절차)만을규정하고, 그외민자사업자선정및사업시행절차는각자국내법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부속서 9 제2조). 그리고국내민간투자법상중소기업보호제도가유지될수있도록중소기업보호조치규정을명시하였다(부속서 9 제2조제6항).

4) 한-캐나다 FTA[81]

2015. 1. 1. 발효한한-캐나다 FTA는대한민국이 12번째로체결한 FTA로, 제14장에서정부조달에관한조항들을규정하고있다. 한-캐나다 FTA는양당사국사이에기존 WTO 정부조달협정상의권리의무를배제하는것이아님을규정하고(제14.2조), 그구체적인규율에있어서는 WTO 정부조달협정을준용하고있으며, 한-캐나다 FTA의정부조달에관한규정들은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이양국간발효하는시점부터적용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제14.3조).

다만, WTO 정부조달협정중개발도상국에대한예외, 국내적심사절차, WTO 정부조달위원회등의일부규정은적용되지아니한다(한-캐나다 FTA의정부조달에관한규정의내용은부록 8 참조).

양허의범위와관련하여, 한-캐나다 FTA는 WTO 정부조달협정에비하여중앙정부기관의양허하한선을 7만 SDR로규정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에서양허된개방의범위를확대한특징이있다(한-캐나다 FTA의정부조달협정내용에대한대한민국의양허에관하여는부록 9 참조).

한-캐나다 FTA에서도학교급식및중소기업관련예외규정을두고있는바, 그에따라정부의재정적지원하에구매하는학교급식용식재자의경우대한민국의농산물을우선구매할수있고(부속서 14-가), 국내법에따른중소기업보호관련조치를예외로인정받을수있다(부속서 14-마).

[한-캐나다 FTA에따른양허범위의확대]

[81] 공식명칭은대한민국과캐나다간의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어본, 영어본및불어본이동등하게정본이다(제23.6조). 이하한-캐나다 FTA라한다.

– 중앙정부를 개방하되 WTO 정부조달협정 대비 높은 수준으로 개방

	한 · 캐나다 FTA	GPA(한국 양허)	개정 GPA(한국 양허)
상품 및 서비스 조달	중앙정부(7만 SDR 기준) 한 : 1억원 이상 캐 : 10만 캐불 이상	중앙정부 : 13만 SDR 이상	중앙정부 : 13만 SDR 이상
건설조달	중앙정부 : 500만 SDR 이상	중앙정부 : 500만 SDR 이상	중앙정부: 500만 SDR 이상

* 1 SDR = 1745.38원 (기획재정부 고시 기준, '13.1.1일 ~ '15.1.1일)

한편, 한-캐나다 FTA에서는협정의수정및정정, 추가협상에관한규정을두고있는데, 협정의수정및정정과관련하여, 어느한국가가정부조달양허기관을철회하거나수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제안을타방국가에통보하여야하고, 양국은협의를통해이의사항을해결하도록노력하며, 양허기관을수정하는경우등에는적절한보상방안을검토하여야한다(제14.4조). 그리고추가협상과관련하여, 추후양국중어느국가가제3국에게한-캐나다 FTA보다높은수준으로정부조달시장을개방하는경우, 추가협상에착수해야한다(제14.5조).

5) 한-뉴질랜드 FTA[82]

2015. 12. 20. 발효된한-뉴질랜드 FTA는제13장에서정부조달에관한조항들을규정하고있는데, 그내용은대부분 WTO 정부조달협정의내용과유사하다. 다만, 당시만하더라도뉴질랜드는 2012. 10. 개시한 WTO 정부조달협정가입협상이막완료되었을뿐, 그발효가되어있지않았었던관계로한-뉴질랜드 FTA에따라정부조달시장이개방된상태였으나, 이후뉴질랜드의 WTO 정부조달협정가입이발효되었다

[82] 공식명칭은대한민국과뉴질랜드간의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어본및영어본이동등하게정본이다(제21.6조). 이하한-뉴질랜드 FTA라한다.

(한-뉴질랜드 FTA의정부조달에관한규정은부록 10 참조). 다만, 뉴질랜드의경우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는 BOT를개방하지아니하였으나,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WTO 정부조달협정에서개방하지않은 BOT에대해서까지양허의범위를확대하였다(13.3조). 그외의양허범위는 WTO 정부조달협정에서의것과크게다르지않다(한-뉴질랜드 FTA의정부조달에관한규정에대한대한민국의양허범위는부록 11 참조).

[한-뉴질랜드 FTA상개방수준비교][83]

- 중앙정부를 개방하되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발효국인 뉴질랜드 조달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 우리 양허 수준은 이미 발효 중인 GPA 수준에 맞추어 우리측 부담 배제

구 분	한·뉴질랜드 FTA	GPA(한국 양허)	개정 GPA(한국 양허)
상품 및 서비스 조달	중앙정부 : 13만 SDR 이상	중앙정부 : 13만 SDR 이상	중앙정부 : 13만 SDR 이상
건설조달	중앙정부 : 500만 SDR 이상	중앙정부 : 500만 SDR 이상	중앙정부 : 500만 SDR 이상

WTO 정부조달협정에서와마찬가지로, 한-뉴질랜드 FTA의당사국들은상대방국가의기업에국내기업과동등한대우를부여하되, 외국과제휴또는외국인소유등을근거로불리하게대우하지않아야하고, 양국조달기관의대응구매는금지된다(제13.4조). 그리고조달참가조건은조달수행을위한법적, 재정적역량및상업적, 기술적능력을보장하는데필수적인것으로한정되고, 공급자의조달참가또는낙찰조건으로서과거실적요구를금지하며, 조달기관이사전에공고하거나입찰설명서에명시한조건에근거하여조달진행을하여야한다. 다만, 파산, 허위신고, 중대한법위반행위, 과거계약상의무불이행등이있는경우에는조달참여를배제할수있다(제13.9조). 한-뉴질랜드 FTA의당사국들은타방국가공급자의이의제기가있는경우이를해결하기위해공정한행정, 사법절차상시정조치를구할권리를보장하여야하고, 이의제기해결절차에대한정보도제공하여야한다(제13.17조).

[83]관계부처합동한-뉴질랜드 FTA 상세설명자료 80면.

어느한국가가정부조달양허기관을정정또는수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제안을타방국가에통보하여야하고, 다른쪽당사국이수정또는정정을반대하는경우이에대한반대를제안된수정또는정정의통보 30일이내에통보하여야하며, 형식적, 내용상미미한수정또는민영화의결과로정부통제가효과적으로제거된경우보상적조정은불필요하며, 그이외의개정은기존의적용범위수준을보장하기위한적절한보상이필요하다(제13.19조).

그리고최근체결되는다른여타의 FTA의경우에서와마찬가지로, 한-뉴질랜드 FTA는학교급식및중소기업관련예외규정을두고있는바, 정부의재정적지원하에구매하는학교급식용식자재의경우우리농산물우선구매가가능하고, 국내법에따른중소기업보호관련조치를예외로인정받을수있다(부속서 13-가).

6) 한-싱가포르 FTA[84]

한-싱가포르 FTA는한-칠레 FTA에이어대한민국이두번째로체결한 FTA로서 2006. 3. 2. 발효되었다. 한국과싱가포르는모두 WTO 정부조달협정의당사국이기는하지만, 제16장에서정부조달에관한규정들을별도로두었으며, 다만위 FTA 체결이 WTO 정부조달협정의개정이전에이루어진관계로, 그내용이위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의내용과다소상이하다(한-싱가포르 FTA의정부조달에관한규정의내용은부록 12 참조).

한-싱가포르 FTA 정부조달협정의주요내용으로는우선계약대상가액산정, 내국민대우및비차별원칙, 원산지규정, 입찰절차, 이의신청, 협정에대한예외등에서 WTO 정부조달협정의규정을준용하기로하였다(제16.3조). 그리고입찰기회와관련하여, 투명성및비차별원칙을존중하고정부조달에관련된정보를효율적으로전파하

[84] 공식명칭은대한민국정부와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어본및영어본이동등하게정본이며, 차이가있는경우에는영어본이우선한다(제22.7조). 이하한-싱가포르 FTA라한다.

기위해전자적통신수단을사용할것을권장하며, 자국의정부전자조달시스템개발에관한정보를교환하고기술협력및상호지원하도록하였다(제16.5조).

정부조달과관련된문제에대한의사소통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연락기관을우리측재정경제부(현재의기획재정부)와싱가포르측재무부로지정하여운영하기로합의하였다(제16.9조).

양허대상기관으로한국의경우 1994 WTO 정부조달협정상양허기관인 43개중앙정부기관, 15개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에국한), 19개투자기관을, 싱가포르는 23개국가기관, 24개기타기관을지정하였다(부록16A.1.). 양허하한선은중앙정부기관의경우양국모두상품과서비스는 10만 SDR, 건설서비스는 500만 SDR로하였다(부록16A.1양허표1). 즉, 양국모두중앙정부기관상품및서비스관련 WTO 정부조달협정상의양허하한선 13만 SDR을 10만 SDR로인하함으로써정부조달시장을추가개방하였다(한-싱가포르 FTA의정부조달에관한규정에대한대한민국의양허내용은부록 13 참조). 한국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는상품과서비스는 20만 SDR, 건설서비스는 1,500만 SDR이다(부록 16A. 1 양허표 2). 그리고투자및기타기관에서상품은양국모두 40만 SDR이나서비스의경우한국은미개방인반면, 싱가포르는 40만 SDR이며, 건설서비스의경우한국은 1,500만 SDR, 싱가포르는 500만 SDR이다(부록 16A. 1 양허표 2).

한국은중소기업보호정책을근거로한제한입찰조달과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축산법에따른농축수산물조달은예외로하기로하였고(부록 16A. 1), 정부조달의민감성을고려하여국가안보및국방과관련된부분도예외로인정하였다.

한국은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싱가포르는정부조달중재위원회를분쟁해결기관으로지정하였다(부록 16B. 2).

나. WTO 정부조달협정당사국이아닌국가등과체결한 FTA에서의정부조달챕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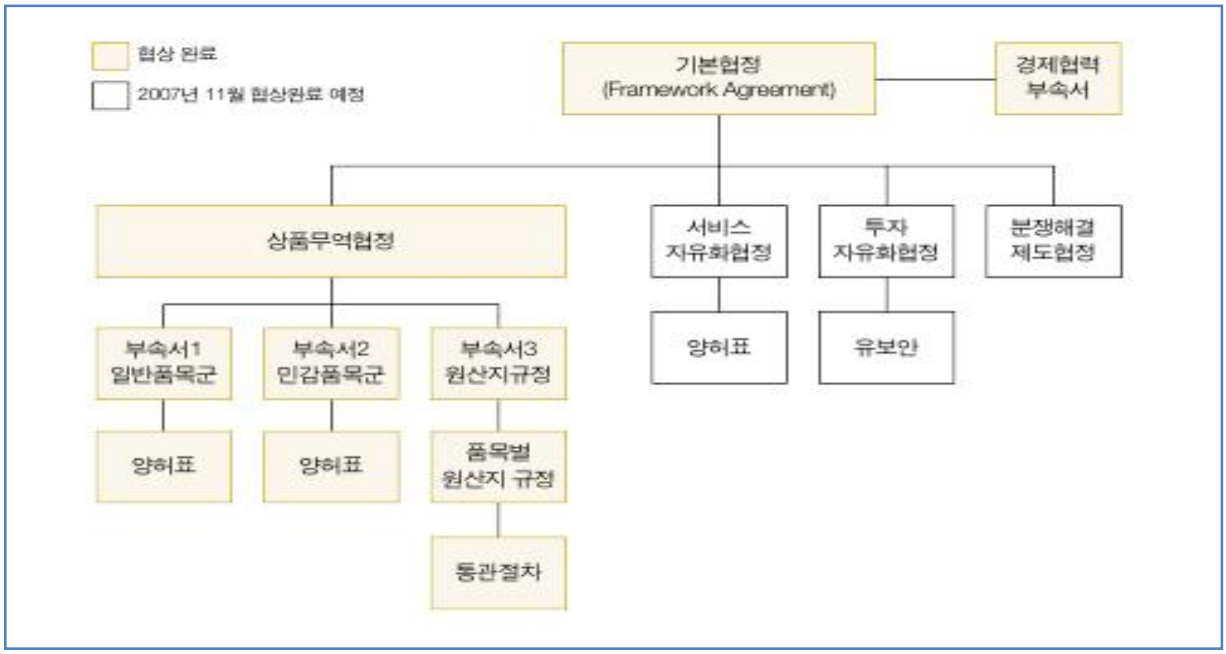
1) 한-ASEAN FTA[85]

2007. 6. 1. 발효된한-ASEAN FTA는한국과 ASEAN[86]회원국(10개국)에공통으로적용된다는점에서양자간협정인동시에복수국간협정의성격을지니고있다. 경제발전단계가상이한 ASEAN 10개회원국과의협상을보다원활하고효율적으로진행하기위해기존의 FTA에서사용된단일협상방식이아니라, 기본협정문을토대로상품무역협정과서비스투자협정등을순차적으로합의하는방식으로협상을진행하였으나, 현재기본협정문과상품무역협정, 경제협력에관한부속서만이체결된상태이다.

[한-ASEAN FTA의구성]

[85]공식명칭은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이고, 정본은영어로각 2부가작성되었다(제5.8조). 여기서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은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타이왕국및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의미한다(제1.2조). 이하한-ASEAN FTA라한다.

[86] ASEAN(AssociationofSouth-EastAsianNations), 즉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1967년 8월 8일 방콕선언(Bangkok Declaration)에의해창설된동남아시아의국제기구로, 그창설당시회원국은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타이) 5개국이었으나, 1984년브루나이, 1995년베트남, 1997년라오스와미얀마, 1999년캄보디아가차례로가입하여 2018. 10. 현재회원국은 10개국이다.



따라서한-ASEAN FTA에도정부조달에관한협정은별도로체결되어있지않고, ASEAN 회원국들은싱가포르를제외하고는 WTO 정부조달협정에가입하고있지도 아니하여, 결국싱가포르를제외한나머지회원국들에대하여는정부조달시장도개방 되어있지않다.

2) 한-인도 CEPA[87]

2010. 1. 1. 발효된한-인도 CEPA는신흥거대경제권과타결하는최초의 FTA라 는데의의가있으나, 정부조달에관하여는구체적인규정을두고있지않다. 한-인도 CEPA는총 14조의협정문중제13장에서양자간협력에관하여규정하면서,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및수송, 정부조달등양국의 13개관심분야에대한협력활동을

[87] 공식명칭은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한국어본, 힌디어본 및영어본이모두동등한정본이나, 불확실또는차이가있을경우에는영어본이우선한다(제 15.8조). 한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은상품및서비스의교역, 투자, 경제협력등경제관계전반을포괄하는내용을강조하기 위해사용하는용어로서실질적으로는 FTA아동일한성격을가진다. 이하한-인도 CEPA라한다.

증진시키기위한선언적내용을담고있을뿐이다. 그리고인도는정부조달협정에가입되어있지않다. 그에따라한국과인도는상대방에대하여정부조달시장을개방하고있지않다.

다만, 한국과인도는각자자국의경제에서정부조달의중요성을인식하고, 정부조달분야에서의양국간협력활동을촉진하도록노력하며, 그러한협력에는정부조달정책및규제체계에관한정부및견해의교환촉진, 축적된지식·경험및정보의상호제공, 전자조달에관한지식·경험및정보교환의촉진, 그리고정부교환을위한연락처의지정등이포함된다.[88]

3) 한-터키 FTA[89]

2013. 5. 1. 발효한한-터키 FTA는기본협정을토대로상품무역협정, 서비스투자협정및그밖의협정으로구성되는데(제1.4조), 정부조달에관한협정은그밖의협정으로서한-터키 FTA의일부를구성할것으로예정되어있다. 그러나현재까지그에관한협상이마무리되지아니하여, 현재로서는한-터키 FTA상정부조달에관한협정내용은존재하지않는다. 그리고터키는 WTO 정부조달협정에가입되어있지않다. 따라서한국과터키는상대방에대하여정부조달시장을개방하고있지않다.

4) 한-베트남 FTA[90]

2015. 12. 20. 발효한한-베트남 FTA에도정부조달에관한협정은별도로체결되어있지않고, 베트남은 WTO 정부조달협정에가입하고있지도아니하여, 결국한국

---

[88]한-인도 CEPA 제13.12조.

[89]공식명칭은대한민국과터키공화국간의자유무역지대를창설하는기본협정으로, 한국어본, 터키어본및영어본이각각동등하게정본이며, 불일치가있는경우영어본이우선한다(제8.8조). 이하한-터키 FTA라한다.

[90]공식명칭은대한민국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어본, 베트남어본및영어본이동등하게정본이며, 불일치가있는경우영어본이우선한다(제17.10조). 이하한-베트남 FTA라한다.

과베트남은상대방국가에대하여정부조달시장을개방하고있지않다. 서비스무역과투자에관한한-베트남 FTA 제8장, 제9장에서는정부조달에관하여는각장에서규정한내용의적용이없음을명시하고있다.[91]

5) 한-중 FTA[92]

2015. 12. 20. 발효된한-중 FTA는정부조달과관련하여서는선언적규정만을두고있을뿐, 실천적규정을두고있지는않다. 중국은현재까지정부조달협정의참가국이아닌관계로, 그간 WTO 정부조달협정가입협상이끝날때까지는 FTA 차원에서의관련논의에소극적입장을견지하여왔다. 그리하여한-중 FTA에서도정부조달에관한구체적인의무사항또는양허안을규정하지않고, 양국은정부조달분야를별도의독립된장이아니라경제협력에관한제17장의일부분야(제4절)로포함하여 5개의관련규정을두고있는것이다(한-중 FTA의정부조달에관한규정은부록 14 참조).

양당사국은각국의경제에서정부조달의중요성을인정하면서, 정부조달분야에서양당사국간의협력활동을증진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제17.13조). 그리고양당사국은법을공표하거나, 법규정및일반적으로적용되는행정판정과양당사국의조달시장에영향을미칠수있는각국의국제협정을달리공개하도록한다(제17.14조).

양당사국은중앙정부차원에서각국의법및규정에따라, 정부조달관련각국의법및규정에관한정보를교환하기로하고, 관련논의를촉진하기위해정부조달에관한접촉선을지정하였는데, 그러한정보교환과접촉선은중국의경우재정부로, 한국의경우기획재정부및조달청또는각각의승계기관으로정하였다(제17.15조, 제17.16조)

---

[91] 한-베트남 FTA 제8.1조, 제9.1조.

[92] 공식명칭은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어본, 중국어본, 영어본이동등하게정본이고, 다만불일치가있는경우영어본이우선한다(제22.6조). 이하한-중 FTA라한다.

그리고양당사국은상호주의를기반으로양당사국간정부조달협정을맺기위하여, 중국의세계무역기구정부조달협정가입교섭이완료되면, 최대한신속하게정부조달 관련교섭을개시하는것에합의하였다(제17.17조). 이는소위 built-in 조항으로, 추후한중 FTA에정부조달챕터를포함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여둔것으로보인다.

6) 한-칠레 FTA[93]

2004. 4. 1. 발효된한-칠레 FTA는대한민국이첫번째로체결한 FTA로서의역사적의의를가진다. 정부조달과관련하여서도, 칠레는 WTO 정부조달협정에가입되어있지아니하나, 한-칠레 FTA를통해당사국들은상대방국가에대하여정부조달시장을개방하였다.

한-칠레 FTA는제15장에서정부조달에관한규정들을두고있는데, 그내용은대부분 1994 WTO 정부조달협정의내용과유사하고(그내용에관하여는부록 15 참조), 다만양허기관및양허하한선에있어서위 1994 WTO 정부조달협정과범위를일부달리한다(한-칠레 FTA 중정부조달규정에대한대한민국의양허범위는부록 16 참조).

구체적으로당사국들은정부조달에있어서내국민대우및최혜국대우의원칙을적용하고, 기타차별적인국산품우선구매요건및대응구매의관행을금지하며, 정부조달제도, 공급자자격요건, 공급자선정결과등에대해명료성을보장하고전자매체등을포함한정보제공방안을공시하여야한다.

양허기관과관련하여서, 대한민국은 1994 WTO 정부조달협정상양허기관, 즉 42개국가기관, 14개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에국한), 21개투자기관에대해개방을하고, 칠레는기초자치단체를제외하고칠레-EU FTA상의양허기관(국가기관, 지방정부, 투자기관)에대해개방을하였다.

---

[93] 공식명칭은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어본, 서반아어본및영어본이동등하게정본이며, 차이가있는경우에는영어본이우선한다(제21.7조). 이하 한-칠레 FTA라한다.

양허하한선과관련하여서, 국가기관의경우양허하한선을 5만 SDR(시설공사의경우 500만 SDR)로정하여 1994 WTO 정부조달협정의그것과비교하여인하를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경우대한민국은 1994 WTO 정부조달협정과동일하게상품, 서비스의경우 20만 SDR, 시설공사의경우 1,500만 SDR을양허하한선으로규정하고있으며, 기타기관의경우양측모두 1994 WTO 정부조달협정과동일한양허하한선(상품 45만 SDR, 시설공사 1,500만 SDR)을설정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은중소기업보호정책을근거로하여, 당시중소기업보호제도를정부조달협정의예외로규정하는한편, 정부조달의민감성을고려하여한-칠레 FTA 전체에적용되는일반적예외와안보상의예외외에도국방및안보와관련하여방위사업청과국방부의정부조달양허범위를제한하는유보규정을두었고(부속서 15.1의부록 1에대한대한민국의 Note 제3항), 정부조달분야전체에대한안보상및일반예외조항을추가로규정한점이특색이다(부속서 15.1의부록 7인 General Notes의제1항과제2항).

7) 한-페루 FTA[94]

2011. 8. 1. 발효된한-페루 FTA는한-칠레 FTA와함께대한민국의남미지역진출확대를위한교두보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고있는바, 페루도칠레및다른중남미국가들과마찬가지로 WTO 정부조달협정에가입되어있지아니하다. 그러나한-페루 FTA에서당사국들은정부조달에관한별도의장(제16장)을두고상대방국가에대하여 정부조달시장을개방하였다(한-페루 FTA 중정부조달에관한내용은부록 17 참조).

한-페루 FTA는 1994 WTO 정부조달협정의내용을대부분따른한-칠레 FTA와는달리, 2006. 12.월경잠정합의가이루어진개정 WTO 정부조달협정의내용과유사

[94] 공식명칭은대한민국과페루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으로, 영어본, 스페인어본및한국어본이동등하게유효하고정본이며, 불일치가있는경우영어본이우선한다(제25.5조). 이하한-페루 FTA라한다.

한수준으로정부조달의일반원칙및절차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따라서당사국들은 양허대상정부조달을함에있어서상대방국가에대하여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에 준하는원칙과절차를준수하여야만한다. 즉, 한-페루 FTA 적용대상조달(covered procurement)에대해서는내국민대우및비차별대우의원칙, 전자적수단의사용, 대응구매의금지등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에규정된일반원칙이동일하게적용된다(제16.3조). 그리고대상조달에대하여는가액산정(제16.1조제5항 ~ 제8항), 공고(제16.7조), 참가조건(제16.6조), 입찰서류및기술규격(제16.7조), 기간(제16.8조), 입찰절차(제16.9조), 전자경매(제16.10조), 개찰및낙찰(제16.11조), 정보공개(제16.13조) 및공급자이의신청절차(제16.14조) 등의정부조달절차가적용되는데, 그내용은 대부분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의내용과유사하다.

한편, 한-페루 FTA 적용대상조달은상품및서비스를①부속서에양허된조달기관(정부기관및공기업)이, ②상업적판매또는재판매가아닌자기소비를목적으로, ③구매, 리스, 임차또는할부구매등의계약을통해, ④부속서에양허된양허하한선(threshold) 이상의금액으로조달하는경우를의미하는바, 그부속서에따라양국은중앙정부기관및광역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 1,500만 SDR(약 235억원) 이상의민자사업시장을상호개방하였다(한-페루 FTA 중정부조달에관한규정에대한대한민국의양허범위는부록 18 참조).

구체적으로양허의범위에관하여살펴보면, 양허기관과관련하여한-페루 FTA에서대한민국이양허한중앙행정기관의경우한미 FTA에서대한민국이양허한중앙행정기관과그범위가동일하고, 지방행정기관및공기업의경우 1994 WTO 정부조달협정상의대한민국양허범위와동일하다.

[한-페루정부조달양허비교(부속서 16A)][95]

[95]관계부처합동한-페루 FTA 상세설명자료 81면.

구분			한국	페루
중앙정부기관	양허 기관		중앙행정기관 41개	중앙행정기관 62개
	양허하한선	상품	9만 5천 • 발효후 5년간 5만	9만 5천
		서비스		
		건설서비스	500만	500만
지방정부기관	양허 기관		지방자치단체 15개	지방행정기관 25개
	양허하한선	상품	20만	20만
		서비스		
		건설서비스	1,500만	1,500만
기타기관(공기업)	양허 기관		공기업 18개	공기업 22개
	양허하한선	상품	40만	40만
		서비스	추후 개방 • 개정 GPA에서 양허할 경우, 그와 동일한 수준으로 양허	40만 • 발효 5년후, 한국측 미양허시 페루측도 양허 정지
		건설서비스	1,500만	1,500만

양허하한선의경우한-페루 FTA의양당사국은대체적으로 1994 WTO 정부조달협정에서의대한민국이양허한수준으로정부조달시장을상호개방하는것으로합의하였으나, 중앙행정기관의상품및서비스는 9만 5천 SDR로양허범위를확대하였다.

[WTO 정부조달협정, 한-페루 FTA와
한국 · 페루가기체결한 FTA상대한민국의양허하한선비교][96]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기타기관(공기업)		
	상품	서비스	건설서비스	상품	서비스	건설서비스	상품	서비스	건설서비스
GPA	13만	13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5만	미양허	1,500만
한-칠레	5만	5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5만	미양허	1,500만
한-싱가폴	10만	10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	미양허	1,500만
한-미	7만	7만	500만	미양허					
한-EU	GPA와 동일								
한-페루	9만5천	9만5천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	페루측 40만*	1,500만

[96]관계부처합동한-페루 FTA 상세설명자료 82면.

민자사업의양허와관련하여, 양당사국은한-페루 FTA 부속서 16A에열거한중앙정부기관및지방정부기관의 1,500만 SDR(약 235억원) 이상의민자사업을개방하도록합의하였는데(제16.1조제3항및부속서 16B 제1항 ~ 제3항), 이는한-EU FTA와한미 FTA의민자사업양허수준과비교하여그양허하한선에있어서는한-EU FTA와동일하게그범위가제한적이고, 양허기관의측면에서는중앙정부기관만을대상으로하는한미 FTA보다는넓다.

다만, 민자사업정부조달과관련한절차와관련하여서는특이사항이있다. 민자사업관련절차규범은한-페루 FTA 부속서 16B에비차별의무및일부투명성관련의무(입찰및낙찰공고, 이의신청절차)만을규정하고, 그외민자사업자선정및사업시행절차는각자국내법을적용하도록한다.

[한-EU FTA, 한미 FTA와한-페루 FTA의민자사업양허수준비교][97]

구분		한-EU FTA	한-미 FTA	한-페루 FTA
양허 하한선		1,500만 SDR	500만 SDR	1,500만 SDR
양허 기관	우리	중앙정부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양측 모두 중앙정부기관	양측 모두 중앙정부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상대국	중앙정부기관 및 모든 단위의 지자체		

그외에도조달기관은공급자의입찰참가자격심사시, 조달국내에서의영업활동뿐만아니라조달국밖에서의영업활동을기초로공급자의재정적, 상업적, 기술적능력을평가하고, 조달기관이입찰참가자격심사및낙찰시공급자에대해조달국내에서의과거조달실적을조건으로요구하는것을금지하며(제16.6조), 양국은중소기업의정

[97]관계부처합동한-페루 FTA 상세설명자료 82면

부조달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 정보교환및접근성개선을등을통해노력하여야하는등(제16.17조), 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에서규정된내용들이한-페루 FTA 제16장에대부분반영되었다.

한편, 대한민국은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규정에따른중소기업제품조달과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및축산법에따른농수축산물조달등을협정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부속서 16A Section A), 정부조달의민감성및국가정책수행측면에서의기능을고려하여, 국방, 안보, 공공안전, 보건등과관련된부분은협정적용의예외를인정하며(제16.2조), 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 한미 FTA 등과같이학교급식예외조항을두어, 정부예산으로구매하는학교급식용식자재를협정적용대상에서제외하여, 국내농산물의우선구매가가능하도록하는등(부속서 16A Section G), 협정적용의예외에있어서도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과같은예외를두었다.

8) 한-콜롬비아 FTA[98]

2016. 7. 16. 발효된한-콜롬비아 FTA는 2018. 10. 현재가장최근에발효된 FTA로, 한-칠레 FTA, 한-페루 FTA와함께대한민국의남미지역진출확대를위한교두보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는데, 콜롬비아도칠레, 페루및다른중남미국가들과마찬가지로 WTO 정부조달협정에가입되어있지아니하다. 그런데당사국들은정부조달분야를상호개방하기로합의하면서한-콜롬비아 FTA 제14장에서정부조달에관한상세한규정들을두었는데, 한-칠레 FTA, 한-페루 FTA에서와마찬가지로그대부분의내용이 WTO 정부조달협정의내용과궤를같이한다. 다만, WTO 정부조달협정이개정되기전에체결된한-칠레 FTA, 한-페루 FTA와는달리한-콜롬비아 FTA는개정된

[98] 공식명칭은대한민국과콜롬비아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입으로, 한국어본, 스페인어본및영어본이동등한정본이며, 불일치가있는경우영어본이우선한다(제22.7조). 이하한-콜롬비아 FTA라한다. 2016. 7. 16. 발효된한-콜롬비아 FTA는 2018. 10. 현재가장최근에발효된 FTA로, 한-칠레 FTA, 한-페루 FTA와함께대한민국의남미지역진출확대를위한교두보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WTO 정부조달협정의내용까지반영이되어있어, 그렇지않은한-칠레 FTA, 한-페루 FTA와는그규정내용들에있어서다소차이가있다(한-콜롬비아 FTA 중정부조달에관한규정의내용은부록 19 참조).

구체적으로한-콜롬비아 FTA 적용대상조달(covered procurement)에대해서는내국민대우및비차별대우의원칙, 전자적수단의사용, 대응구매의금지등 WTO 정부조달협정상일반원칙이그대로적용된다. 그리고대상조달에대하여는 WTO 정부조달협정상가액산정(제14.1조제5항, 제6항), 공고의공표(제14.5조), 참가조건(제14.6조), 공급자등록및자격심사(제14.7조), 기간(제14.8조), 예정된조달에대한정보(제14.9조), 제한입찰(제14.10조), 전자경매(제14.11조), 입찰서취급및낙찰(제14.12조), 낙찰후정보(제14.13조) 및국내심의절차(제14.14조) 등 WTO 정부조달협정상의절차준수의무와사실상동일한내용을그대로규정하고있다. 예를들어, 조달기관은공급자의입찰참가조건평가시, 조달당사국내에서의영업활동뿐만아니라, 조달당사국밖에서의영업활동을기초로공급자의재정적, 상업적, 기술적능력을평가하고, 조달참가또는계약낙찰의조건으로조달당사국내에서의낙찰실적이나사전작업경험을요구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제14.6조).

그외에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규정에따른중소기업제품조달과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및축산법에따른농수축산물조달등은협정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부속서 14A Section A), 정부조달의민감성및국가정책수행측면에서의기능을고려하여, 공공안전, 보건등과관련된부분은협정적용의예외를인정하며(제14.2조), 학교급식예외조항을두어학교급식용식자재를협정적용대상에서제외함으로써국내농산물의우선구매가가능하도록하는등(부속서 14A Section G), 협정적용의예외에있어서도 WTO 정부조달협정과같은예외를두고있다.

다만, 특이사항으로한-콜롬비아 FTA에서는협정적용대상조달에민자사업을포함시키고, 일반정부조달에적용되는절차와예외, 부속서상양허기관및양허하한선을동일하게적용하는방식으로민자사업을개방하고있다(제14.1조제2항).

한편, 양허범위와관련하여, 기본적으로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 콜롬비아는다른국가들과의사이에서체결한 FTA 상의양허범위를기준으로일부추가개방을하였다. 양허하한선과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상품및서비스조달과관련하여서는 7만 SDR로양허하한선을인하하였고, 서비스의경우, 대한민국이 WTO 정부조달협정을통해공기업서비스(40만 SDR)를양허한점을감안하여, 양허하한선은 40만 SDR로규정하였다(한-콜롬비아 FTA 중정부조달에관한규정에대한대한민국의양허내용은부록 20 참조).

[WTO 정부조달협정, 한-콜롬비아 FTA와
한국 · 콜롬비아가기체결한 FTA상대한민국의양허하한선비교][99]

(단위 : SDR)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기타기관(공기업)		
	상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상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상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현행 GPA	13만	13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5만	미양허	1,500만
개정 GPA	13만	13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	40만	1,500만
한-칠레	5만	5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5만	미양허	1,500만
한-싱가포르	10만	10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	미양허	1,500만
한-미	1억원*	1억원*	500만	미양허					
한-EU	현행 GPA와 동일								
한-페루	9만5천	9만5천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	페루측 40만**	1,500만
한-콜롬비아	7만	7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	40만**	1,500만

* 한 · 미 FTA의 경우, 중앙정부기관 상품 ·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미국은 10만 USD, 우리는 1억원(KRW)으로 설정

** 한 · 페루 FTA의 경우, 협정 발효와 함께 페루는 공기업 서비스를 개방하고 우리측은 WTO GPA 발효시 40만 SDR을 적용

*** 한 · 콜롬비아 FTA의 경우, 개정 GPA가 발효하는 때에 양허하한선(40만 SDR)을 양국에 적용

[99]관계부처합동한콜롬비아 FTA 상세설명자료 105면.

그리고상품의경우에는일부예외품목을제외하고, 양국모두상품전반을개방하였으며, 서비스의경우콜롬비아와페루와의 FTA에서와같이, 콜롬비아와미국캐나다등과의 FTA에서개방된서비스의범위에서 Engineering and Architectural Services 및 Printing Service를추가개방하였다.

[한-콜롬비아 FTA상정부조달양허비교(부속서 14A)][100]

〈 한 · 콜롬비아 정부조달 양허 비교(부속서 14A) 〉

단위 : SDR

구분			한국	콜롬비아
중앙정부기관	양허 기관		중앙행정기관 41개	중앙행정기관 28개
	양허 하한선	상품	7만	7만
		서비스		
		건설서비스	500만	500만
지방정부기관	양허 기관		지방자치단체 15개	지방행정기관 32개
	양허 하한선	상품	20만	20만
		서비스		
		건설서비스	1,500만	1,500만

구분			한국	콜롬비아
기타기관(공기업)	양허 기관		공기업 17개	공기업 8개
	양허 하한선	상품	40만	40만
		서비스	40만 * 개정 GPA가 발효되는 때 양허하한선 적용	40만 * 개정 GPA가 발효되는 때 양허하한선 적용
		건설서비스	1,500만	1,500만
기 타			-	13개 * 정부기관 조달에 적용되는 조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13개 기관에 대해 절차적 투명성과 우리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규정

[100]관계부처합동한콜롬비아 FTA 상세설명자료 104면, 105면

9) 한-호주 FTA[101]

한-호주 FTA는대한민국이 11번째로체결한 FTA로 2014. 12. 12. 발효하였으며, 호주는아시아국가와의교역비중이높고, 세계 12위경제대국으로높은구매력을보유하고있으나, WTO 정부조달협정에는가입하고있지않다. 그러나한-호주 FTA를통해당사국들은상대방국가에대하여정부조달시장을일정부분개방하였다.

한-호주 FTA의정부조달부분은제12장으로, 그내용은전반적으로 WTO 정부조달협정문을바탕으로작성하되, 민자사업도그적용범주에포함하였고, 학교급식과국내중소기업관련조달우대에대한예외를규정하고있다(한-호주 FTA의정부조달에관한규정은부록 21 참조). 즉, 대한민국의학교급식및국내중소기업의조달참여관련사항에대해서는한-호주 FTA 정부조달관련조항의적용을배제하고있는바, 정부의재정적지원하에구매하는학교급식용식자재의경우우리농산물을우선구매할수있고, 국내법에따른중소기업보호관련조치를예외로규정하고있다(부속서 12A).

양허범위와관련하여, 한-호주 FTA의양당사국은대체적으로 WTO 정부조달협정에서의대한민국이양허한수준으로정부조달시장을상호개방하는등그양허의범위가대부분 WTO 정부조달협정에서의양허범위와큰차이가없으나, 일부민자사업에대해서도양허의범위를확대하였다(한-호주 FTA의정부조달에관한규정에대한대한민국의양허범위는부록 22 참조). 즉, 한-호주 FTA상정부조달에관한내용은건설·운영·이전방식의계약(BOT: Build-Operate-Transfer) 및공공사업실시협약등민간투자방식에대해서도적용되나, R&D, 정부보조금, 공공고용계약, 부동산취득, 연금등관련금융자문, 자산관리서비스등은적용범위에서제외하였다(제12.1조, 제12.2조).

[101]공식명칭은대한민국정부와호주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어본, 영어본이동등하게정본이다. 이하한-호주 FTA라한다.

WTO 정부조달협정및앞서본 FTA들에서와같이한-호주 FTA가적용되는정부조달에관하여대한민국과호주양국의조달기관은타방공급자를비차별적으로대우하여야하고, 타방의공급자를국내기업과동등하게대우하여야하며, 외국과의제휴또는외국인의소유등을이유로불리하게대우하지않아야한다(제12.3조). 그리고양국조달기관의대응구매는금지되고, 앞서와같은한-호주 FTA상비차별의무등을회피할목적으로조달을분할하는행위등은금지되나, 공개입찰, 선택입찰, 제한입찰등입찰의방식은조달기관이자유롭게선택할수있다.

[한-호주 FTA 및 WTO 정부조달협정개정전후한국의양허수준비교][102]

	한 · 호주 FTA	GPA(한국 양허) ※호주는 미가입 · 미개방	개정 GPA(한국 양허) ※호주는 미가입 · 미개방
상품 및 서비스 조달	① 중앙: 13만 SDR 이상 ② 지방: (한) 20만 SDR 이상 (호주) 35.5만 SDR 이상 ③ 공기업: 45만 SDR 이상 * 서비스 조달 제외	① 중앙: 13만 SDR 이상 ② 지방: 20만 SDR 이상 ③ 공기업: 40만 SDR 이상	① 중앙: 13만 SDR 이상 ② 지방: 20만 SDR 이상 ③ 공기업: 40만 SDR 이상
건설조달	① 중앙: 500만 SDR 이상 ② 지방 · 공기업: 1,500만 SDR 이상	① 중앙: 500만 SDR 이상 ② 지방 · 공기업: 1,500만 SDR 이상	① 중앙: 500만 SDR 이상 ② 지방 · 공기업: 1,500만 SDR 이상

한-호주 FTA는입찰절차및이의절차와관련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의관련내용을대부분도입하였다. 따라서조달기관이사전에공고하거나입찰설명서에명시한조건에만근거하여조달을진행하여야하고, 공급자의조달참가또는낙찰조건으로과거실적을요구하는것은금지되며, 다만파산, 허위신고, 중대한법위반행위, 과거계약상의무불이행등이있는경우에는조달참여를배제하는것이가능하다(제12.6조). 그리고양당사국은타방국가공급자의이의제기가있는경우에는이를해결하기위하여공정한행정·사법절차상시정조치를구할권리를보장하여야하고, 이의제기해결절차에대한정보도제공하여야하며(제12.15조), 양국은공정하고공평하게조달과정을진행

[102]관계부처합동한-호주 FTA 상세설명자료 96면.

하여야하고, 특정공급자에게유리한정보를제공하지않아야하며, 특히입찰공고및 서류에명시된기준에따라그에부합하는공급자를낙찰하여야한다(제12.12조).

한편, 한-호주 FTA는조달과정의무결성을보장하기위하여, 각당사국은자국조달공무원의부정행위에대해서형사및행정처벌을부과하도록제도를마련하여공정한 조달절차를확보할것을명시하고있다(제12.14조).

제2편 특정조달·특정물품조달에관한검토

제1장 특정조달계약

1. 특정조달계약에관한법령

제1편에서소개한바와같이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을체결하여정부조달시장을개방하였고, 이를포함하여정부가가입하거나체결한다자간또는양자간정부조달협정을이행하기위하여국제입찰을실시할필요가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한다)은국가가시행하는국내입찰및국제입찰에모두적용된다. 특히국가계약법제4조는국제입찰에따른정부조달계약의범위를규정하고, 그범위에서배제되는사항들과발주기관의판단에따라국제입찰로조달할수있는경우에관하여정하고있다.

국제입찰시 WTO 정부조달협정의내용을따르기위해국내입찰과다르게적용하여야할사항들이있는데, 국가계약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근거하여별도로대통령령으로규정한것이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특정조달특례규정**"이라고한다)이다.[103]

국가계약법제4조가규정한국제입찰의대상은 WTO 정부조달협정의적용을받는국제입찰과 WTO 정부조달협정의적용을받지않더라도발주기관의판단에따라예외적으로국제입찰로실시하는입찰(임의적국제입찰)을모두포함하고있으며, 특히 WTO 정부조달협정의적용을받는국제입찰을통해물품·공사및용역을조달하기위하여체결하는계약을 '특정조달계약'이라고규정하고있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2조제

[103]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의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가국제입찰에관한근거규정을두고있고,세부사항은특정조달특례규정제1조,제2조,제4조부터제25조까지및제39조부터제44조까지의규정등을준용하도록하고있다.

2호). 특정조달계약의경우특정조달특례규정을직접적용하도록하며, WTO 정부조달협정의적용을받지않는국제입찰의경우그성질에반하지않는범위에서특정조달특례규정을준용하도록하고있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3조제5항및제6항).

국가계약법시행령도국가계약법과마찬가지로국내입찰및국제입찰에공통적으로적용되고, 특정조달특례규정은국제입찰에만적용된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규정중제21조(제한경쟁입찰에의할계약과제한사항등), 제22조(공사의성질별·규모별제한에의한입찰), 제72조제3항(지역의무공동도급)의규정은국제입찰에는적용되지않도록되어있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39조).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이하 "**특정조달특례규칙**"이라고한다)은국제입찰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주요내용은①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을수있는경우, ②낙찰자등의결정공고사항, ③낙찰정보등의공개범위, ④지명경쟁유자격자명부작성의공고, ⑤디자인공모, ⑥계약의관한자료등의요구, ⑦계약실적보고, ⑧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자격및운영등이다.

2. 국제입찰에따른정부조달계약의범위

가. 특정조달계약의범위

특정조달계약의범위는정부기관이체결하는물품·공사및용역의계약으로서 WTO 정부조달협정과이에근거한국제규범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상의계약으로한다(국가계약법제4조제1항). 구체적인금액은아래와같다.[104]

[104]2018. 12. 19. 기획재정부고시제2018-27호로원/SDR 환율이 1,564.64원/SDR로변경됨에따라조정된금액이다. 이는 2019. 1. 1.부터 2년간유효하다.

개방대상금액	물품및용역	공사
WTO의정부조달협정상개방대상금액	2억원	78억원
칠레공화국과의자유무역협정상개방대상금액	8천만원	78억원
싱가포르공화국과의자유무역협정상개방대상금액	1억 6천만원	78억원
페루공화국과의자유무역협정상개방대상금액	1억 5천만원	78억원
미합중국과의자유무역협정상개방대상금액	1억원	78억원
호주와의자유무역협정상개방대상금액	2억원	78억원
캐나다와의자유무역협정상개방대상금액	1억원	78억원
뉴질랜드와의자유무역협정상개방대상금액	2억원	78억원
콜롬비아공화국과의자유무역협정상개방대상금액	1억 1천만원	78억원

다만,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국제입찰에의한정부조달계약의대상에서제외한다(국가계약법제4조제1항단서, 특정조달특례규정제3조제2항).

국가계약법제4조에의한경우

1. 재판매(再販賣)나판매를위한생산에필요한물품이나용역을조달하는경우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중소기업제품을제조·구매하는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및「축산법」에따른농·수·축산물을구매하는경우
4. 그밖에정부조달협정에규정된내용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한경우

국가계약법제4조제4호, 특정조달특례규정제3조제2항에의한경우

1. 무기·탄약또는전쟁물자의조달이나국가안보또는국방목적수행과관련된조달로서중대한안보상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2. 공공의질서및안정을유지하거나인간또는동식물의생명과건강및지적소유권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3. 자선단체·장애인및재소자가생산한물품과용역등을조달하는경우
4. 삭제
5. 삭제
6. 급식에필요한물품등을조달하는경우
7. 재판매또는판매에필요하거나재판매또는판매를위한공급에필요한물품이나용역을조달하는경우
8. 부동산을취득하거나임차하는경우
9. 비계약적합의또는지원을위하여조달하는경우
10. 다음각목의어느하나를위한용역을조달하는경우
    가. 재무대리또는예탁
    나. 금융기관의청산·관리
    다. 공적부채의판매, 상환및유통
11. 개발원조등국제원조를위하여조달하는경우
12. 합작프로젝트체결국의공동이행과관련된국제협약의절차또는조건에따라조달하는경우
1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그절차또는조건이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작성된정부조달협정(2012년 3월 30일에채택된정부조달에관한협정개정의정서를포함하며, 이하 **"마라케쉬정부조달협정"**이라한다)과불합치하는경우

    가. 국제기구의절차또는조건에따라조달하는경우
    나. 국제적공여또는차관등을재원으로조달하는경우

나. 임의적국제입찰의범위

국가계약법제4조제3항은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의목적과성질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같은조제1항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도특정조달특례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국제입찰에의하여조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특정조달특례규정제3조제5항은①부실공사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②국내생산이곤란하여국내입찰로는조달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③그밖에국제입찰에의하여조달하는것이해당계약의목적·성질상효율적이라고인정되는경우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이국가계약법제4조제3항에따라국제입찰에의하여조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특정조달특례규정제3조제5항의규정에의한국제입찰의경우에는그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특정조달특례규정을준용하고, 이경우 '특정조달계약'은 '제5항의규정에의한국제입찰'로본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3조제6항).

3. 추정가격및예정가격의결정

가. 추정가격

국제입찰에의하여조달해야하는지여부는앞서본바와같이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하여정하는금액을기준으로정해지는데, 이고시금액은추정가격을의미한다. 추정가격이란물품·공사·용역등의조달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국가계약법제4조의규정에의한국제입찰대상여부를판단하는기준등으로삼기위하여예정가격이결정되기전에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정된가격을말한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2조제1호).

추정가격은국제입찰대상여부를판단하는기준으로기능할뿐만아니라지역제한이나지역의무공동도급, 내역입찰, 현장설명, 적격심사낙찰제, 최저가낙찰제, 대형공사및수의계약대상여부등미리금액을기준으로판단하는분야에서대부분그기준으로서역할을하고있다. 추정가격에는관급자재가격과부가가치세가포함되어있지않다.그런데이는앞서본 ECC 부가가치세사건에서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경우가아니라면추정가액에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판단하여야한다는 GATT 패널리포트가있었다는점,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대한재화또는용역의공급이부가가치세가면제되거나영세율이적용되는것이아닌경우도없지않고,공공기관에대한재화또는용역의공급의경우에는더욱그러한경우가많다는점을고려할때, 엄격하게보면부가가치

세를포함여부에따라양허대상조달에포함되는지여부가달라지게되는경우에있어서는협정위반에대한논란의소지가발생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예산에계상된금액등을기준으로하여추정가격을산정하되, 다음각호의 1의기준에따른금액으로한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

1. 공사계약의경우에는관급자재로공급될부분의가격을제외한금액

2. 단가계약의경우에는당해물품의추정단가에조달예정수량을곱한금액

3. 개별적인조달요구가복수로이루어지거나분할되어이루어지는계약의경우에는 다음각목의 1중에서선택한금액

   가. 당해계약의직전회계연도또는직전 12월동안체결된유사한계약의총액을 대상으로직후 12월동안의수량및금액의예상변동분을감안하여조정한금액
   나. 동일회계연도또는직후 12월동안에계약할금액의총액

4. 물품또는용역의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및총계약금액이확정되지아니한계약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 1에의한금액

   가. 계약기간이정하여진계약의경우에는총계약기간에대하여추정한금액
   나. 계약기간이정하여지지아니하거나불분명한계약의경우에는 1월분의추정 지급액에 48을곱한금액

5. 조달하고자하는대상에선택사항이있는경우에는이를포함하여최대한조달가능한금액

나. 예정가격

1) 의의

예정가격이란입찰또는계약체결전에낙찰자및계약금액의결정기준으로삼기위하여미리작성·비치하여두는가액으로서국가계약법시행령제8조의규정에의하여작성된가격을말한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2조제2호). 예정가격에는부가가치세는포함되어있으나관급자재가격은포함되어있지않다(예정가격에관급자재가격까지포함된경우예정금액이라고한다).

2) 예정가격의비치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경쟁입찰또는수의계약등에부칠사항에대하여당해규격서및설계서등에의하여예정가격을결정하고, 이를밀봉하여미리개찰장소또는가격협상장소등에두어야하며예정가격이누설되지않도록해야한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2 제1항).

3) 예정가격작성의예외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추정가격이 2,000만원을초과하는수의계약으로서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견적서를제출하는경우제외) 및바목에따른수의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제43조에의한협상에의한계약및국가계약법시행령제70조에의한개산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을수있다. 또한정부가제시하는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및지침에따라입찰시에그공사의설계서기타시공에필요한도면및서류를작성하여입찰서와함께제출하는설계시공일괄입찰및발주기관이작성하여교부한기본설계서와입찰안내서에따라입찰자가기술제안서를작성하여입찰서와함께제출하는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는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을수있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2 제2항).

물품및용역에대한특정조달계약에있어서거래실례가격이없어예정가격을작성하기곤란한경우를포함하여아래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을수있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6조)

○ **용역과기계·기재류, 철재류, 식료품류, 동물류, 화공품류(비료는제외한다), 약품류, 종이및판지류, 유제품류및목재류등의물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특정조달특례규칙제2조)**

1. 지역또는시기에따라가격차가심한경우
2. 특정제작자만이제작할수있는경우
3. 국제시세가없는경우
4. 제작자의설계에따라서가격차가심한경우
5. 공급자가제시한규격에따라물품을구매하는경우
6. 긴급히구매할필요가있어예정가격을작성할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

4) 예정가격의결정방법

예정가격은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사항의가격총액에대하여결정하여야한다. 다만, 일정한기간계속하여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등을하는경우에는 단가에대한예정가격을결정할수있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8조제1항).

(i) 공사계약에있어서그이행에수년이걸리며설계서등에의하여전체의사업내용이확정된공사및(ii) 물품의제조등의계약에있어서그이행에수년이걸리며설계서 또는규격서등에의하여당해계약목적물의내용이확정된물품의제조등의경우에는총공사·총제조등에대하여예산상의총공사금액(관급자재금액은제외한다) 또는총제조금액(관급자재금액은제외한다) 등의범위안에서예정가격을결정하여야한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8조제2항).

5) 예정가격의변경

예정가격은원칙적으로변경될수없으나, 국가계약법제20조에의한재공고입찰에서도입찰자또는낙찰자가없는경우로서당초의예정가격으로는수의계약을체결할

수없는때에는당초의예정가격을변경하여새로운절차에의한경쟁입찰에부칠수있다(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3조).

6) 예정가격의결정기준

예정가격결정의세부적인기준에관하여는「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380호)에서정하고있다.

4. 계약의원칙

가. 신의성실의원칙

국가계약법이적용되는계약은양당사자가사경제의주체로서상대방과서로대응한위치에서체결하는사법상의계약으로서그본질적인내용은사인간의계약과다를바가없다. 따라서국가계약법이적용되는계약에는국가계약법및기타관련법령에특별한정함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적자치와계약자유의원칙등사법의원리가그대로적용된다.

민법제2조제1항은 "권리의행사와의무의이행은신의에좇아성실이이행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는바, 국가계약법제5조제1항도민법제2조제1항에따른신의성실의원칙이국가계약법이적용되는계약의당사자들에게도동일하게적용된다는점을명시하고있으며, 국제입찰에따른정부조달계약에서도그대로적용된다.

나. 차별금지원칙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에따른국제입찰의경우에호혜의원칙에따라정부조달협정가입국의국민과이들국가에서생산되는물품또는용역에대하여대한민국의국민과

대한민국에서생산되는물품또는용역과차별되는특약이나조건을정하여서는안된다(국가계약법제5조제2항).

다. 특정조달계약의원칙

특정조달특례규정제4조는앞서본차별금지원칙에관하여보다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특정조달특례규정제4조제1항은계약상대자를공정하게선정하여야하며정부조달과관련된정보를차별적으로제공하지않을것을규정하고있으며, 같은조제2항은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이특정조달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준수해야할사항에관하여아래와같이정하고있다.

1. 협정의적용을회피할목적으로추정가격의산정방법을선택하거나분할발주를하지아니할것
2. 협정가입국의계약상대자로부터조달되는물품·공사및용역에대하여통상적인무역과정에서적용되는「대외무역법」및「관세법」의규정과다른원산지규정을적용하지아니할것
3. 입찰참가자격의심사과정이나입찰서의평가및낙찰자결정과정등에서부품등의국산화율지정, 기술이전및대응구매등의수단을통하여협정가입국입찰참가자의입찰참가또는조달조건등을제한하는조치를취하지아니할것
4. 입찰서를접수, 개봉및취급하는과정에서그비밀이보장되도록할것

5. 특정조달계약의계약방법

가. 개요

국내의정부조달계약에서입찰방식은크게일반경쟁입찰및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으로분류되고있는반면, 국제입찰에서는WTO 정부조달협정문에서입찰방식으로규정한일반경쟁입찰(Open Tendering), 지명경쟁입찰(Selective Tendering), 수의계약(Limited Tendering)만인정하고있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7조).

결국국내입찰과국제입찰간의입찰방식의차이는제한경쟁입찰이국내입찰에서만인정된다는것인데, 실제로국제입찰에서일반경쟁입찰은아무런자격요건을두지않는것이아니라해당입찰에서정한일정한계약이행능력을갖춘경우에입찰에참가할수있도록한다는점에서[105] 국내입찰에서의제한경쟁입찰은국제입찰에서일반경쟁입찰의개념에포함되는것으로해석된다.

나. 일반경쟁입찰

1) 의의

특정조달특례규정은국내입찰과마찬가지로 '일반경쟁입찰'이라는용어를사용하면서일반경쟁입찰을 '특정조달계약에있어서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모든자격자가입찰서를제출할수있는입찰'이라고정의하고있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2조제4호).

앞서서술한바와같이국제입찰에서일반경쟁입찰은해당입찰에서요구하는일정한자격요건을갖춘참가자만입찰에참가하도록정할수있다는점에서국내입찰에서의제한경쟁입찰과유사하다.

2) 입찰참가자의자격

특정조달특례규정제9조제1항은일반경쟁입찰참가자의자격에관하여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및제3호를포함하여계약의종류, 규모등에따라해당계약과같은종류의계약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능력및경영상태등필요한사항을갖추고있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105] 특정조달특례규정제9조는국제입찰에서일반경쟁입찰의참가자격을실적, 시공능력,기술능력및경영상태등필요한사항으로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자격요건은해당계약의적정한이행을위해서공정성등을저해하지않는한도에서부적합한자가입찰에참가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최소한의요건만을규정한것이다. 특정조달특례규정제9조제1항본문에언급된사항은국내입찰에서제한경쟁입찰의자격요건에해당하는내용이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및제3호(특정조달특례규정제9조제1항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4호사유는제외하고있다)

- ○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요하거나자격요건을갖추어야할경우에는당해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받았거나당해자격요건에적합할것
- ○ 보안측정등의조사가필요한경우에는관계기관으로부터적합판정을받을것

다만, 입찰참가자격을제한함에있어서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이계약의적절한이행을위하여필수적이라고인정하는경우외에는국내수주실적을입찰참가자격으로정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9조제1항단서).

공사계약의경우협정당사국인외국의업체도국내법에따른공사업등록이되어있어야입찰참가가가능하다. 예를들어, 건설공사의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건설업등록을, 전기공사의경우는 「전기공사업법」 에따른전기공사업등록을받아야한다.

3) 입찰참가자격심사및통지

일반경쟁입찰에참가하려는자의신청이있는경우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입찰공고및입찰에관한서류에명시한사항에따라입찰자격의유무를심사하여그결과를신청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9조제2항). 다만, 이미유자격자명부에등록된자에관하여는별도의입찰참가자격심사를하지않을수있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9조제3항).

4) 유자격자명부의작성및공고

유자격자명부란특정조달계약에있어서물품공사및용역의입찰에참가할수있는 자격을미리정한후그자격을갖춘자를기재한명부를말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2조 제7호). 특정조달을위한일반경쟁입찰또는지명경쟁입찰시입찰참가자격을당해계 약과같은종류의계약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등으로제한또는지명하는경우에, 그 입찰참가자격및지명기준을사전공고하여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의신청을받아계 약방법별및물품별로유자격자명부를작성·비치하여그유효기간동안해당물품의입찰 시입찰참가자격심사에갈음하거나입찰자지명시활용할수있다.

구체적으로유자격자명부를작성하기위하여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 원은일반경쟁입찰의입찰참가자격기준을매회계연도초에 「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 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의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전자조달시스템**"이 라고한다)에공고하고수시로일반경쟁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의신청을받아입찰참 가자격을심사할수있으며, 그결과에따라유자격자명부를작성·비치하여입찰에참가 하고자하는자가이를열람하게할수있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10조제1항).

입찰공고후입찰참가자격유무의심사결과를신청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유자 격자명부의유효기간이만료되거나유자격자명부상기재된자가같은명부에서제외되 게되는경우에는그내용을해당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10조제2 항).

다. 지명경쟁입찰

1) 의의

지명경쟁입찰이란특정조달계약에있어서발주기관이지명한자가입찰서를제출 할수있는입찰을말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2조제5호).

정부조달협정문에서는 'Selective Tendering'이라고표기하며, 자격있는공급자만조달기관에의해입찰서를제출할수있도록권유받는방법이라는점에서국내입찰의지명경쟁입찰과동일한개념으로보고있다.

지명경쟁입찰의경우에일반경쟁입찰에관하여적용되는규정(특정조달특례규정제9조내지제17조)을준용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22조). 아래에서는지명경쟁입찰에관하여특정조달특례규정에서특별히규정된내용을중심으로서술한다.

2) 입찰참가자지명및통지

특정조달계약을지명경쟁입찰에부칠경우에는계약의종류및규모등에따라해당계약과같은종류의계약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능력및경영상태등필요한사항을고려하여지명경쟁입찰에참가하는자에게필요한자격및지명기준을정하여야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18조).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위자격을갖춘자로서지명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되는자를지명함과동시에그지명한자에대하여앞서본입찰공고와관련된사항을통지하여야하고, 그통지는지명경쟁입찰의공고일에하여야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19조).

3) 지명경쟁입찰공고

지방경쟁입찰의공고에관하여원칙적으로일반경쟁입찰의공고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20조제1항). 다만, 유자격자명부를사용하지않는지명경쟁입찰의경우에는지명경쟁입찰참가신청서의제출기한을공고일전일부터기산하여 25일이상이되도록지정하여야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20조제2항).

4) 지명경쟁입찰참가자격심사등

지명경쟁입찰의참가자격심사신청이있는경우지체없이입찰참가자격에대한심사를개시하여야하며,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심사가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때에는사전에그취지를당해신청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21조제1항). 필요한경우참가자격심사신청에대한심사기간을정하여입찰공고시이를포함시킬수있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21조제2항).

5) 유자격자명부의작성및공고

지명경쟁입찰을위한유자격자명부를작성하는경우에는지명경쟁입찰참가자격등에관하여아래의사항을매년관보에공고하여야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21조제3항, 특정조달특례규칙제5조).

1. 유자격자명부에등록된업체일람표(유자격자명부를통하여조달하는물품이나서비스또는물품이나서비스군의품목분류번호를포함한다)
2. 유자격자명부의등록요건및심사방법
3. 유자격자명부의유효기간및등록경신절차
4. 그밖에유자격자명부의등록에관한사항

지명경쟁입찰을위한유자격자명부를작성하는경우에일반경쟁입찰의유자격자명부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21조제4항).

라. 수의계약

1) 의의

수의계약은특정조달계약에있어서발주기관이경쟁입찰에의하지아니하고계약상대자를결정하는계약을말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2조제6호). 정부조달협정문의 'Limited Tendering'은공고를통한경쟁없이발주기관이특정업체와수의시담등에

의하여계약상대자를선정하여계약을체결한다는점에서국내입찰의수의계약과동일한개념으로보고있다.

2) 수의계약의대상

특정조달특례규정제23조는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는경우로아래사항들을열거하여규정하고있다.

- 경쟁입찰에부쳤으나응찰자가없는경우또는담합된입찰서가제출되었거나,입찰공고등에서요구한조건에부합되는입찰서가없는경우
- 적절한대용품이나대체품이없는예술권특허권또는출판권등독점적권리와관련된거나,기술적이유로특정공급자로부터조달할수있는경우
- 긴급한사유로인하여경쟁입찰에의하여서는필요한기간내에조달할수없는경우
- 이미조달된물품등의부품교환또는설비확충등을위하여조달하는경우또는이미계약을체결한공사에대하여추가공사가필요하게된경우(공급자를변경하게되면호환성이없게되는등기술적또는경제적으로곤란하고, 동시에발주기관에중대한불편을초래하는경우로한정한다)
- 발주기관의요구로개발된시제품등을조달하는경우(당해계약의이행이완료된후당해제품을계속하여조달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원자재시장(상품거래소등)에서물품을구매하는경우
- 파산및법정관리기업의자산처분등의사유로인하여현저하게유리한조건으로조달하는경우
- 기획재정부령이정한내용에[106]따른디자인공모에당선된자와계약을체결하는경우

[106] **특정조달특례규칙제6조(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와관련된디자인공모)**특정조달특례규정제23조제10호에서"기획재정부령이정한내용에따른디자인공모"란해당공모에당선된자와계약을체결할목적으로발주기관과별도의독립적인심사단이심사하고모든유자격자가참

3) 수의계약의체결절차

수의계약을체결하고자할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견적서를받아야하고(국가계약법시행령제30조제1항), 당해규격서및설계서등에의하여예정가격을결정하고이를밀봉하여미리가격협상장소에두어야하며예정가격이누설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2 제1항).

마. 전자경매

전자경매란특정조달계약에서있어서전자적수단으로입찰참가자의순위를정하는방식을말한다. 정부조달협정이개정되면서특정조달특례규정에전자경매에관한규정이새로신설되었다.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전자경매방식으로낙찰자를결정할때전자경매개시전에평가기준및그에따른평가방법과그밖에해당전자경매의수행에관한정보를각입찰참가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23조의2).

6. 특정조달계약의절차

가. 조달계획공고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회계연도별로특정조달계약으로조달할물품및용역에대하여조달계획을전자조달시스템에공고할수있고, 조달계획공고에는계약의목적물, 입찰서및입찰참가신청서제출마감일, 발주기관(입찰에관한서류를교부하는기관)의명칭및주소와입찰공고예정일이포함되어야하며, 아래특정조달특례규정제12조각호의사항은가능한포함되도록하여야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13조).

여할수있도록관보나국가계약법시행령제22조제1항에따른전자조달시스템에공고한것을말한다.

1. 당해조달과관련하여추가될조달의조건에관한사항및반복계약의경우에있어서 후속입찰에대하여는그입찰공고의예정시기
2. 일반경쟁입찰또는지명경쟁입찰의방법과협상절차의포함여부
3. 구매·임차및할부구매등발주기관이사용할조달형태
4.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입찰참가신청서및입찰서의제출등을위한주소와제출마감일및사용언어
5. 협정의적용대상여부

나. 입찰공고

1) 입찰공고의방법

국가계약법상입찰공고는원칙적으로전자조달시스템를이용하여공고하여야하며, 예외적으로필요한경우일간신문등에게재하는방법을병행할수있는데(국가계약법시행령제33조), 국제입찰의경우일반경쟁입찰은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공고하도록하고있고(특정조달특례규정제11조제1항), 다른방법을병행할수있는규정을별도로두고있지않다.

2) 입찰공고의시기

국제입찰은입찰서제출마감일전날부터기산하여 40일이전에입찰공고를하여야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11조제2항).

다만, 다음과같은경우에는예외적으로입찰공고기간을단축또는연장할수있다.

○ **아래사항에해당되는경우로서계약목적물을적기에조달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 입찰서제출마감일전날부터기산하여 10일이전(특정조달특례규정제11조제3항)**

- 긴급을요하는경우

- 최근 12개월이내에 40일이상조달계획공고를한경우
- 개별적인조달요구가복수로이루어지거나분할되어이루어지는계약에서최초공고이후에공고를하는경우
- 유자격자명부를사용하는경우로서발주기관과유자격자명부에등록된자사이에상호합의가이루어진경우

○ **아래사항에해당되는경우: 각각 5일씩공고기간을단축(특정조달특례규정제11조제4항)**

- 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입찰공고를하는경우
- 제15조(입찰에관한서류의교부)에따른입찰에관한서류를전자조달시스템에게재하는경우
- 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입찰서를접수하는경우

입찰공고기간의단축및연장사유가동시에발생하더라도입찰공고기간은 10일미만으로단축할수없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11조제5항).

지명경쟁입찰의공고의경우에도일반경쟁입찰의입찰공고에관한특정조달특례규정제11조및제12조를준용하되, 유자격자명부를사용하지않는지명경쟁입찰의경우에는특정조달특례규정제20조에따라예외적으로 25일이상의입찰공고기간을두도록한다는점은앞서서술한바와같다.

3) 입찰공고의내용

가) 국내입찰및국제입찰의공통사항

입찰공고에는다음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36조).

1. 입찰에부치는사항
2. 입찰또는개찰의장소와일시
3. 공사입찰의경우에는현장설명의장소·일시·참가자격및참가의무여부에관한사항

3의2. 제43조에따른협상에의한계약체결의경우로서제안요청서에대한설명을실시하는경우에는그장소·일시및참가의무여부에관한사항

4. 입찰참가자의자격에관한사항

4의2. 입찰참가등록및입찰관련서류에관한사항

5. 입찰보증금과국고귀속에관한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또는제4항에따라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에는낙찰자결정에필요한서류의제출일및낙찰자통보예정일을포함한다)

7. 계약의착수일및완료일

8. 계약하고자하는조건을공시하는장소

9. 제39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입찰무효에관한사항

10. 입찰에관한서류의열람·교부장소및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입수할수있는기관의주소등

12. 제39조제1항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또는각중앙관서의장이지정·고시한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입찰서를제출하게하는경우에는그절차및방법

12의2. 제39조제2항에따라입찰서를우편으로제출하게하는경우에는그취지와입찰서를송부할주소

13. 제72조의규정에의한공동계약을허용하는경우에는공동계약이가능하다는뜻(제72조제3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한공동계약인경우에는공동수급체구성원의자격제한사항을포함한다)과공동계약의이행방식

14. 제19조의규정에의한부대입찰의경우에는그취지

15. 제78조의규정에의한입찰의경우에는대안입찰또는일괄입찰등에관한사항

15의2. 입찰관련비리또는불공정행위의신고에관한사항

16. 기타입찰에관하여필요한사항

나) 국제입찰에적용되는사항

국제입찰에서는앞의공통사항외에다음의사항을입찰공고내용에포함시켜야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12조).

1. 당해조달과관련하여추가될조달의조건에관한사항및반복계약의경우에있어서 후속입찰에대하여는그입찰공고의예정시기
2. 일반경쟁입찰또는지명경쟁입찰의방법과협상절차의포함여부
3. 구매·임차및할부구매등발주기관이사용할조달형태
4.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입찰참가신청서및입찰서의제출등을위한주소와제출마감일및사용언어
5. 협정의적용대상여부

국제입찰에서사용하는언어는한국어를원칙으로하며, 조달대상의물품등의공급자가특정지역에한정되어있는등외국어의사용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그특정국가의언어또는영어, 불어및스페인어중하나를사용할수있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8조제1항).

입찰공고시①계약의목적물, ②입찰서및입찰참가신청서제출마감, ③발주기관(조달청)의명칭및주소가포함된요약공고문을영어, 불어및스페인어중하나의언어로작성하여입찰공고문과함께공고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8조제2항).

즉요약공고문을제외한입찰공고문, 입찰설명서, 규격서(시방서) 및계약문서 등은불가피한사유가없는한한국어를사용하고, 요약공고문에외국어로기재한사항이한국어로기재한사항과상이할때에는한국어로기재한사항이우선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8조제4항).

특정조달계약의입찰서작성에있어서다수의언어를사용할수있도록하는경우에는영어·불어및스페인어중하나이상의언어를포함시켜야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8조제3항).

4) 정정공고및재공고

입찰공고를한후그내용에대하여정정공고를하는경우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20조제2항에따라재공고를하는경우에는각각국가계약법시행령제33조제2항, 제35조제4항및제5항을적용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11조제6항).

이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입찰공고중내용의오류나법령위반사항이발견되어공고사항의정정이필요한경우에는남은공고기간에 5일이상을더하여야공고하여야하고(국가계약법시행령제33조제2항), 재공고를하는경우입찰서제출마감일의전날부터기산하여 5일전까지공고할수있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35조제4항). 다만, 협상에의한계약의경우에는제안서제출마감일의전날부터기산하여 40일전에공고하여야하고, 다음과같은경우는제안서제출마감일의전날부터기산하여 10일전까지공고할수있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35조제5항).

1. 재공고입찰의경우
2. 다른국가사업과연계되어일정조정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
3. 긴급한행사또는긴급한재해예방복구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
4. 그밖에위 2, 3호에준하는경우
5. 추정가격이고시금액미만인경우

다. 입찰에관한서류의교부

특정조달계약에있어서일반경쟁입찰에의하는경우해당입찰에참가하려는자가요청하는때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14조제1항또는제16조제1항에따른입찰에관한서류를교부하여야하며, 이에대한설명을요청받은때에는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한다(특정조달특례규칙제15조).

국가계약법시행령제14조제1항및제16조제1항에따른입찰에관한서류는다음과같다.

○ **공사의입찰(국가계약법시행령제14조제1항)**

1. 설계서
2.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
3. 제1호및제2호의서류외에입찰에관한서류로서국가계약법시행규칙으로정하는서류(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1조제1항)
   - 입찰공고문또는입찰참가통지서
   - 입찰유의서
   -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및계약서서식
   - 계약일반조건및계약특수조건
   - 적격심사낙찰제및최저가낙찰제에의할경우낙찰자결정과관련한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포함한다)
   - 일괄입찰, 대안입찰및기술제안입찰의경우입찰안내서
   - 기타참고사항을기재한서류

○ **물품의제조·구매및용역등의입찰(국가계약법시행령제16조제1항)**

1.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1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서류
   - 입찰공고문또는입찰참가통지서
   - 입찰유의서
   -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및계약서서식
   - 계약일반조건및계약특수조건
2. 협상에의한계약의경우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포함한다)
3. 용역계약의경우과업지시서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서류외에참고사항을적은서류

라. 기술규격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품질및성능등에관한기술규격을성능위주로작성하여야하며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국제표준이있는경우에는국제표준에의하고, 국제표준이없는경우에는국내관련법령의규정또는국내표준에의하여작

성하거나품질또는성능시험등을통하여작성할수있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14조제1항및제2항).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특정한상표·규격등을제시하지아니하고는조달하고자하는물품또는용역에대한충분한설명이곤란한경우로서입찰에관한서류에상표·규격등을특정하는때에는그특정된상표·규격등과동등이상인물품이나용역에대하여입찰에부친다는뜻을기재하여야하고, 입찰참가자는공급하고자하는물품또는용역의규격·품질등이특정된조건과동등이상인것임을입증하여야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14조제4항및제5항). 여기서 '동등이상인물품이나용역'이라는문구가포함되는이유는기술규격으로자국의특정제품을유추할수있도록하는관행을억제하기위함이다.

그밖에도기술규격을작성하면서경쟁이제한될우려가있는방법으로사용될수있는상업적이해관계가있는자에게조언을요구하거나받아들이는것은허용되지않으며, 공정한경쟁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기술규격을입찰전에공개·열람하도록하여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가이에대한의견을제시하게할수있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14조제6항및제7항).

또한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입찰에참가하려는자와상호협의하여천연자원의보존을증진시키거나환경을보호하기위한목적의기술규격을작성할수있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14조제3항).

마. 입찰서의제출및접수

1) 입찰서의제출

입찰자는원칙적으로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입찰서를제출하여야하고, 예외적으로각중앙관서의장이지정·고시한정보처리장치(미리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한경우)를이용하여입찰서를제출할수있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39조제1항).

경쟁입찰에부치는경우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입찰참가신청인으로하여금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자격을증명하는서류, 기타입찰공고또는지명통지에서요구한서류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0조).

2) 전신·전보및모사전송등의접수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필요한경우입찰서및이에관련된서류를전신·전보및모사전송등에의하여제출하도록할수있는데, 이경우입찰참가자로하여금즉시서명본을제출하게하여확인하여야한다. 제출된전신등의내용이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에제출된서명본과차이가있는경우먼저제출된전신등의내용이우선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16조제2항및제3항).

3) 우편입찰서의접수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이특정조달계약에있어서입찰서를우편으로제출하는것을금지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16조제1항).

우편으로입찰서를접수한때에는당해입찰서의봉투면에접수일시를기재하고확인인을날인하여개찰시까지개봉하지않고보관하여야하며, 입찰서가발주기관의귀책사유로인하여입찰에관한서류에명시된일시이후에지정된부서에접수되었을경우에는당해입찰자에게불이익을주어서는안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16조제4항).

바. 낙찰자등의결정, 공고및정보의공개

정부조달협정은제15조제5항에서낙찰자의결정에관하여 '계약조건을충족시킬수있는입찰자로서오로지공고및입찰서류에명시된평가기준에만근거하여①가장유리한입찰서를제출한자또는②가격이유일한기준인경우가장낮은가격을제출한자를낙찰자로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위기준에의하면정부조달협정에따른낙찰자결정기준은가격보다도비가격적인요소(최고가치)에비중을두고있음을알수있다.

개정전정부조달협정에서는낙찰자의결정기준으로최저가를제시하거나입찰공고및입찰서류에명시한평가기준에따라가장유리하다고판단되는입찰자를낙찰자로규정했던것과비교하면개정정부조달협정은가격보다는평가기준에따른종합적인요소를중시하고있음을알수있다.

정부조달계약에서최고가치에관하여명확하게정리된개념은없으나, 대체로가격과비가격요소를종합적으로평가하여발주기관의이익을극대화하거나비용을최소화하여투자효율성을창출하는가치또는경제적으로가장유리한입찰제시를의미하는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경쟁입찰의낙찰자를결정하였거나수의계약대상자를결정한때에는그결정일의다음날부터 72일이내에아래의사항을전자조달시스템에공고하여야하고,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이입찰참가자등으로부터당해입찰과관련된정보제공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107]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17조제1항및제2항).

1. 발주기관의조달관행및조달절차
2.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이거부된사유, 입찰참가자격이정지된사유와입찰참가자격이있는자로선정되지아니한사유
3. 낙찰되지아니한사유, 낙찰자(법인인경우에는대표자)의이름과낙찰된입찰서의특징및장점

사. 계약의체결등

[107] 해당정보의공개로법집행이방해되거나공공의이익이침해될우려가있는경우또는해당정보의공개로특정기업의정당한상업적이익이침해되거나그밖에공정한경쟁을방해할우려가있는경우(특정조달특례규칙제4조제2항)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를결정한때에는지체없이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9조제1항별지서식의표준계약서에의하여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9조제1항).

계약서에는①계약의목적, ②계약금액, ③이행기간, ④계약보증금, ⑤위험부담, ⑥지체상금, ⑦그밖에필요한사항이명백하게기재되어있어야한다(국가계약법제11조제1항).

계약서에는담당공무원이기명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인과계약을체결하는경우기타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서명으로써이에갈음할수있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48조제2항).

국외공사계약의경우원칙적으로현지통화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다만, 현지통화로계약하기곤란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와협의하여원화또는미화로계약할수있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48조의2 제1항).

아. 이의신청처리및조정을위한재심청구

1) 이의신청의처리

국제입찰에따른정부조달계약과정에서아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불이익을받은자는그행위의취소또는시정을위하여중앙관서의장에게소정의기한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국가계약법제28조제1항).

1.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의국제입찰에따른정부조달계약의범위와관련된사항
2. 국가계약법제7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과관련된사항
3. 국가계약법제8조에따른입찰공고등과관련된사항
4. 국가계약법제10조제2항에따른낙찰자결정과관련된사항
5. 그밖에정부조달협정에위배된사항

이의신청은이의신청의원인이되는행위가있었던날부터 15일이내또는그행위가있음을안날부터 10일이내에해당중앙관서의장에게하여야하고, 해당중앙관서의장은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심사하여시정등필요한조치를하고그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국가계약법제28조제2항및제3항).

2) 조정을위한재심청구

이의신청결과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위한재심을청구할수있다(국가계약법제28조제4항).

자. 기타

1) 계약에관한기록의보존

가) 일반경쟁입찰또는지명경쟁입찰의경우

경쟁입찰의경우입찰및계약관련서류와①입찰자및개찰에참여한자의성명, ②낙찰자의성명, 낙찰금액및낙찰자결정의이유, ③무효로된입찰이있는경우에는당해입찰의내용및무효로된이유, ④입찰참가자격심사결과를통지한경우그통지에관한사항, ⑤물품원산지의국가명, ⑥기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항[108]을기록한문서를 5년간보존하여야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24조제1항).

[108] 현행특정조달특례규칙에는이와관련하여위임된사항이규정되어있지않다.수의계약에관한특정조달특례규정제24조제2항제7호도이와같다.

나) 수의계약의경우

수의계약의경우계약관련서류와①계약의목적, ②물품의품명·규격·수량·단가·금액등, ③적용되는법령조문및구체적인적용사유, ④계약상대자의성명(상호) 및 주소, ⑤계약금액및계약상대자결정의이유, ⑥물품원산지의국가명, ⑦기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항을기록한문서를 5년간보존하여야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24조제2항).

2) 계약실적보고

각중앙관서의장은아래내용의계약실적보고서를작성하여해당연도종료후 60일이내에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25조제1항, 특정조달특례규칙제8조제1항).

1. 특정조달계약의대상이되는물품·공사및용역의계약건수와계약총액
2. 특정조달계약을체결한물품·공사및용역에대하여국제적으로인정된통일적인분류체계에따라세분화한계약건수와계약총액
3. 특정조달특례규정제23조에따라수의계약을체결한물품·공사및용역의계약건수및계약총액

정부조달협정의적용을받는공공기관에대한계약실적보고서(「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4조제1항에따라국제입찰의방법으로계약을체결한물품·공사및용역의계약건수와계약총액을그내용으로한다)는그주무부장관이제출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25조제2항, 특정조달특례규칙제8조제2항).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383호) 제80조내지제82조는[109] 특정조달특례규정제25조에의한계약실적보고서의작성기준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3) 계약에관한자료등의요구

기획재정부장관은정부조달협정가입국으로부터특정조달계약에대한자료를요구받은경우에는해당중앙관서의장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관련자료

---

[109] **제80조(계약담당공무원의계약실적보고서작성)**계약담당공무원은특례규정제25조및「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한다) 제8조제1항에의한계약실적보고서를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회계연도별로작성하여이를해당연도종료후 30일이내에소속중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계약실적보고서는별첨 3 내지 6서식에의하여회계별(또는기금별)로구분하여작성하여야한다.

2. 공사를조달청장에게위탁하여대행계약을체결하게한경우에그위탁관서는제1호의계약실적보고서에이를합산하여작성하여야한다.

제81조(각중앙관서의장의계약실적보고)각중앙관서의장은특례규칙제8조제1항에의한계약실적보고서를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작성하여이를해당연도종료후 60일이내에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각중앙관서의장은해당관서소관의회계별계약실적보고서를집계하여별표각호서식의계약실적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위임하여계약을집행하게한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제1항에의하여계약실적보고서를제출받아제1호의계약실적보고서에합산하여야한다.

3. 공기업·준정부기관등에대한계약실적보고서는그주무부장관이제1호에준하여작성하여야한다.

제82조(조달청장의계약실적보고)조달청장은정부수요물자와비축물자의구매계약, 용역및공사대행계약을체결한때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하여별표각호서식에계약실적보고서를소관별·회계별(또는기금별)로작성하여제81조에의하여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비축물자와정부수요물자중저장품의구매실적은이를별지로작성하여계약실적보고서에첨부하여야한다.

2. 국가기관외의기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등)으로부터의뢰를받아공사·물품및용역의조달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이를구분하여별지로작성한후계약실적보고서에첨부하여야한다.

의제출을요구받은각중앙관서의장은지체없이이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특정조달특례규칙제7조).

4) 개발도상국에대한우대조치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개발도상국의공급자로부터조달되는물품공사및용역에대하여정부조달협정의내용에따라우대조치를할수있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5조).

이는정부조달협정제5조(Developing Countries)의규정을반영한것으로개발도상국과최빈개발도상국의정부조달협정의가입을촉진하기위하여이들국가들에게일정기간동안내국민대우의무등의적용을배제하는등의과도기적조치를취하는것을허용하는것이다.

7. FTA와관련한특례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이란둘이상의국가가 10년내에거의모든상품무역, 서비스무역등의분야에관세철폐및기타무역제한적인규제를철폐하기로합의하는국제조약으로서상품무역, 서비스무역및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등포괄적인분야에걸쳐시장통합과경제통합을목적으로하는지역무역협정의한형태이다.

특정조달특례규정에서는칠레공화국정부, 유럽연합및그회원국, 페루공화국, 미합중국, 콜롬비아공화국, 호주정부와체결된각FTA의내용에따른특정조달에서의예외사항을규정하고있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41조내지제46조).

8. 국제상관례

특정조달특례규정에특별히규정되어있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국가계약법시행령의규정이적용되나, 사안에따라서는이러한원칙에의할경우조달이불가능하거나현저하게비효율적으로운영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이에특정조달특례규정은통화, 보증금납부의형태및시기, 신용장등에대한대가지급방법및검사등조달절차수행과관련하여불가피한경우국제상관례에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40조제1항).

특히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에관하여국가계약법시행령제64조제1항은물가변동이발생한경우계약금액을조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있으나, 물품및용역에[110] 관한특정조달계약의경우해당공급국의물가상승률, 환율문제등으로국내의조정방법을그대로적용하기곤란한경우가많다.

이에특정조달특례규정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64조제1항에도불구하고물품및용역의특정조달계약에있어서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에관하여국제상관례를따르지않는경우조달절차수행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때에는정부조달협정및특정조달특례규정이정한내용의취지나그성질에반하지않는범위안에서국제상관례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40조제2항).

국외공사계약의경우원칙적으로현지통화로계약을체결하여야하고, 예외적으로현지통화로계약하기곤란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와협의하여원화또는미화로계약할수있으며, 환율또는국제상관례등을고려하여계약금액조정관련특례를설정할수있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48조의2).

제2장 특정물품조달계약

[110] 공사계약의경우국내에공사현장을두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물가연동제적용이용이하다.

1. 특정물품조달계약의등장배경

이미살펴본바와같이 WTO의출범과함께우리나라가WTO 정부조달협정의당사국이되면서국가계약법의하위법령으로서국가계약법시행령과별도로또하나의대통령령인특정조달특례규정과그하위규정인특정조달특례규칙이제정·시행되고있음은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다.그런데우리나라는같은국가계약법의하위법령으로서또다른대통령령인「특정물품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특정물품특례규정**"이라고한다)과그하위법령인「특정물품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이하 "**특정물품특례규칙**"이라고한다)을시행하고있다.

연혁적으로보면,특정물품조달계약을규율하는특정물품특례규정이먼저등장하였다.제1편의제2장에서도간략히살펴본바와같이미국은우리나라의경상수지흑자가급증하기시작한1988년이후에는1970년대후반부터일본에대하여그러하였던것처럼우리나라에대하여도양자협상을통해매우강력한개방압력을가하였는데,미국이가장관심을가졌던분야중의하나가TDX 전자교환기등을주축으로하는통신장비의정부조달시장개방이었다.한미양국정부는나름대로치열한줄다리기끝에1990년2월에통신장비조달시장개방협상을타결하여우리나라는17만불이상의통신장비정부조달시장을개방하기로하였다.그후에도구체적인개방일정과방법에대해후속협상을한끝에정부는위합의사항을1992년1월1일부터시행하기로약속하기에이르렀다(동합의서를실무상「통신서비스및통신장비부문시장접근에관한양해록」이라고부르고있음).

이에따라1991년11월에「정부조달협정에따른물품등의조달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안」을입법예고하였는데,당시입법예고된특례규정안은WTO 정부조달협정과직접관련이없는것이어서1992년1월국무회의에는「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이라는의안으로상정되어가결되었고, 1992년1월22일에공포·시행되었다.즉,현재의특정물품특례규정과특정물품특례규칙은우리나라정부가GATT 정부조달협정가입신청서를제출한상태에서정부조달협정의당사국이되기전에한미간합의에따라제정되었던것이다.그러므로특정물품특례규정의

적용을받는특정물품조달계약은1990년2월에한미간에합의된통신장비조달대상물품에대한조달추정가액이17만불이상에해당하는계약이되는것이다.[111]

이와같이「통신서비스및통신장비부문시장접근에관한양해록」의정부조달개방대상물품(즉,특정물품)에대한조달계약관련특례를규정한것이특정물품특례규정이다.그이후우리나라가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정을거쳐서WTO 정부조달협정에가입하기로확정되고WTO협정의발효에즈음하여국가계약관련법령을전반적으로정비함에따라종래예산회계법의정부조달관련사항이국가계약법에편입되면서아울러정부조달개방에관한일반적인특례규정인특정조달특례규정이제정되었다.그결과특정조달특례규정이조달계약의개방에관한일종의일반법적인지위를가지게되었고, 이에대하여'특정한' 물품(즉, 「통신서비스및통신장비부문시장접근에관한양해록」의대상물품)에국한하여적용되는최초의「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은「특정물품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으로그명칭이변경된것이다.

따라서특정물품특례규정의적용대상인물품에대하여는특정물품특례규정이우선적용된다.이러한점에비추어볼때특정조달특례규정/특정조달특례규칙과특정물품특례규정/특정물품특례규칙은모두정부조달을위한국제입찰을규율하는법령으로서상호관계는일반법과특별법의관계에있다고할수있다.

2. 특정물품조달계약의범위

"특정물품등"이란현금및유가증권을제외한물품과프로그램중특정물품특례규칙제2조에서정한것을말하며, 특정물품조달계약이란특정물품등의조달을위하여체

[111] 대상계약의추정가액하한선인17만불은특정물품특례규정이최초로시행된1992년당시의환율을적용하여재무부장관이1억2천만원으로고시하였고,아래항에서보는바와같이최근의환율을적용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한금액은2억1천만원이다.

결한계약으로서그추정가액이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금액이상인계약을말한다(특정물품특례규정제2조제1호및제4호).

특정물품등은외국과의상호합의에의하여양허되는전기통신제품(통신망장비기타통신기자재를포함한다), 이에부수되는서비스및이들과관련되는소프트웨어(프로그램과이를작성하기위하여사용되는설계서·기술서기타관련자료를말한다)를말하며, 아래사항은제외한다(특정물품특례규칙제2조제1항).

1. 다른법령에의하여특별한절차에의하여조달할수있는경우로서당해법령에의하여조달하는것
2. 특정물품특례규칙별표에규정된기관외의기관에서사용하기위하여조달청장이조달하는것
3. 유상으로양도(가공또는수리하여양도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하거나유상으로양도하는제품의원재료로사용하기위하여조달하는것
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의한남한과북한간의교역에의하여조달하는것
5. 별도의차관협정에따라조달하는것
6. 중요한국가정책목표에반한다고인정되어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협의하여결정한것

기획재정부고시제3.의가.항은특정물품특례규정제2조제4호에의한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금액에관하여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 통신서비스및통신장비부문시장접근에관한양해록상개방대상금액

- 통신망장비및기타통신기자재: 2억 1천만원

위금액은추정가액을기준으로산정한것이며, 각중앙관서의장또는그위임을받은공무원은특정물품조달계약의체결시아래와같이추정가액을결정한다(특정물품특례규정제4조).

1. 단가계약인경우에는당해물품단가에조달예정수량을곱한금액 2. 반복조달계약인경우에는동일연도내에계약할금액의총액 3. 물품의임차또는시설등의대여를위한계약으로서계약기간이명시된경우에는총계약금액으로하며, 계약기간이명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 1월분의임차료또는대여료에 48을곱한금액

3. 특정물품조달계약에관한특례규정및특례규칙

특정물품조달계약에관하여는특정물품특례규정과특정물품특례규칙이구체적인특정물품조달계약의범위및체결절차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특정물품특례규정은국제입찰에의한계약에의하여특정물품등을조달함에있어서의계약사무처리등에관하여국가계약법시행령에대한특례를정함을목적으로하며(특정물품특례규정제1조), 그주요내용은입찰참가자격의심사, 경쟁입찰의공고, 추정가액의결정, 이의처리등으로이루어져있다.

특정물품특례규정에규정되어있지않은사항에관하여는국가계약법시행령및특정조달특례규정을적용한다(특정물품특례규정제17조).

특정물품특례규칙은특정물품특례규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하며(특정물품특례규칙제1조), 특정물품등의범위, 입찰참가자격과그등록및공고, 인증공급자명부및지명경쟁의통지공고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특정물품특례규정은특정물품조달계약에대하여적용되며, 외국인에대하여는당해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에대하여특정물품특례규정이규정하는것과동등한대우를보장하는경우에한하여적용된다(특정물품특례규정제3조).

4. 특정물품조달계약의원칙

각중앙관서의장또는그위임을받은공무원은특정물품조달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계약상대자의국적이나제품의생산지등을이유로계약상의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특약이나조건등을정하여서는안된다(특정물품특례규정제5조제1항).

각중앙관서의장또는그위임을받은공무원은계약상대자를공정하게선정하여야하며, 정부조달에관한계약과관련된정보를차별적으로제공하여서는안된다(특정물품특례규정제5조제2항).

5. 특정물품조달계약의절차

가. 계약방법및입찰공고

1) 일반경쟁입찰및제한경쟁입찰의공고

특정물품조달계약을일반경쟁입찰또는제한경쟁입찰에부치는경우에각중앙관서의장또는그위임을받은공무원은국가계약법시행령에따라공고를하여야한다(특정물품특례규정제7조제1항전문).

다만, 현행특정물품특례규정제7조제1항이개정된이후(1995. 7. 6.)에국가계약법시행령이여러차례개정을하여내용이변경되었음에도변경된내용이위규정에반영되어있지않아문제가될소지가있다.

단적으로공고방법에관하여구국가계약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제14710호로제정된것) 제33조제1항은관보또는일간신문의게재를원칙으로하고있고, 특정

물품특례규정제7조제1항은위규정의내용을 ‘관보또는간행물의게재로’ 수정한데 반해, 현행국가계약법시행령제33조제1항은전자조달시스템의이용을원칙으로하되, 필요한경우일간신문등에게재하는방법을병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입법론적으로특정물품특례규정제7조제1항은현행국가계약법시행령제33조및제35조의개정내용에따라개정될필요가있다.

특정물품특례규정제7조제1항전문에현행국가계약법시행령의내용을반영하면, 특정물품조달계약을경쟁입찰에부치는경우에는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공고하여야하고, 필요한경우일간신문등에게재하는방법을병행할수있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33조제1항). 입찰공고는입찰서제출마감일의전일부터기산하여 40일이전(반복조달계약으로서최초의계약외의경우에는 25일이전)에이를행하여야하고, 긴급을요하는경우입찰서제출마감일의전날부터기산하여 10일전까지, 재공고입찰의경우 40일전까지공고할수있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33조제4항, 특정물품특례규정제7조제1항).

입찰공고를할때특정의상표·상호·디자인·생산지또는제작자등을언급하지않고는조달하고자하는물품의규격·품질등에대하여충분한설명이곤란한경우에는그공고내용에상표·상호·디자인·생산지또는제작자등을특정하여그특정된물품또는이와규격·품질등이동등한물품에대하여입찰에부친다는뜻을기재할수있다. 이경우입찰참가자는공급하고자하는물품이공고내용에기재된물품과규격·품질등이동등한것임을증명하여야한다(특정물품특례규정제7조제4항).

입찰공고에사용하는언어는한국어를원칙으로하고, ①계약의주대상물품의명칭및수량, ②입찰서제출마감일및입찰일, ③발주관서의명칭및주소의내용이포함된요약공고문을영어, 불어, 스페인어중하나의언어로작성하여공고문하단에게재하여야한다(특정물품특례규정제7조제5항).

2) 지명경쟁입찰의공고

특정물품조달계약을지명경쟁입찰에부치는경우앞서본일반경쟁입찰및제한경쟁입찰의공고에준하여공고하되, 그공고내용에는지명경쟁입찰의참가기준이포함되어있어야한다(특정물품특례규정제8조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이특정물품조달계약을지명경쟁에부치는경우아래의사항을입찰대상자에게통지하고, 전자조달시스템또는간행물에공고하여야한다(특정물품특례규칙제6조제1항).

1. 입찰참가자격기준
2. 입찰대상물품의품명및수량, 조달계약의이행기간및이행장소
3. 계약조건의설명장소
4. 입찰서등의접수장소및접수기간
5. 입찰및개찰의일시와장소
6. 입찰보증금에관한사항
7. 기타입찰서작성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위통지및공고는입찰일전일부터기산하여 40일이전에행하여야하고, 위통지를받은지명경쟁입찰대상자로서당해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지명경쟁입찰참가승낙서를입찰일전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특정물품특례규칙제6조제2항및제3항).

인증공급자명부가미리작성되어있지않거나기타의사유로입찰공고일이전에별도로당해입찰에지명될자를결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입찰참가희망자로부터당해입찰에관한의견이나참가요청서등을미리제출받아입찰참가자격을심사할수있다(특정물품특례규정제8조제2항).

3) 수의계약

특정물품특례규정제11조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에서열거한사항중특정물품조달계약서에서수의계약대상으로할수없는경우(같은조제1항제4호및제5호, 같은항제6호가목, 같은항제7호가목내지마목, 같은항제8호가목및나목)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데, 특정물품특례규정제11조가현행과같이개정된이후로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의규정이여러차례개정되면서앞서특정한경우와조항이일치하지않는문제가있다.

이에따라특정물품특례규정제11조가현행과같이개정된당시(1995. 7. 6.)를기준으로한구국가계약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제14710호로제정된것) 제26조를[112] 기준으로수의계약대상여부를판단하여야하며, 입법론적으로는특정물품특례규정제11조가현행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의규정내용에맞추어개정될필요가있다.

---

[112] **제26조 (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①법제7조단서의규정에의하여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병력이동, 긴급한행사, 비상재해기타이에준하는경우로서경쟁에부칠여유가없을경우
2. 국가기관의행위를비밀리에할필요가있을경우
3. 다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계약을할경우
4. 특정인의기술·용역또는특정한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인하여경쟁을할수없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경우
가. 공사에있어서장래시설물의하자에대한책임구분이곤란한경우로서직전또는현재의시공자와계약을하는경우
나. 작업상의혼잡등으로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시공자가공사를할수없는경우로서현재의시공자와계약을하는경우
다. 마감공사에있어서직전또는현재의시공자와계약을하는경우
라. 접적지역등특수지역의공사로서사실상경쟁이불가능한경우
마. 특허공법에의한공사및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하여고시된신기술(동법에의하여지정된보호기간내에한한다)에의한공사등사실상경쟁이불가능한경우
바. 당해물품을제조·공급한자가직접그물품을설치또는조립하는경우
사. 특허를받았거나실용신안등록또는의장등록이된물품을제조하게하거나구매하는경우. 다만, 일정한규격및내용을제시하여제조하게할수있거나다른물품의구매로도사업목적을

달성할수있는경우를제외한다.
아. 당해물품의생산자또는소지자가 1인뿐인경우로서다른물품을제조하게하거나구매하여서는사업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자. 국산대체가불가능한품목으로서이미도입된외자시설이나기계·장비의부분품을구매하는경우
차. 특정인의기술을요하는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특정인과의학술연구를위한용역계약또는디자인공모에당선된자와체결하는설계용역계약의경우
카. 특정인의토지·건물등부동산을매입하거나재산을임차또는특정인에게임대하는경우
5.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공사또는추정가격(임차또는임대의경우에는연액또는총액기준)이 2천만원이하인물품의제조·구매·용역기타계약의경우
6.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특정사업자로하여금특수한물품·재산등을매입또는제조하도록하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경우
가. 산업표준화법제11조의규정에의하여표시가허가된광공업규격표시물품또는품질경영촉진법에의하여인증을받았거나등급사정을받은물품으로서동물품의생산자가 1인뿐인경우에그생산자로부터제조·구매하는경우
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한단체수의계약에의하는경우
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방산물자를방위산업체로부터제조·구매하는경우
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의한농공단지에입주한공장(새마을공장을포함한다)이직접생산하는물품을이들로부터제조·구매할경우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생산자등과계약이필요하거나기타이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경우
가. 법률의규정에의하여재산의양여또는무상대부를할수있는자에게그재산을매각또는유상대부하는경우
나. 비상재해가발생한경우에국가가소유하는복구용자재를재해를당한자에게매각하는경우
다. 용도폐지된관사를연고자에게매각또는대부하거나임야를연고자에게대부하는경우
라. 해외시장의개척에필요한물품을개척자에게매각하는경우
마. 지역사회의개발을위하여그지역주민의다수를참여시키는것이필요한경우로서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공사또는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묘목재배를총리령이정하는그지역의주민또는대표자와직접계약을하는경우
바. 국가보훈처장이지정하는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의복지공장에서직접생산하는물품을그생산자로부터제조·구매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건을매각또는임대하는경우
사. 기술개발촉진법제2조및제8조의2의규정에의하여과학기술처장관이인정한국산신기술제품을그생산자로부터개발완료확인후 2년이내의기간에제조·구매하는경우

나. 입찰참가자격의등록및공고

1)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을심사함에있어서동일물품등에대하여다른기관에서행한입찰참가자격심사의결과가있는경우에는별도의심사없이이를적용할수있다(특정물품특례규정제6조제4항).

특정물품특례규정제6조제1항및특정물품특례규칙제3조제1항은외국인의입찰참가자격에관하여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의요건을갖춘자일것 2. 제1호외의자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갖춘자일것 가. 본사의소재국에입찰대상물품에필요한시설및점포를소유또는임차하고있는자 나. 다른법령에의하여허가·인가·면허등을요하거나자격요건을갖추어야하는경우에는본사의소재국에서당해허가·인가·면허등을받았거나당해자격요

아. 국방부장관이군용규격물자를연구개발한업체또는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의한전시동원업체로부터군용규격물자(전시동원업체의경우에는국방부장관이지정하는품목에한한다)를제조·구매하는경우

8. 기타계약의목적·성질등에비추어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경우

가. 재외공관이사용하는물품을현지에서구매하는경우

나. 물품의가공·하역·운송또는보관을하게함에있어서경쟁에부치는것이불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

다. 특별법으로설립된법인이당해법률에서정한사업을영위함으로써직접생산하는물품의제조·구매또는용역계약을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건을매각또는임대하는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이직접생산하는물품을제조·구매하는경우

마.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국가사업을위탁또는대행할수있는자와당해사업에대한계약을하는경우

건을갖춘자

다. 법인의등기부등본(개인의경우신원증명서) 및본사소재국에서의국세완납증명서또는이들에상응하는서류를갖춘자

계약담당공무원은조달하고자하는물품의특성에따라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위자격요건외에경영상황·경영실적및기술능력등을추가하여입찰참가자격을정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아래의서류를제출하게할수있다(특정물품특례규칙제3조제2항및제3항).

1. 경영상황및경영실적(입찰대상물품의생산에필요한설비등을포함한다)을설명하는서류
2. 최근 2년간의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
3. 입찰대상물품의기술명세및규격에관한설명서
4. 입찰대상물품의생산에관한자격및등록증명서가있는경우에는당해증명서
5. 기타물품에따라필요하다고인정되는서류

각중앙관서의장또는그위임을받은공무원은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로부터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을받아입찰참가자격의유무를심사하여그심사결과를당해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하고,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가늦게접수되어입찰전일까지자격심사를할여유가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을충족시키는것을조건으로입찰참가를허용할수있다(특정물품특례규정제6조제2항및제3항).

2) 입찰참가자격의등록

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의요건을갖춘자가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입찰참가자격의등록을하고자하는때에는아래와같은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2호및제3호각목의서류를제출하거나이들에갈음하는증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특정물품특례규칙제4조제1항).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서류(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2호)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증명하는서류(필요한경우에한한다)

다. 삭제

라. 삭제

마. 제조의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의3에따른공장등록대장등본또는「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8호에따른공공기관의장이직접생산을확인하여증명하는서류(공공기관의장이직접생산을확인하지아니한경우에는조달청장이직접생산을확인하여증명하는서류)

바. 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용역등록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서류(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3호)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증명하는서류(필요한경우에한한다)

다. 삭제

라. 삭제

마. 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의작성에사용하는언어는한국어로한다. 다만, 필요한경우한국어외에영어, 불어, 스페인어중하나를선택하여사용하게할수있다(특정물품특례규칙제4조제4항).

3) 입찰참가자격의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입찰참가자격의등록을하도록할때에는①입찰참가자격, ②구비서류, ③등록장소및등록기간, ④등록의유효기간, ⑤기타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전자조달시스템또는간행물에공고하여야한다(특정물품특례규칙제4조제3항).

다. 인증공급자명부의작성

인증공급자명부는물품등의유형별로입찰에참가할수있는자격을미리정한후그자격을갖춘자중입찰참가가가능한자를기록한명부를말하며(특정물품특례규정제2조제8호), 특정조달특례규정의유자격자명부에대응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다.

각중앙관서의장또는그위임을받은공무원은자격요건의증명절차를간소화하기위하여인증공급자명부를작성하여운용할수있으며(특정물품특례규정제6조제5항), 인증공급자명부를작성하는경우①조달하고자하는물품및그물품의범위, ②해당인증공급자명부에의등록조건및그조건의입증방법, ③인증공급자명부의유효기간및등록갱신절차를매회계연도마다전자조달시스템또는간행물에공고하여야하며, 인증공급자명부상의등록유효기간이만료되거나공급자가인증공급자명부에서제외되게된때에는그내용을해당공급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특정물품특례규칙제5조).

라. 입찰설명서작성·교부및우편입찰서보관

입찰설명서에는①입찰공고에규정된사항(특정물품특례규정제7조및제8조에규정된사항), ②입찰대상물품의기술명세및규격에관한설명서, ③계약담당공무원의소속기관및그기관의주소, ④계약서작성에사용하는언어, ⑤기타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이포함되어야하며(특정물품특례규칙제7조), 각중앙관서의장또는그위임을받은공무원은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에게입찰설명서를교부받을수있는균등한기회를주어야하며, 입찰설명서에대한설명등을요청받은때에는즉시이에응하여야한다(특정물품특례규정제9조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우편입찰서를접수한때에는당해입찰서의봉투표면에접수일시를확인하고확인인을날인하여개찰시까지개봉하지않고보관하여야하고, 우편입찰서가입찰서접수마감일시이후에도착한경우그도착일시및당해입찰서의접수가무효라는내용을당해입찰참가희망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특정물품특례규칙제8조제1항및제2항).

마. 입찰서의심사기준

입찰서는당해물품의조달에필요한모든비용이포함된가격을기준으로심사하여야하며, 위가격만을심사의기준으로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의가격으로입찰에참가한자중에서가격을포함한모든조건을가장유리하게제시한자를낙찰자로결정할수있다. 다만, 입찰공고및입찰설명서상에서이러한결정기준을명확히한경우에한한다(특정물품특례규칙제9조제1항및제2항).

입찰서작성에사용하는언어는한국어로한다. 다만, 필요한경우한국어외에영어, 불어, 스페인어중하나를선택하여사용하게할수있다(특정물품특례규칙제9조제3항, 제4조제4항).

바. 낙찰자등의고시및통지

낙찰자또는수의계약의상대자를결정한때에는그결정일의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아래의사항을관보에고시하여야한다(특정물품특례규정제10조제1항, 특정물품특례규칙제10조제1항).

1. 낙찰되거나수의계약한물품의품명및수량
2. 낙찰자또는수의계약상대자의성명및주소
3. 낙찰금액또는수의계약금액
4. 계약담당공무원의소속기관및그기관의주소
5. 낙찰자또는수의계약상대자의결정절차

6. 경쟁입찰의경우에는입찰의공고일자
7. 수의계약의경우에는수의계약사유
8. 기타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다만위각사항이공개됨으로인하여①법령의집행을저해하거나②공공의이익에반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위각사항중일부를생략하여고시할수있다(특정물품특례규칙제10조제2항).

낙찰자가결정된후그결정일의다음날부터 7일이내에낙찰자외의모든입찰자들에게낙찰자를결정한사실, 낙찰자의성명(상호) 및주소, 낙찰금액을서면또는간행물등의방법으로통지하여야하고, 낙찰자로결정되지않은입찰자로부터낙찰되지않은이유기타당해입찰과관련된자료등의요청을받은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특정물품특례규정제10조제2항및제3항).

사. 이의신청처리및조정청구

낙찰자로결정되지않은입찰자로부터이의제기가있는경우에각중앙관서의장은이에대한적절한조치를하여야하고, 위조치에이의가있는자는그조치가있은날또는그조치가있음을안날부터 15일이내에특정조달특례규정제28조에따른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위한재심을청구할수있다(특정물품특례규정제14조).

다만,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관하여는위특례규정제29조에서규정하고있는바, 위조항도개정된현행국가계약법과특정조달특례규정의체계및조문과일치하지않는내용이다. 따라서특정물품특례규정제14조에서 '특정조달특례규정제28조에따른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계약법제29조에따른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개정되어야할것이다.

아. 기타

1) 계약에관한기록

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및지명경쟁입찰

경쟁입찰에따라낙찰자를결정한때에는①입찰자및개찰에참여한자의성명, ②입찰자의참가신청자격, ③낙찰자의성명, 낙찰금액및낙찰자결정의이유, ④무효로된입찰이있는경우에는당해입찰의내용및무효로된이유, ⑤낙찰자통지를한경우에는당해통지에관한사항, ⑥기타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기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특정물품특례규정제13조제1항).

나) 수의계약

수의계약을체결한때에는①계약의목적, ②물품의품명·규격·수량·단가·금액등, ③적용법령조문및구체적인적용사유, ④계약상대자의성명(상호) 및주소, ⑤물품원산지의국가명, ⑥기타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기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특정물품특례규정제13조제2항).

다) 계약실적보고

각중앙관서의장은특정물품조달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별지서식에따라작성한매분기별계약실적보고서를당해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특정물품특례규칙제12조).

제3장 국제입찰에따른정부조달계약관련실무상쟁점

1. 국제입찰대상관련쟁점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은국제입찰에따른정부조달계약의범위를‘정부기관이체결하는물품 · 공사및용역의계약으로서정부조달협정과이에근거한국제규범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상의계약’으로정하고있다.

또한국가계약법제4조제1항단서는[113] 국제입찰의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데, 실무상해당입찰의대상이국가계약법제4조제1항단서에해당하여국제입찰의대상에서제외되는지, 국제입찰에서제외된경우해외업체가입찰에참가할수있는지가주로문제된다.

국제입찰제외대상에해당하는지는개별사안마다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하나, 아래[사례1]과같이재판매를위한온라인복권시스템사업자선정은국제입찰의대상에서제외되며,국제입찰제외대상에해당하면서임의적국제입찰에도부치지않은경우에국내입찰은내국인만참가할수있으므로, 해외업체는해당입찰에참가할수없도록하고있다.

[사례 1] 국제입찰제외대상
질의내용 온라인복권시스템사업자를선정하는계약이국제입찰제외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
회신내용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제1호는재판매나판매를위한생산에필요한물품이나용역을

[113] **국가계약법제4조(국제입찰에따른정부조달계약의범위)**①국제입찰에따른정부조달계약의범위는정부기관이체결하는물품・공사(工事) 및용역의계약으로서정부조달협정과이에근거한국제규범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상의계약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국제입찰에따른정부조달계약의대상에서제외한다.

1. 재판매(再販賣)나판매를위한생산에필요한물품이나용역을조달하는경우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중소기업제품을제조・구매하는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및「축산법」에따른농・수・축산물을구매하는경우
4. 그밖에정부조달협정에규정된내용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한경우

조달하는경우는국제입찰에따른정부조달계약의대상에서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음

온라인복권을발주기관이최종적으로소유및이용하려는것이아니라이를다시판매하기위한목적이라면온라인복권시스템사업자선정계약은국제입찰제외대상에해당함(회계제도과 2000. 5. 27.)

※고속도로통행권의국제입찰대상여부(회계제도과 1997. 4. 22.)
고속도로통행권의경우현금으로지급받은통행료에대한영수증에해당하므로,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제1호의재판매또는판매를위한생산에필요한물품을조달하는경우에해당한다고 볼수없음

[사례 2] 국제입찰제외대상품목에대해해외업체입찰참가가부

질의내용

한국전력공사는중요전력기자재에대해공급유자격업체로미리등록한업체에게입찰참가자격을부여하고있음

그런데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에따라국제입찰제외대상품목에대하여해외업체가공급유자격자로등록된경우그해외업체가국내입찰에참여가능한지

회신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는국제입찰에의하는공기업·준정부기관조달계약의범위를정한것이므로국제입찰의대상이아닌경우에는특례규정제3조제5항각호(임의적국제입찰)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한원칙적으로대한민국국민을대상으로국내입찰을실시하여야함
따라서위규칙제4조에명시된국제입찰제외대상품목에대하여는국제입찰이아닌경우해외업체는입찰참가자격이없다고보아야함(조달청 2016. 3. 15.)

2. 입찰참가자격관련쟁점

국제입찰은일반경쟁입찰의경우에도계약의종류및규모등에따라해당계약과같은종류의계약실적, 도급한도액,시공능력,기술능력및경영상태등필요한사항에대하여요구되는자격을정할수있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9조제1항).

이에따라발주기관이해당입찰에서요구하는자격이특정조달특례규정에서허용하는입찰참가자격제한에해당하는지가주로문제된다.아래와같은사례들을종합하여보면,국외법에따른면허, WTO 정부조달협정회원국내생산조건,유사용역실적등의조건을부가하는것은허용하고있고, 이와같은실적을보유한해외업체와공급협약협정또는공급확약을맺은것에불과한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부여되지않는다.

[사례 1] 입찰참가자격제한관련
질의내용 건축설계지원을위한용역계약(몽골교육센터)을경쟁입찰에부치면서국외법에따른면허를취득한업체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할수있는지, 이러한경우특정조달특례규정상일반경쟁입찰에해당하는지
회신내용 해외에서국제입찰을진행하는경우에공사의건축, 허가시공등은그나라의공사관련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야할것으로보이며, 특정조달특례규정제9조제1항은일반경쟁입찰참가자의자격을시공능력, 기술능력등에따라제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계약실적에따른제한도특정조달특례규정상일반경쟁입찰에해당할것으로판단됨(조달청 2016. 10. 13.)

[사례 2] WTO 정부조달협정회원국내생산조건부과의적법여부
질의내용 WTO 정부조달협정회원국내생산조건을부과하는것이특정조달특례규정에위배되

는것인지
회신내용 특정조달특례규정제4조제1항및제2항제3호는국내업체와해외업체간차별을금지하고있으므로, 원산지관련규정이국내외업체에동일하게적용되는것이라면질의내용과같은조건부과가 WTO 정부조달협정및특정조달특례규정에위배되는것은아님(계약제도과 2011. 9. 2.)

[사례 3] 실적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
질의내용 최근 5년간국제발주해당용역실적이있는업체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것이허용되는지
회신내용 특정조달특례규정제9조제1항은해당계약과같은종류의계약실적등필요한사항에대하여일반경쟁입찰에참가하는자에게요구되는자격을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질의내용과같은계약실적조건을부과하는것은허용됨(조달청 2016. 10. 7.)

[사례 4] 공급협약협정과입찰참가자격
질의내용 공급실적보유업체와공급협약약정을맺은국내업체가입찰에참가할수있는지(일정한 실적을입찰참가자격으로하는경우)
회신내용 국가기관이국제입찰에부치는경우외국인뿐만아니라내국인도입찰에참가할수있으므로, 공급실적을보유한국내업체및해외업체단독으로또는그국내업체와해외업체가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가할수있으나단순히공급실적을보유한업체와공급협약협

정을맺은경우에는해당국내업체가입찰참가자격을보유하고있다고보기어려움(조달청 2016. 3. 28.)

[사례 5] 국내공급확약과입찰참가자격
질의내용 실적보유업체와공급협약약정을맺은국내업체가입찰에참가할수있는지(일정한실적을입찰참가자격으로하는경우)
회신내용 국가기관이시행하는입찰에있어입찰참가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규정에따라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요하거나자격요건을갖추어야할경우에는당해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받았거나자격요건에적합하여야함 제작실적업체와국내공급확약(국내판매권)을맺은업체등제3자의실적을기준으로입찰참가자격을정하는것은부적절한제한으로보아야함(조달청 2016. 8. 12.)

3. 공동계약관련쟁점

국제입찰시공동계약에관하여는특정조달특례규정에서특별히규정한내용이없으므로,특정조달특례규정제39조에따라국가계약법령이적용되어야한다.

국가계약법제25조는'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계약·제조계약또는그밖의계약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면계약상대자를둘이상으로하는공동계약을체결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국가계약법시행령제72조제2항은공동계약에의하는것이부적절하다고인정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가능한한공동계약에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해외업체와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가할수있는지및입찰공고에공동계약에관한내용이없는경우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가할수있는지가실무상문제된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36조제13호[114]및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323호) 제8조제1항및제2항에[115] 따르면공동계약을허용하는경우입찰공고에이에관한내용을반드시명시하여야하므로, 입찰공고에이와같은내용이없는한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가할수없다.

또한국제입찰의경우해외업체도입찰에참여할수있으므로국내외업체가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가할수있다고보아야한다(다만,국내입찰의경우내국인만을대상으로하므로해외업체는공동계약으로도입찰에참가할수없다).

[사례 1] 공동수급체의입찰참가자격
질의내용 1. 국내업체가실적이없는경우공동수급체가아닌해외기술제휴사의실적을인정받을수있는지 2. 입찰공고에공동계약이가능하다는내용을명시하지않은경우에도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가할수있는지

[114] **제36조(입찰공고의내용)**입찰공고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13. 제72조의규정에의한공동계약을허용하는경우에는공동계약이가능하다는뜻(제72조제3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한공동계약인경우에는공동수급체구성원의자격제한사항을포함한다)과공동계약의이행방식

[115] **제8조(입찰공고)**①계약담당공무원은입찰공고시시행령제72조제2항에의하여동일현장에2인이상의수급인을투입하기곤란하거나긴급한이행이필요한경우등계약의목적·성질상공동계약에의함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가능한한공동계약이가능하다는뜻을명시하여야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시행령제72조제1항또는제3항에의한공동계약의이행방식과공동수급체구성원의자격제한사항을입찰공고에명시하여야한다.

회신내용

1. 발주기관이국제입찰을실시하면서공사등의실적을입찰참가자격으로요구한경우 외국기업의공사실적을해당외국기업과기술제휴한국내업체의실적으로인정할수없음

2. 국가계약법시행령제36조제13호에따라입찰공고에공동계약이가능하다는뜻을명시하지않으면공동계약을입찰에참가할수없음(회계제도과 2006. 10. 31.)

[사례 2] 공동계약의유형

질의내용

국제입찰에서전기공사업등록자격을요구하는경우해외업체가국내업체와분담이행방식의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여할수있도록할수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등이국제입찰을실시하는경우특정조달특례규정제39조에따라동특례규정에서특별히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국가계약법시행령의규정을적용하므로, 질의한사안의경우국가계약법시행령제72조에따른공동계약을체결할수있음.

「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16-210호) 제3조및제9조에따르면건설공사를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분담하여수행하는공동도급계약을분담이행방식이라고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건설공사를도급받은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자신이분담한부분에대하여만계약이행책임을지는것이며전기공사업등록이되어있지않은국내외업체는분담이행방식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가할수있음(조달청 2016. 4. 5.)

[사례 3] 국내입찰에서해외업체와공동계약참여가부

질의내용

국내업체가자회사인해외업체와공동수급체를구성하되국내업체가공동수급체의대표사로국내경쟁입찰에참여하는것이허용되는지
회신내용 국제입찰이란특정조달특례규정제2조제1호에따라내외국인또는외국인을대상으로하여물품·공사및용역을조달하기위하여행하는입찰을말하는것으로국가기관이국제입찰에부치는경우에는외국인뿐만아니라내국인도입찰에참가할수있으나, 국제입찰이아닌국내입찰의경우는내국인만을대상으로하므로질의내용과같이국내업체와해외업체가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가할수없다고보아야함(조달청 2018. 2. 5.)

4.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관련쟁점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제2호및「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4조제1항제2호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를 국제입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과관련하여①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제2호및 「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 제4조제1항제2호의'중소기업제품을제조·구매하는경우'에용역이포함되는지,②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이일반경쟁입찰로전환되는경우국제입찰을실시할수있는지등이문제된다.

판로지원법제4조제1항은물품·용역및공사를'제품'으로약칭하고있으므로'중소기업제품'에용역이포함되고, 중소기업제품을제조·구매하는경우에용역을제외해야할특별한이유를찾기어려운점을고려하면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제2호에는'용역'도포함된다고봄이타당하다.

또한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이일반경쟁입찰로전환되는경우는국가계약법제4조제1항단서에따른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으므로, 국제입찰요건에해당한다면국제입찰을실시하여야한다.

[사례 1]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용역) 국제입찰대상여부
질의내용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용역)를발주할예정인경우, 용역은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제2호및「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4조제1항제2호에따라‘제조·구매’에해당하지않으므로위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가국제입찰의대상이되는지
회신내용 귀질의용역의경우에도판로지원법에따라입찰을실시하여야하는경우국가계약법제3조(다른법률과의관계)에따라판로지원법상입찰을진행하여야할것으로보임(조달청 2016. 8. 26.) ※용역도‘제조·구매’에포함되므로국제입찰제외대상이라는취지로보임

[사례 2]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용역) 국제입찰대상여부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제2호의 ‘중소기업제품을제조·구매하는경우’에 ‘용역’이포함되는지
회신내용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제2호의 ‘중소기업제품’에대하여국가계약법령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으나판로지원법제4조에따라 ‘물품·용역·공사’를모두포함한다

고보는것이타당함(계약제도과 2013. 9. 24.)

※판로지원법제4조(구매증대)①공공기관의장은물품・용역및공사(이하 **"제품"**이라한다)에관한조달계약을체결하려는때에는중소기업자의수주(受注) 기회가늘어나도록하여야한다.
②공공기관의장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한금액미만의물품및용역(제6조제1항에따라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지정한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은제외한다)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중소기업자와우선적으로조달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정부의국고보조금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한금액이상수령한기관또는법인이보조사업과관련하여제품을구매하려는때에는중소기업제품을우선적으로구매하도록권고할수있다.

[사례 3] 중소기업자간의경쟁입찰이일반경쟁입찰로전환되는경우의입찰방법

질의내용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이일반경쟁입찰로전환되는경우국제입찰요건에해당하면국제입찰을실시하여야하는지

회신내용

판로지원법시행령제7조제1항제3호는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에참가한중소기업자중적격자가없는등의사유로유찰됨에따라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외의경쟁입찰의방법으로새로입찰을진행하려는경우'에는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을실시하지않을수있도록정하고있음
위규정에따라일반경쟁입찰로전환된경우에는국가계약법령및「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의적용을받게되므로, 계약금액이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고시금액이상인경우국제입찰을실시하는것이타당함(계약제도과 2012. 7. 3.)

5. 국제입찰대상정부기관등관련쟁점

「공기업 ·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 [별표 1]은WTO 정부조달협정에따라국제입찰의방법으로조달계약을해야하는공기업및준정부기관에관하여 아래와같이열거하여규정하고있다.

국제입찰의방법으로조달계약을해야하는공기업 · 준정부기관(제4조제1항관련)

1. 「WTO 정부조달협정」에따라국제입찰의방법으로조달계약을해야하는공기업 · 준정부기관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구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와관련하여 「공기업 ·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에서명시되지않은공기업 및준정부기관의경우국제입찰을실시할수있는지등이문제되는데,특히한국전력공사와같이자회사가있는경우그자회사를위규정에의한국제입찰대상정부기관으로볼수 있는지에관하여질의하는경우가있다.

국제입찰대상정부기관의자회사라고하더라도그자회사는해당정부기관과는별개의법인격을갖고있으며, 위규정이국제입찰대상정부기관을열거적으로규정하고 있고수범자에게의무를부과하는규정은엄격하게해석되어야하므로, 위자회사는국제입찰대상정부기관에해당하지않는다고봄이타당하다.

다만, 국가계약법제4조제3항은계약의목적과성질등을고려하여국제입찰을실시할필요가있는경우임의적으로국제입찰을실시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이경우에는반드시국제입찰대상기관에해당하지않더라도국제입찰을실시할수있다.

[사례 1] 국제입찰대상정부기관에해당하지않는경우국제입찰실시가부

질의내용 공기업및준정부기관이국제입찰대상정부기관에해당하지않는경우국제입찰을실시할수있는지
회신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 [별표 1]이규정한공기업및준정부기관에해당하지않는경우국제입찰을실시하여야할의무는없음 다만, 계약의목적과성질등을고려하여국제입찰을실시할필요가있는경우(국가계약법제4조제3항), 국제입찰을실시할수있음(계약제도과 2012. 6. 7.)

[사례 2] 국제입찰대상정부기관관련
질의내용 한국원자력연구원이국제입찰에따른정부조달계약의대상기관인지
회신내용 한국원자력연구원은「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 [별표 1]에해당하지않으므로, 국제입찰에따른정부조달계약의대상기관에해당하지않음(조달청 2018. 4. 2.)

[사례 3] 국제입찰대상정부기관에해당하지않는경우계약의원칙
질의내용

국제입찰대상정부기관에해당하지않는데예외적으로국제입찰에부친경우국내외업체간계약조건을차별하는것이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계약법제5조제2항은같은법제4조제1항에따른국제입찰의경우에는호혜의원칙에따라정부조달협정가입국의국민과이들국가에서생산되는물품또는용역에대하여대한민국의국민과대한민국에서생산되는물품또는용역과차별되는특약이나조건을정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음 따라서국제입찰대상정부기관에해당하지않음에도국제입찰에부치는경우(임의적국제입찰)는국가계약법제4조제3항에따른것으로국내외업체간계약조건을차별하더라도특정조달계약의원칙에위배된다고보기어려움(계약제도과 2011. 9. 23.)

[사례 4] 자회사가국제입찰대상정부기관에해당하는지
질의내용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는「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 [별표1]에명시된공기업및준정부기관이아니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고시금액이상인경우에도국내입찰을실시하는것이허용되는지
회신내용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는한국전력공사와는별개인자회사이므로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고시금액이상인경우에도국내입찰을실시할수있음(조달청 2014. 2. 27.)

[사례 5] 국제입찰대상정부기관관련
질의내용

한국전력공사는「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4조제1항 [별표 1]에명시된공기업이나한국전력공사가아닌그자회사인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은국제입찰대상기관에는해당하지않더라도 WTO 또는WTO 정부조달협정등에따라중국및인도기업의입찰참가자격을제한할수있는지
회신내용 한국전력공사의자회사는국제입찰대상정부기관으로명시되어있지않으므로국제입찰을의무적으로해야하는대상에해당하지않음(조달청 2017. 10. 17.)

6. 입찰공고기간관련쟁점

입찰공고는원칙적으로입찰서제출마감일전날부터기산하여40일이전에하여야하고, 예외적으로긴급을요하는등특별한경우10일이전에공고할수있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11조제2항및제3항). 또한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입찰서를접수하는등경우에각사유마다5일씩공고기간을단축할수있는데(특정조달특례규정제11조제4항), 전체공고기간이10일미만으로단축될수는없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11조제5항).

실무상재공고가유찰된후입찰공고기간,긴급입찰공고를할수있는사유에해당하는지,입찰공고기간을5일씩단축할수있는사유에해당하는지등이문제된다.

재공고가유찰되어예정가격을다시작성하여입찰공고를한경우에는새로운입찰공고에해당하므로40일의입찰공고기간을두어야하고,공고기간을준수하면납품일정을맞추지못하게된다는사정도긴급입찰공고사유에해당한다.특정조달특례규정제11조제5항각호의전자조달시스템은발주기관의전자조달시스템이아닌 「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의미한다.

[사례 1] 재공고유찰후입찰기간
질의내용 재공고가유찰된후예정가격을다시조사하여새롭게입찰공고를하는경우이를 1차공고로보아입찰공고기간을 40일로할수있는지
회신내용 특정조달특례규정제11조제2항에따르면입찰공고는입찰서제출마감일전날부터기산하여 40일이전에하여야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는등예외적인경우 5일씩 공고기간을단축할수있음(특정조달특례규정제11조제4항). 위사안과같이재공고가 유찰되고예정가격을다시작성하여새롭게공고를하는경우라면다시위특례규정제11 조제2항에따라 40일의기간을두고입찰공고를하여야할것임(조달청 2017. 8. 24.)

[사례 2] 긴급입찰공고
질의내용 국제입찰시국가계약법시행령제35조제4항제1호내지제4호에해당하지않더라도긴급공고를할수있는지
회신내용 국제입찰시특정조달특례규정이적용되고, 특정조달특례규정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긴급을요하는경우로서계약목적물을적기에조달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 는입찰서제출마감일전날부터기산하여 10일이전에입찰공고를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음 따라서국가계약법시행령제35조제4항제1호내지제4호에해당하지않더라도위규정 에해당한다면긴급입찰공고를할수있음(조달청 2015. 10. 6.)

[사례 3] 국제입찰입찰공고일관련질의
질의내용 1. 특정조달특례규정제11조제4항각호에모두해당할경우최대 15일까지입찰공고기간을단축할수있는지 2. 자체전자조달시스템으로입찰공고를하는경우특정조달특례규정제11조제4항제1호에따라 5일을단축할수있는지
회신내용 1. 15일까지단축할수있으나입찰공고기간을 10일미만으로단축할수는없음 2. 특정조달특례규정제10조의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따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의미함(조달청 2016. 6. 7.)

7. 입찰공고방식관련쟁점

입찰공고방식과관련하여내자및외자물품을하나의공고로입찰할수있는지,국내외업체가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가하도록하는경우하나의공고로입찰할수있는지등이문제된다.특정조달특례규정및국가계약법령에서입찰공고방식에관하여특별히제한하는규정이없으므로, 실무상하나의공고로입찰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사례 1] 내자및외자물품을동시에조달하는경우입찰공고방식
질의내용 내자및외자물품에관하여하나의공고로입찰을진행할수있는지
회신내용 내자및외자물품은입찰참가자격, 인도조건, 대금지급방법, 사용언어, 입찰방법, 계약통화등에서차이가있는데, 내자및외자물품에관한입찰을어떤방식으로공고할

수있는지에대한근거규정은없음

내자및외자물품의입찰공고를명시적으로제한하는규정은없으므로내자및외자물품을하나의입찰공고문에공고할수있다고판단되나가급적별도의공고로집행하는것이효율적일것으로보임(조달청 2012. 3. 5.)

[사례 2] 국내외업체공동계약시입찰공고방식

질의내용

국내업체가국외업체와공동으로입찰에응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하나의공고로국제입찰을진행할수있는지, 국제입찰시국내는원화로국외는외화로계약체결이가능한지

회신내용

특정조달특례규정제2조제1항은국제입찰을제내 · 외국인또는외국인을대상으로하여물품 · 공사및용역을조달하기위하여법 · 시행령및이영의규정에따라체결하는계약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고, 국가계약법제25조및국가계약법시행령제72조는필요한경우계약상대자를둘이상으로하는공동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고있음. 또한통화에관하여는특정조달특례규정제39조에도불구하고동특례규정제40조제1항에따라국제상관례에의할수있음.
따라서국내외업체가각자업무를수행하는방식(분담이행방식)으로공동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단일공고로국제입찰을집행할수있을것이고, 이경우내국인은원화로외국인은외화로입찰함(조달청 2013. 7. 16.)

8. 수의계약관련쟁점

특정조달특례규정제2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국제입찰에서수의계약방식으로특정조달계약을체결할수있다.실무상가장빈번히쟁점이되는사항은해당

특정조달계약이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는요건에해당하는지및수의계약체결시준수하여야하는절차에관한것이다.

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는요건에해당하는지는구체적인사안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으로보이고,수의계약체결절차에관한사항은특정조달특례규정에서특별히정하고있지않으므로국내입찰에서의수의계약체결과동일하게진행하고있다.

[사례 1] 시제품을조달하는경우수의계약요건에해당하는지
질의내용 당사는 LNG 인수기지운영사로서 LNG 인수기지용고압가스압축기를개발하는회사와수의계약을추진하고자하는데, 위와같은특정조달특례규정제23조제5호에따라수의계약이가능한지
회신내용 특정조달특례규정제23조제5호는발주기관의요구로개발된시제품등을조달하는경우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규정하면서당해계약의이행이완료된후당해제품을계속하여조달하는경우를제외하고있음. 그런데발주기관이제시하는설계, 제작및검사등의기술규격에따라제작된물품을조달하는것이라면이미개발된시제품을조달하는경우가아니므로위규정이적용되지않을것으로보임(조달청 2013. 11. 12.)

[사례 2] 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는 '긴급한사유'의해석
질의내용 특정조달특례규정제23조제3호의의긴급한사유로인하여경쟁입찰에의하여서는필요한기간내에조달할수없는경우' 에긴급투입 · 생산에따른납품기한을맞추기위한경우도포함되는것인지

회신내용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조의2는의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의한긴급한행사, 긴급복구가필요한수해등비상재해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로서경쟁에부칠여유가없을경우라함은시행령제35조제4항등에따라긴급입찰공고에의한경쟁입찰에의하더라도계약목적의달성이곤란한경우를말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긴급입찰공고에의한경쟁입찰방식으로도납품기한을맞추지못할사정이있는경우수의계약의방식으로계약을체결할수있다고판단됨(조달청 2016. 4. 12.)

[사례 3] 수의계약요건에해당하는지여부및그절차

질의내용

항공기인증제도구축관련조사및자문등을과업내용으로하는정부조달계약(추정가격 7,000만원)을체결함에있어서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차목에따라해외업체와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는지및수의계약을체결하는경우절차및방법

회신내용

해외업체를대상으로수의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이는국제입찰에해당하므로특정조달특례규정제2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야할것으로보임

해외업체와수의계약시절차및방법등은국내업체와수의계약을체결하는절차를준용함(조달청 2018. 6. 14.)

※해외업체를대상으로수의계약을체결하는경우특정조달특례규정제23조가적용되므로, 질의한내용과같이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차목(특정인의기술·품질이나경험·자격을필요로하는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계약, 특정인과의학술연구등을위한용역계약, 관련법령에따라디자인공모에당선된자와체결하는설계용역계약의경우)에따라해외업체와수의계약을체결할수는없음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차목의사유가인정된다면특정조달특례규정제23조제2호(적절한대용품이나대체품이없는예술품·특허권또는출판권등독점적권리

와관련되거나기술적이유로특정공급자로부터조달할수있는경우) 또는제10호(기획재정부령이정한내용에따른디자인공모에당선된자와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해당될가능성이높아위규정에따라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다고볼수는있음

9. 기타쟁점

그밖에도 WTO정부조달협정비가입국이국제입찰에참가할수있는지문제되는경우가있으나국가계약법제4조제3항에따른임의적국제입찰의경우관계법령상특별한제한이없으므로WTO 정부조달협정비가입국이라고하더라도국제입찰에참가할수있도록하고있다.

[사례 1] WTO 정부조달협정비가입국의국제입찰참가
질의내용 WTO 정부조달협정비가입국도국제입찰에참가할수있는지
회신내용 WTO 정부조달협정비가입국에대하여별도의국제입찰을위한조치를한바가없으나, 국가계약법제4조제3항에따른임의적국제입찰에참가하는것은허용됨(계약제도과 2012. 9. 19.)

또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고그제한기간중에있는자에게국제입찰에따른선금을지급할수있는지문제되는경우도있다.이에관하여특정조달특례규정에규정된내용이없으므로, 특정조달특례규정제39조에따라국가계약법시행령에따라야하는데국가계약법시행령의위임을받아제정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4조제1항제2호는[116]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있는경우선금을지급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으므

[116] **제34조(적용범위)**①계약담당공무원은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로서계약상대자가선금의지급을요청할때에는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선금을

로,국제입찰에서도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에게는선금을지급할수없다고보아야한다.

[사례 2] 입찰참가자격제한및선급지급가부
질의내용 국제입찰에따른정부조달계약에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고그제한기간중에있는업체에게선금을지급할수있는지
회신내용 특정조달특례규정/특례규칙등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있는업체에게선금을지급할수있는지에관하여명시한규정은없으나특정조달특례규정제39조는동특례규정에특별히규정된사항이아닌경우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의규정을적용하도록하고있고, 국가계약법시행령의위임을받아제정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제2호은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는선금을지급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음. 따라서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있는업체에게는선금을지급할수없다고보는것이타당함(계약제도과 2012. 1. 10.)

국제입찰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발주기관은해당정부조달계약을국제입찰에부쳐야한다.

[사례 3] 국제입찰의요건
질의내용

지급할수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선금의무지급률이하로신청하는경우에는신청한바에따라지급한다.

1. 공사, 물품제조또는용역계약(발주기관이시스템특성등에맞게소프트웨어의일부에대하여수정·변경을요구하여체결한소프트웨어사업을포함)

2. 시행령제76조에의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고그제한기간중에있지아니한경우

작업화를제조, 구입하려는데추정가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고시금액」(기획재정부고시제2016-34호, 이하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고시금액**'이라고한다)에따른금액(2억 1,000만원이상) 이상이고,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해당하지않으며국제입찰제외대상(국가계약법제4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않는경우반드시국제입찰을해야하는지
회신내용 국제입찰의요건에해당하는지판단하기위해서는첫째, 물품등이정부조달협정양허표상국제입찰대상인지여부(특정조달특례규정 [별표 2] 및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에해당하는지)를검토하고, 둘째, 발주기관이양허대상기관인지여부(특정조달특례규정 [별표 1])를검토한다음, 셋째, 발주기관의조달금액이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고시금액에따른금액이상인지확인하여이에모두해당하는경우국제입찰로진행하여야함(조달청 2017. 2. 17.)